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The Legal Protection and Assistance System to Victim of Sexual
Violence as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s will be abolished

이승현 · 박학모 · 김정혜

■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 박사

■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정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 이정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법학 박사

발간사

그동안 성폭력범죄에 대한 다양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이 모색되었지만, 친고죄 규정이 여전히 존재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신고율과 고소율이 낮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고소 취소시 가해자의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없는 한계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합의 종용을 받거나 고소기간 내에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 규정은 성폭력을 예방하기 보다는 성폭력범죄를 피해자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게 하고, 성폭력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로 돌리게 하는 등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에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2013년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친고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에까지 친고죄를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친고죄 폐지로 인해 앞으로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및 고발이 증가될 것이고, 수사·재판과정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의 합의 유인이 감소되고, 경찰의 인지수사나 제3자의 고발에 따라 자유로운 기소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재판환경에서 피해자가 노출되는 수위가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지원체계가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성폭력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의 전면 폐지로 인한 정책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친고죄 폐지 전후의 정책변화 방향을 비교분석하여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한계점을 예측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친고죄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영국, 독

일, 일본의 피해자보호 및 지원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피해자 상담지원체계·법률지원체계·의료지원체계 등에서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과 성폭력피해자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피해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들이 여성가족부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헌할 뿐만 아니라 친고죄 폐지로 경찰·검찰·법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및 재판과정상 피해자보호 및 지원의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준 이승현 연구위원, 박학모 부연구위원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정혜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2014년 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CONTENTS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이승현)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내용	19
제3절 연구방법	20
제2장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의 환경변화(이승현) ..	21
제1절 친고죄 폐지의 의의	23
1. 친고죄의 개념	23
2. 친고죄 관련규정의 개정역사	24
3. 친고죄의 존폐에 관한 논의	27
4. 친고죄 폐지의 필요성	28
제2절 친고죄 폐지 전후의 피해자 신고 및 고발건수에 대한 예측	31
1. 성폭력범죄 처분현황을 통해 본 예측	32
2. 강간죄와 강간치상죄 기소율 비교를 통한 예측	33
3.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본 예측	34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전후 변화를 통한 예측	37
제3절 친고죄 폐지에 따른 정책변화 방향	37
제3장 현행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이승현·김정혜)	41
제1절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43

1. 개관	43
2. 상담지원체계	45
3. 법률지원체계	54
4. 의료지원체계	57
5. 통합지원체계	60
제2절 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65
1. 여성긴급전화 1366	65
2.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68
제3절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69
1.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69
2. 재판절차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77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79
4.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제도	82
제4장 외국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박학모·이승현)	83
제1절 독일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85
1. 성폭력범죄와 그 피해 현황 및 처리 개관	85
2.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체계	87
3.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93
4. 형사절차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94
5. 독일 성폭력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시사점	105
제2절 영국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07
1. 성폭력범죄의 피해 현황 및 처리	107
2.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110
3. 형사절차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120
4. 영국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시사점	129
제3절 일본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31
1. 성폭력범죄의 피해 현황 및 처리	132
2.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132
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135

4. 일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시사점	142
제5장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이승현·김정혜) ...	145
제1절 친고죄 폐지로 인한 피해자 지원 내실화방안	147
1. 상담지원체계	147
가. 성폭력피해상담소 접근성 개선	147
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148
다. 장애인보호시설의 확충 및 균형적 배치	148
라.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문제	149
마.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 강화	150
바. 상담소의 신고 의무 규정 예외 마련	151
2. 법률지원체계	152
가. 상담기관의 초기 법적 지원 활성화	152
나. 피해자 진술 횟수 최소화	153
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 내실화	153
라. 공식적 피해배상 절차 활용 확대	154
마. 피해자 신원 보호 제도 이행 모니터링	155
바. 고소 의사의 확인	156
3. 의료지원체계	157
가. 의료지원 정보 제공 확대 및 비밀보장 방안 마련	157
나. 심리치료 및 상담치료 지원 확대	158
다.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법의학적 증거 수집 능력 강화	159
라.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내실화	160
마. 의료진의 법정증언지원	161
바. 인공유산 의료지원의 실효성 확보	162
사. 전담의료기관의 인공유산 시술 여부 확인	163
아. 의료비 지원 예산 확대	164
4. 통합지원체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확충	165
제2절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67
1. 성폭력 대응전달체계의 지역사회적 기능 확대를 위한 방안	167

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활성화	167
나. 일반 의료기관의 연계 능력 강화	168
2. 피해발생시 조기개입과 치료를 위한 전달체계 효율화방안	169
가. 여성긴급전화 1366의 위기개입 및 연계 서비스 강화	169
나. 여성긴급전화 1366 홍보 강화	170
다. 수사기관의 연계 강화	170
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역할 강화 및 지원 능력 표준화	172
제3절 형사절차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173
1.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73
가. 피해자국선변호인의 역할 강화	173
나. 신뢰관계인 동석제도의 활성화	175
다. 범죄피해자의 권리고지 규정 신설	176
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가이드라인 마련	177
마.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협조거부시의 조치방안	177
2. 재판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	178
가. 공판절차에서 부적절한 신문 내용의 제한	179
나.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위한 보호처분 규정 신설	180
다. 피해자의 인적사항 비공개를 위한 노력	181
라. 양형기준에 대한 재검토	182
3. 피해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방안	182
가. 피해자의 진술권 범위 확대	183
나. 피해배상명령제도의 적극 활용	184
 참고문헌	 185
 Abstract	 193

표 차례

〈표 2-1〉 성폭력범죄의 접수 및 처분현황	32
〈표 2-2〉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기소율 비교	34
〈표 2-3〉 연도별 상담현황	35
〈표 2-4〉 피해유형별 피해자 현황	36
〈표 2-5〉 성폭력상담소의 피해자 지원내용	36
〈표 2-6〉 전체범죄와 아청법상 범죄의 기소율 비교	37
〈표 2-7〉 관련법률별 성폭력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내용	38
〈표 3-1〉 지역별 성폭력피해상담소 현황	46
〈표 3-2〉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2012년 상담현황	46
〈표 3-3〉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업무(보호법 제10조)	47
〈표 3-4〉 지역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50
〈표 3-5〉 전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변동 추이	50
〈표 3-6〉 전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51
〈표 3-7〉 전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현황	52
〈표 3-8〉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업무(보호법 제13조)	53
〈표 3-9〉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현황	53
〈표 3-10〉 성폭력 피해여성 무료법률구조 현황	55
〈표 3-11〉 성폭력 피해자 등 의료지원의 범위	58
〈표 3-12〉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현황	58
〈표 3-13〉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지원서비스 흐름	61
〈표 3-14〉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2012년 상담조치 결과	67
〈표 3-15〉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2012년 현장상담원 출동요청사항	67
〈표 3-16〉 성폭력피해자조사 전담조사팀 운영실적	76
〈표 4-1〉 성폭력범죄 현황	108
〈표 4-2〉 일본의 피해자 및 증인배려제도의 실시현황	135
〈표 4-3〉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 실시현황	142

〈표 5-1〉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병원치료 실태 157
 〈표 5-2〉 성폭력 피해자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원액 164

그림 차례

〈그림 3-1〉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44
 〈그림 3-2〉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와 원스톱지원센터의 비교 60
 〈그림 3-3〉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지원서비스 흐름 63
 〈그림 4-1〉 성폭력범죄사건의 흐름 110
 〈그림 4-2〉 오사카성폭력구제센터의 구조 134

최근에 도입된 성범죄 관련 형법의 내용들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효율적 방안이라고 하나, 실제로 과잉처벌이나 이중처벌 등으로 인권보호에 역행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보호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여전히 존재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은 2010년 12.3%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고소 취소시 가해자의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합의 중용을 받거나 고소기간 내에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았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동안 친고죄 규정이 성폭력을 예방하기 보다는 성폭력범죄를 피해자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게 하고, 성폭력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로 돌리게 하는 등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였다. 최근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2013년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친고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에까지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었다.

친고죄 폐지로 인해 앞으로 성폭력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 및 고발이 증가될 것이고, 수사·재판과정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의 합의 유인이 감소되고, 경찰의 인지수사나 제3자의 고발에 따라 자유로운 기소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재판환경에서 피해자가 노출되는 수위가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성폭력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의 전면 폐지로 인한 정책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친고죄 폐지 전후의 정책변화 방향을 비교분석하고, 현행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에 대한 재점검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친고죄 폐지로 예상되

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죄 폐지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상담지원체계에서 ① 성폭력상담소의 접근성 개선, ②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③ 장애인보호시설의 확충 및 균형적 배치, ④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문제 해결, ⑤ 피해자신원정보 보호 강화, ⑥ 상담소의 신고의무 규정의 예외 마련 등이 필요하다. 법률지원체계에서 ① 상담기관의 초기 법적 지원 활성화, ② 피해자 진술횟수 최소화, ③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의 내실화, ④ 공식적 피해배상절차 활용 확대, ⑤ 피해자 신원보호제도 이행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지원체계에서는 ① 의료지원 정보제공 확대 및 비밀보장 방안 마련, ② 심리치료 및 상담치료 지원 확대, ③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법의학적 증거수집능력 강화, ④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의 내실화, ⑤ 의료진의 법정증언 지원, ⑥ 인공유산 의료지원의 실효성 확보, ⑦ 전담의료기관의 인공유산 시술여부 확인, ⑧ 의료비 지원예산 확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지원을 위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확충해야 한다.

둘째, 성폭력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성폭력 대응전달체계의 지역사회적 기능 확대를 위해서 ① 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 활성화, ② 일반의료기관의 연계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피해발생시 조기개입과 치료를 위한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① 여성긴급전화 1366의 위기개입 및 연계서비스 강화, ② 여성긴급전화의 홍보 강화, ③ 수사기관과의 연계 강화, ④ 성폭력상담소의 역할 강화 및 지원능력의 표준화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가 보다 정교해야 한다.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피해자국선변호인의 역할 강화, ② 신뢰관계인 동석제도의 활성화, ③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규정 신설, ④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가이드라인 마련, 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협조거부시 조치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판절차에서는 2차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한데, ① 공판절차에서 부적절한 신문 내용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 ② 가해자의 접근 금지를 위한 보호처분 규정 신설, ③ 피해자의 인적사항 비공개를 위한 노력, ④ 양형기준에 대한 재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의 적극적 수사 및 재판절차 참여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권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배상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장 서론

이 승 현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조두순 사건¹⁾을 비롯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김길태 사건(2010년), 김수철 사건(2010년), 오원춘 사건(2012년), 고종석 사건(2012년) 등 흉악한 성폭력범죄가 늘어났고, 이에 국민적 불안감은 커져갔다. 조두순 사건이나 김길태 사건 등은 사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일반국민에게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감은 커져갔고, 이 사건들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에 대하여 국민의 불신은 증폭되었다. 더욱이, 도가니 사건(2005년), 혜진·예슬이 사건(2007년), 통영 초등생 사건(2012년) 등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성범죄가 연일 보도되면서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하였고, 성범죄자의 처벌이나 대책들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갔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흉악한 성범죄가 알려지면서 더 이상 이에 대하여 방관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져갔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 가운데 ‘성폭력’을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성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에 있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상 공소시효의 배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특

1) 뉴스한국, “끝나지 않은 조두순 사건, 2차 피해 공방”, 2009년 12월 15일자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091215180813n6508)

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전자감시의 도입,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상 법정형의 상향 조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실시 등 그동안 성폭력범죄자 처벌과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최근에 도입된 성범죄 관련 형법의 내용들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효율적 방안이라고 하나, 실제로 과잉처벌이나 이중처벌 등으로 인권보호에 역행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보호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²⁾ 성폭력범죄에 대한 신고죄 규정이 여전히 존재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은 2010년 12.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³⁾. 또한 신고죄 규정으로 인해 고소 취소시 가해자의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합의 중용을 받거나 고소기간 내에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았다.

신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동안 신고죄 규정이 성폭력을 예방하기 보다는 성폭력범죄를 피해자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게 하고, 성폭력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로 돌리게 하는 등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였다.

유엔여성차별위원회에서도 2007년과 2011년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해 신고죄 조항과 이로 인한 낮은 기소율과 유죄선고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신고죄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형법 및 관련법률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2013년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신고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에까지 신고죄가 전면 폐지되었다.

신고죄 폐지로 인해 앞으로 성폭력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 및 고발이 증가될 것이고, 수사·재판과정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죄 폐지로 피해자의 합의 유

2) 백미순·허복옥, “성폭력정책, 생존자에게 듣는다: 성폭력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20주년기념 토론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5면

3) 여성가족부, 2010 전국성폭력실태조사, 2011.

인이 감소되고, 경찰의 인지수사나 제3자의 고발에 따라 자유로운 기소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재판환경에서 피해자가 노출되는 수위가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폭력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의 전면 폐지로 인한 정책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친고죄 폐지 전후의 정책변화 방향을 비교분석하고,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재점검 뿐만 아니라 친고죄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사공판절차에서의 신문 내용 제한방안, 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 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최근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통해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있어 드러날 수 있는 한계점을 예측하고, 현행 피해자지원체제와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를 통해 피해자보호의 내실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제1장에서는 친고죄 폐지의 배경과 피해자보호의 내실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친고죄 폐지 이후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변화와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한다. 과거 아동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친고죄 폐지 전후의 변화, 형법상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기소율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친고죄 폐지로 나타날 기소율과 구속율 증가에 대하여 예측해본다.

제3장에서는 현행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체계에 대하여 검토한다.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하여 관련기관의 법률지원, 상담지원, 의료지원의 내용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형사사법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규정들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살펴본다. 영국, 독

일, 일본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지원시설 및 기관에 대한 검토,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과 운영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호 및 지원체계 마련에 있어서 시사점을 찾아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현행 피해자지원체계와 외국의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비교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친고죄 폐지 이후 야기될 피해자보호에 있어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한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와 관련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 지원 체계 및 관련법률에 대한 검토를 위해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 운영현황 및 대책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외국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각국의 범죄백서와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현황을 파악하였다.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에 대한 분석은 소개된 문헌이 많지 않은바 영국, 독일, 일본 등 각국의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하여 그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였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단계에서의 보호에 관한 내용은 관련 선행연구를 참조하거나 관련법률을 직접 검색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현행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형태와 외국의 성폭력피해자 지원형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친고죄 폐지 이후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한계점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실무 현장에서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는바, 법관이나 피해자국선변호인, 관련시설의 담당자들, 관련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업무담당자와의 면접을 통해 현행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였다.

제2장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의 환경변화

이 승 현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의 환경변화

제1절 친고죄 폐지의 의의

1. 친고죄의 개념

오늘날 국가소추주의 하에서 국가의 형벌권은 피해자 등 개인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비친고죄인 대부분 범죄의 경우 검사가 기소독점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 제기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게 된다. 반면에 친고죄인 성범죄의 경우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 영역에 속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친고죄라는 범죄유형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구체적인 규정방식이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긴 하나 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⁴⁾

일반적으로 친고죄란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지조건부 범죄라고 한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검사의 공소제기가

4) 이호중,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론”, 성폭력, 법정에 서다: 여성의 시각에서 본 법담론, 푸른사상, 2007, 226면

가능하고 고소가 취소되지 않아야 법원의 유죄판결과 형선고가 가능하다.

친고죄는 범죄를 소추해서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는 피해자의 명예보호 관점과 비교적 경미하고 주로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굳이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보호법익의 경미성에 바탕을 둔 것이다.⁵⁾ 최근 형법 개정 전 대부분 성범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강간죄(제297조), 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 강간미수 등(제300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제305조),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수수 또는 은닉죄(제292조)가 이에 해당하였다. 그밖에도 모욕죄, 간통죄, 일정범위에서의 친족간 재산범죄, 각종 행정법규에서도 친고죄 관련 규정이 있다.

2. 친고죄 관련규정의 개정역사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강간 등 상해치상죄(제301조)와 강간 등 살인치상죄(제301조의2)를 제외하고 모두 친고죄로 규정하였다. 1985년 ‘형사법개정특별심사위원회’가 발족되어 7년간 논의 끝에 1992년 형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개정과정에서 친고죄의 존폐 여부가 논의되었다.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비친고죄로 하자는 주장과 반의사불벌죄로 하자는 주장, 친고죄로 하자는 주장 등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우리의 성문화에 비추어 성범죄를 친고죄로 한 현행 형법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동개정안에서는 친고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⁶⁾

1992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산하기구로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에서 입법청원한 성폭력 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당시 국회 여야3당에서 각각 성폭력특별법을 마련하였는데 이중 민주당과 자민련안의 경우 친고죄를

5) 김선복, “친고죄에 대한 고찰”, 형사법연구 제10호, 한국형사법학회, 1998, 172면.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2, 203면.

6) 이재상, 형법개정 공청회자료집 주제발표요지, 법무부, 1992, 205면.

폐지하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자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친고죄의 완전한 폐지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1년여의 논의가 이어졌다. 그 결과 1994년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특수강도강간죄(제5조), 특수강간죄(제6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제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제8조의2), 강간등상해치상죄(제9조), 강간등살인치사죄(제10조) 등에 대하여 비친고죄로 규정하였다. 친고죄로 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고소기간을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여 고소기간을 연장하였다. 1998년 동법 개정으로 카메라등이 용촬영죄가 비친고죄로 신설되었다. 1996년 신낙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에서도 반의사불벌죄로의 전환 주장이 있었으나 입법에 실패하였다.

2000년에 청소년 성보호법이 제정되면서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동법에서는 친고죄 여부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형법 제306조는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0조는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고소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법률 제10조가 위 형법상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일 뿐 그 구성요건을 형법규정과 달리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친고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외에는 비친고죄로 해석할 수 있으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는 친고죄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 제10조 위반죄를 친고죄라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제3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취지는 청소년의 보호에 있는데 위 법 제10조를 비친고죄로 해석하여 성폭행을 당한 모든 청소년을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청소년의 보호에 역행하게 될 여지도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10조 위반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306조가 적용된다.”고 판시⁷⁾하여 친고죄로 보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강력대응 움직임이 일었고, 이후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제안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 2월 초등학교 성폭력 살해사건을 계기로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를 비친고죄로 하자는 박병관의원 형법개정 대표발의안이 제안되었다. 2006년 3월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여성재소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하여 형법 제303조 제2항과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제2항의 피구금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죄를 비친고죄로 하자는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안이 제안된 바 있다.

2006년 9월 29일 성폭력처벌법의 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친고죄 폐지는 본격적인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피구금자 추행죄(제11조 제2항)과 장애인보호시설 종사자의 간음추행죄(제11조 제3항)의 신설에 대하여는 친고죄에서 제외하였다.

같은 해 아동법에 의해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은 친고죄 형태에서 고소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가 2008년 반의사불벌죄화 하였다. 이후 2010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었다.

친고죄 관련 규정의 개정움직임을 살펴보면, 형법 제정당시부터 강간등상해치상죄와 강간등살인치상죄가 비친고죄였고, 최근에 성폭력특별법의 가중처벌 범죄유형이나 신설되는 유형을 중심으로 친고죄 폐지 영역이 확대되어 왔다. 결국 2012년 11

7) 대법원 2001.6.15. 선고 2001도1017 판결

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있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고, 아칭법에 있던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삭제되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처벌 반대의를 밝히더라도 기소와 유죄판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3. 친고죄의 존폐에 관한 논의

형법 제정당시부터 학계와 실무에서는 친고죄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친고죄를 폐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친고죄를 유지하자는 입장에서는 ① 성범죄에 친고죄를 둔 이유가 피해사실이 공개될 때 피해자의 명예 손상의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②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수사 및 공소제기가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⁸⁾, ③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리적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⁹⁾고 보았다.

반면, 친고죄를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는 ① 친고죄가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명예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② 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성이 정조관념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변화된 상황에서 국가공권력을 통한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와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며, ③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합의 중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④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강간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친고죄 폐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¹⁰⁾

8)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2, 177면; 이승호, “강제적 성범죄에 대한 효율적 형사사법 집행을 위한 제안”, 형사판례연구 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0, 369면;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2, 162면;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2, 74면.

9) 이상돈, 형법학, 법문사, 1999, 83면.

10) 김선복, “친고죄에 대한 고찰”, 형사법연구 제10호, 한국형사법학회, 1998, 175면; 박찬걸, “성폭력범죄 대처를 위한 최근(2012.12.18.)의 개정형법에 대한 검토”, 한양법학 제24권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72면; 배중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3, 242면; 서보화,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8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181면; 이미경, “성폭력 관련법 현안과제와 대안”,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법무부, 2008, 12-20면; 유숙영,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적용에 대한 검토”, 한국여성학 제19권 제1호, 한국여성학회, 2003, 221면; 전보경, “성폭력범죄 관련법상 친고죄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제56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36면; 형법개정연구회, 형사법개정연구(IV): 형법각칙 개정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03면; 한

그러나 친고죄를 폐지하더라도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처리하지는 주장도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직권으로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국가의 형사소추가 중단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① 성폭력범죄의 경우 범죄수사의 활성화와 범죄증거의 우선적 확보 필요성, ② 나중에 처벌불원을 표시하더라도 일종의 쇼크구금 효과 및 가족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 등 체포·구속 자체가 지닌 실질적 범죄억제효과에 대한 기대, ③ 소수의 피고소 범죄자에 대한 중형선고보다 다수의 범죄자가 체포·처벌될 수 있다는 믿음의 고양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효과의 증대, ④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국가의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효과의 측면 등을 감안하여 반의사불벌죄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¹¹⁾ 과거 여성단체가 친고죄 폐지를 주장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형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친고죄 폐지의 대안으로 반의사불벌죄를 활용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가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다를 바 없고, 반의사불벌죄가 불법성이 경미한 범죄에 대한 화해라는 점에서 성폭력범죄를 경미하게 볼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추구하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역할은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바 친고죄 폐지가 바람직하다.

4. 친고죄 폐지의 필요성

가. 친고죄의 피해자 보호역할 미약

성폭력범죄가 친고죄인 것은 성폭력피해자의 명예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¹²⁾ 그러나 그동안 성폭력범죄는 고소 이후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

석현·이재일, “성범죄 처벌법규의 체계적 정비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제8호, 국회입법조사처, 2011, 146면

11) 한인섭, 형법개정공청회 자료집 토론요지, 법무부, 1992, 242면

12) 여성단체에서는 이러한 발상이 성폭력 피해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며, 피해자가 밝혀지면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통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비판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0년 상담통계, 2011, 3면).

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피해자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성폭력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화, 메일, 우편, 문자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정서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등 사회적 활동도 위축시켰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사실을 외부로 알리기를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 및 친구에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할 뿐만 아니라 집과 회사를 찾아오거나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합의종용에 대한 압력은 수사과정에서도 나타나는데, 경찰 고소 후 대질심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공간에 둔 채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 등도 볼 수 있다. 합의종용에 따른 2차 가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호받을 방안도 미흡했다. 피해자가 합의종용 등에 대하여 민사소송이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재판에 위한 시간과 비용, 합의종용 중지 등에 있어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와서 애걸하는 등의 행위가 ‘가해자의 성의 또는 반성을 위한 노력’으로 비추어지기까지 했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르는 사람에게 의한 성폭력 피해보다는 친족, 직장 내 관계, 동네사람 등 아는 사람에게 의한 성폭력 피해가 더 많았다.¹³⁾ 가해자가 피고인과 아는 관계라는 사실은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가해자를 직접 고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금전을 목적으로 한 고소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여러 번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례도 늘었다. 보통의 명예훼손은 벌금형이지만 무고죄의 경우 벌금형이 높고 실형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벌금형의 경우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과정에서 무죄가 입증되기도 하지만, 재판출석과 형가중에 대한 불안감으로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었다.

13) 2011년 성폭력상담소 상담을 받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1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해자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2.19%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 78.1%가 친족, 직장내 관계, 동네사람 등 아는 사람이라고 응답하였다(백미순·허복옥, “성폭력정책, 생존자에게 듣는다: 성폭력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20주년기념 토론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9면).

나. 친고죄로 인한 불이익

친고죄와 비친고죄는 고소기간이나 처리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비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경우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범죄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는 반면에, 친고죄의 성폭력범죄는 고소제한 규정으로 인해 성폭력 고소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다(성폭력처벌법 제18조). 그리고 비친고죄인 경우 쌍방의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합의결과가 양형에 참작되는 정도이지만, 친고죄인 경우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한 피해자의 고소 취소는 형사절차를 완전히 종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친고죄와 비친고죄 범죄유형 구별의 부적절

현행법에서 성폭력범죄는 친고죄인 범죄유형과 비친고죄인 범죄유형이 구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제297조)인 반면, 형법상 강간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제301조)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권침해의 정도나 후유증 측면에서 친고죄인 강간죄와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죄를 구별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강간죄와 강간치상죄의 차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를 확보했느냐 확보하지 못하였느냐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¹⁴⁾ 이러한 구별은 성폭력범죄가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일관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다.

따라서 구법처럼 성폭력범죄 전체가 아닌 불법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친고죄 규정을 두고 있어서 불법을 같이하는 범죄에 일관된 법 적용을 할 수 없다.

라. 다른 법률에서의 폐지 움직임의 영향

최근 인권단체의 왕성한 활동과 피해자의 권리신장으로 인해 친고죄 폐지의 목

14)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친고죄 피해실태 연구, 국회의원 유승희 의원실, 2012, 2면.

소리가 한층 힘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 2010년 아청법이 개정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고, 2011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도 폐지되었다. 2012년에는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도 폐지되었다. 친고죄 폐지를 위한 대안으로 반의사불벌죄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고소기간의 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주저하더라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점,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형사절차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를 피해자가 판단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부담과 합의중용은 계속된다는 점은 친고죄일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저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았다.¹⁵⁾ 이에 따라 2012년도 형법 개정에서는 친고죄를 폐지하였다.

제2절 친고죄 폐지 전후의 피해자 신고 및 고발건수에 대한 예측

일반적으로 친고죄 폐지에 대한 가장 큰 우려가 경찰·검찰의 인지수사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고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판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불과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예측을 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나 과거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리현황과 법률 개정 이전 친고죄와 비친고죄 범죄유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친고죄가 폐지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자 신고 및 고발건수 등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15) 이호중,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론”, 성폭력 법정에 서다-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법담론, 한국성폭력상담소, 푸른사상, 2007, 234-237면.

1. 성폭력범죄 처분현황을 통해 본 예측

우선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리현황에 대하여 먼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2002년부터 10년간 성폭력범죄 현황을 보면 기소율과 구속율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구속율은 2002년 71.5%에서 2012년 25.4%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구속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성폭력범죄 대부분이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구속단계로까지 나아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있기 때문이다.

표 2-1 성폭력범죄의 접수 및 처분현황

(단위: 명 (%))

연도	접수인원		기소인원		구속인원	
	전체	13세미만	전체	13세미만	전체	13세미만
2002	10,800	630	5,024 (46.5)	445 (70.6)	3,590 (71.5)	364 (81.8)
2003	12,274	754	5,745 (46.8)	528 (69.4)	3,868 (67.3)	417 (79.0)
2004	13,714	735	5,714 (41.7)	514 (69.9)	3,491 (61.1)	400 (77.8)
2005	13,274	844	5,661 (42.6)	507 (60.1)	3,037 (53.6)	366 (72.2)
2006	15,642	844	6,863 (43.9)	538 (63.7)	3,103 (45.2)	337 (62.6)
2007	15,826	754	6,841 (43.2)	489 (64.9)	2,591 (37.9)	286 (58.5)
2008	16,958	971	7,323 (43.2)	609 (62.7)	2,861 (39.1)	330 (54.2)
2009	18,283	874	7,470 (40.9)	494 (56.5)	2,615 (35.0)	289 (58.5)
2010	21,116	1,004	8,863 (42.0)	582 (58.0)	2,920 (32.9)	358 (61.5)
2011	21,920	902	9,432 (43.0)	488 (54.1)	2,639 (28.0)	262 (53.7)
2012 (1-8월)	14,662	615	6,011 (41.0)	297 (48.3)	1,527 (25.4)	162 (54.5)

※ 출처: 2012년 국회 남윤인순 의원 요구에 따른 법무부 제출자료 (<http://nisoon.tistory.com/390>)

2. 강간죄와 강간치상죄 기소율 비교를 통한 예측

일반적으로 강간죄와 강간치상죄의 관계는 강간의 행위에 대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형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나(형법 제297조), 강간치상의 경우 강간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301조). 그러나 강간죄와 강간치상죄의 차이는 재판부가 상해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 친고죄인지 비친고죄인지 여부가 결정되게 되고, 치상의 경우에 정상참작사유가 많더라도 형법상 집행유예판결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치상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여 실형만 가능하게 된다.

신체적 상해의 경우 ①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장해가 야기된 경우(69도161), ② 요치 10일의 회음부찰과상(83도1258), ③ 처녀막 파열(94도1351), ④ 미성년자 외음부 주위의 약간의 발적과 경도의 염증(97도1725)의 경우에 상해를 인정한 반면에, ① 강간 도중 피해자의 왼편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동전크기 정도의 반상출혈(85도2042), ② 피해자의 왼편 손바닥에 약 2cm 정도의 굽힌 상처(87도1880), ③ 3, 4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가벼운 외음부 출혈 및 양 상박부 근육통(88도831), ④ 강간미수 과정에서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94도1311)에 대하여 상해를 부정하였고, 이러한 입장이 판례들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 상해의 경우 인정 여부 판단이 매우 어려워진다. ①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98도3732), ②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환반응(히스테리)증을 야기한 경우(69도2213), ③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가 심한 불안과 불면 등으로 5개월간 장기휴직 및 병가를 신청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4개월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2011노486), ④ 피해자가 임신이나 성병감염에 대한 걱정과 수치심으로 인해 8개월 정도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여러 차례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2012노409)에 대하여는 정신적 상해를 인정하였으나, ① 피해자가 사건 이후 불안감과 불면증을 호소하며 4회에 걸쳐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2011노528), ② 피해자가 불안 등을 호소하며 신경정신과에 내원하

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2개월 정도 주1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2007노530)만으로는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정신적 상해도 강간치상에서의 상해로 보았으나 의학적·객관적 기준 없이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 정도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 강간죄이나 강간치상죄이나의 문제는 피해자가 얼마나 호소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기소율 비교에 있어서 두 범죄의 유형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강간죄와 강간치상죄를 비교하면, 전체범죄 기소율 대비 친고죄인 강간죄는 기소율이 약 15%대로 현저히 낮은 반면에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죄는 약 50%에 육박하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범죄유형에 있어서 성폭력범죄가 친고죄일 때보다 비친고죄일 경우 기소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전체범죄에 대한 기소율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표 2-2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기소율 비교

(단위: 명,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범죄의 기소율		1,342,482	1,298,812	1,370,339	1,145,597	1,094,113	1,217,284	1,316,987	1,196,776	1,014,849	917,335
		55.6%	53.3%	52.7%	48.3%	45.5%	47.8%	48.1%	42.4%	42.3%	40.6%
친고죄	강간·준강간	346	308	312	283	385	350	391	376	433	392
		21.0%	17.7%	16.3%	15.1%	17.2%	16.2%	16.3%	14.4%	14.8%	13.6%
비친고죄	강간등치상	958	923	765	643	659	554	556	515	481	410
		64.5%	65.5%	57.5%	53.8%	55.1%	48.5%	53.4%	47.2%	47.7%	44.2%

* 출처: 대검찰청, 검찰연감(2012)

3.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본 예측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상담을 받은 피해자의 상담건수를 보더라도 1991년에는 전체 상담건수의 66.5%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상담이었으나 2012년에는 91.9%에 이르고 있다.

표 2-3 연도별 상담현황

(단위: 건, %)

연도	상담회수	상담건수(A)	성폭력상담건수(B)	성폭력상담비율(B/A)
1991.92	2,834	2,028	1,349	66.5
1993	1,765	1,182	841	71.1
1994	2,553	1,723	1,356	78.7
1995	2,050	1,238	1,021	82.5
1996	3,459	2,138	1,779	83.2
1997	3,424	2,295	1,647	71.8
1998	4,285	2,948	2,085	70.7
1999	5,397	3,692	2,564	69.4
2000	4,164	2,873	2,309	80.4
2001	4,995	3,593	2,869	79.8
2002	4,877	3,533	2,961	83.8
2003	4,871	3,135	2,839	90.6
2004	3,870	2,505	2,362	94.3
2005	3,979	2,348	2,151	91.6
2006	4,246	2,468	2,317	93.8
2007	3,330	2,101	1,948	92.7
2008	2,237	1,548	1,430	92.4
2009	2,305	1,481	1,338	90.3
2010	2,227	1,474	1,312	89.0
2011	1,764	1,238	1,151	92.9
2012	2,390	1,437	1,321	91.9
합계	71,022	46,978	38,950	82.9

*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현황 (2013)

검찰에서의 기소율과 구속율과 감소하는데 반해 성폭력상담소에서의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성폭력 사안이 감소한 결과가 아니라 성폭력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사건이 불처벌되고 있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 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 가운데 피해유형별로 피해자의 현황을 보면, 강간과 강제추행 피해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기소율과 구속율이 낮은 것과 달리 실제로 성폭력상담소에서는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한 상담이 많은 것으로 보아, 성폭력범죄 중 강간 등 친고죄 유형이었던 범죄유형들이 수사기관을 거치면서 상당수 걸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피해유형별 피해자 현황

(단위: 건(%))

연도	유형	강간 (준강간 포함)	특수 강간	강간 치상	강간 미수	성추행	성희롱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음란 전화)	카메라 이용 촬영	스토킹	음화 등의 제조 유통	기타	미상
	계												
2008	1,430 (100)	427 (29.9)	31 (2.2)	20 (1.4)	38 (2.7)	573 (40.1)	155 (10.8)	43 (3.0)	20 (1.4)	89 (6.2)	4 (0.3)	12 (0.8)	18 (1.3)
2009	1,338 (100)	444 (33.2)	48 (3.6)	29 (2.2)	57 (4.4)	493 (36.9)	139 (10.4)	29 (2.2)	20 (1.5)	68 (5.1)	2 (0.1)	0 (0.0)	9 (0.4)
2010	1,312 (100)	386 (29.4)	61 (4.6)	22 (1.7)	47 (3.7)	566 (43.1)	108 (8.2)	33 (2.5)	29 (2.2)	43 (3.3)	0 (0.0)	0 (0.0)	17 (1.3)
2011	1,151 (100)	371 (32.2)	34 (3.0)	11 (1.0)	22 (1.9)	470 (40.8)	101 (8.8)	37 (3.2)	27 (2.3)	26 (2.3)	2 (0.2)	4 (0.3)	46 (4.0)
2012	1,321 (100)	427 (32.4)	39 (3.0)	항목 없음	28 (2.1)	553 (41.9)	95 (7.2)	31 (2.3)	33 (2.5)	49 (3.7)	0 (0.0)	항목 없음	66 (5.0)

※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현황 (2013).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법적 지원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 이는 성폭력상담 사건의 대부분이 법적 절차의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고, 형사사법적 보호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표 2-5 성폭력상담소의 피해자 지원내용

(단위: 건(%))

연도	전체 상담건수	법적지원	의료지원		심리·정서지원	쉼터연계	기타
			의료기관 연계·동행	의료비 지원			
2010	1,312 (100)	542 (41.3)	47 (3.6)	41 (3.1)	922 (70.3)	5 (0.4)	192 (14.6)
2011	1,151 (100.0)	424 (36.8)	29 (2.5)	14 (1.2)	478 (41.5)	6 (0.5)	124 (10.8)
2012	1,321 (100.0)	648 (49.1)	88 (6.7)	32 (2.4)	526 (39.8)	2 (0.2)	25 (1.9)

※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현황 (2013).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전후 변화를 통한 예측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 전후의 기소율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범죄 기소율 대비 아청법상 기소율의 변화를 친고죄 폐지 이전인 2009년까지의 기소율과 2010년 이후의 기소율 변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2010년 아청법 개정 전후의 범죄의 기소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친고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기소율이 현저히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은 타당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2-6 전체범죄와 아청법상 범죄의 기소율 비교

(단위: 건, %)

연도	전체범죄의 기소율			아청법상 기소율		
	전체건수	기소건수	기소율	전체건수	기소건수	기소율
2004	2,284,095	1,272,709	55.7	512	269	52.0
2005	1,965,571	1,021,230	52.0	311	144	36.0
2006	1,932,729	954,253	49.4	1,348	736	54.0
2007	1,989,862	1,042,473	52.4	1,419	780	54.0
2008	2,472,897	1,268,627	51.3	1,505	703	46.0
2009	2,519,237	1,154,372	45.8	1,641	845	51.0
2010	1,954,331	877,420	44.9	547	262	47.0
2011	1,907,641	817,289	42.8	129	53	41.0
2012	1,918,474	769,833	40.1	6,709	3,412	50.0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2013).

제3절 친고죄 폐지에 따른 정책변화 방향

친고죄 규정의 폐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기간을 넘기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지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합의 중용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절차 진행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언론이나 실무에서는 친고죄 폐지로 인해 이전보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신고·고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친고죄 폐지로 인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로 인하여 고발건수 증가 등의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사건이 사건화 되길 원치 않는 피해자의 사건까지 모두 사건화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1980년대부터 성폭력 피해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생겼고,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들어오면서부터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에서의 정보권 보장, 형사절차 참여권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제4조), 일부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제15조), 고소기간의 연장(제19조), 피해자증인의 신변안전조치(제20조),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비밀누설금지(제21조), 비공개 증인신문신청(제22조), 성폭력상담소 설치(제23조 이하) 등이 도입되었다.

2007년 6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의 진술권(제294조의2), 진술 비공개(제294조의3) 등 피해자보호 관련규정이 대폭 개정되고 신설되었다. 성폭력범죄와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법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였다.

2010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피해청소년의 증언이 범죄 유무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절차 등을 마련한 바 있다.

표 2-7 관련법률별 성폭력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내용

법률명	주요내용
성폭력처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금지(제22조)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제24조)와 전담재판부(제25조) • 진술의 영상녹화(제26조) • 심리 비공개(제27조) • 전문가 의견조회(제28조) • 신뢰관계인 동석(제29조) • 화상증언방식의 증인신문(제30조) • 증거보전청구권(제31조)

법률명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디오 등 증거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165조의2) • 공판진행상황에 대한 통지권(제259조의2) • 신뢰관계인 동석(제276조의2) • 법정에서의 피해자진술권(제294조의2) •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제294조의4)
성폭력방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지원시설 운영 및 지원(제10조~제30조)
아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제25조) • 영상물의 촬영 및 보존(제26조) • 증거보전청구권(제27조) • 신뢰관계인 동석(제28조) • 서류 증거물의 열람·등사(제29조) • 피해자변호사 선임특례(제30조)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이후의 변화를 보면 따라서 사건화를 원치 않았던 피해자가 친고죄 폐지로 수사·재판과정에서 겪게 되는 피해로부터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에 대한 정책들이 제안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정책이 계속되어 보강되어 왔긴 하지만 친고죄 폐지 이후에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 달리 수사 및 재판절차에 참여하면서 받게 될 피해를 보다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

현행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이승현·김정혜

현행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제1절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1.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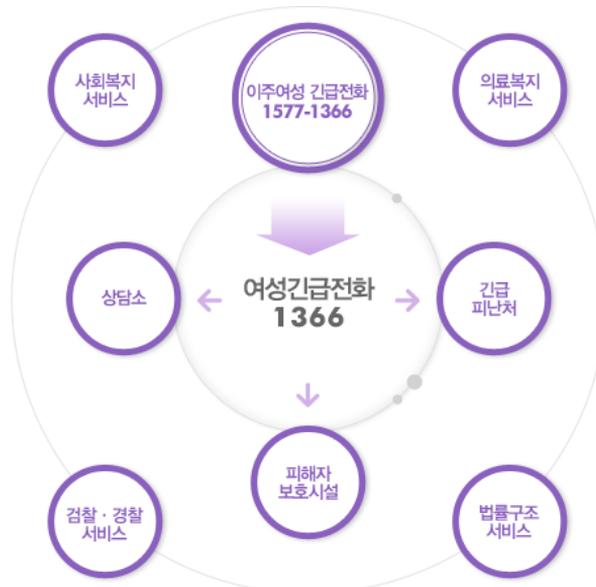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로서 범죄를 신고, 고소하고 참고인이자 증인으로 서 증언하며,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의료적 치료와 상담을 받아야 하며, 심리·정서적 지원과 더불어 피해의 종류와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같은 서비스 제공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각 지원 간의 연계를 확보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가급적 적은 노력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종류의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기관과 연락, 방문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며, 피해자는 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자신의 범죄 피해를 반복하는 과정을 겪고 피해사실 유출을 우려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지원 요청을 꺼리거나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 때문에 초기 개입 단계에서부터 수사, 재판 과정을 거쳐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지원의 종류가 늘어날수록 피해자는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각 지원이 중복되거나 혹은 누락될 위험도 발생한다. 피해자가 서로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시에 지원을 받아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지원기관에서는 다른 기관이 해당 지원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피해자는 해당 지원의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어느 곳에 요청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기관 간 연계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통합적 지원 체계의 마련을 통하여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지원기관과 지역사회의 자원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 하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각종 연대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3-1]은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보여준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상담지원, 사회복지 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수사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 정책가이드(인권보호)성폭력방지사업 개요:
 <http://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2_01.jsp>

그림 3-1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여성긴급전화 및 이주여성 긴급전화는 성폭력 피해 접수 시 위기상담을 수행하고 긴급보호를 제공하거나 상담기관으로 연계한다. 정부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연계 등을 수행한다. 또한 한 곳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유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로서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두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무상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이 전국에 지정되어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은 상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초기 지원과 더불어, 성폭력 피해 관련 형사, 민사, 가사 사건을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 제도,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수사기관에서는 검찰, 경찰에 성폭력 사건 전담부를 두어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담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통합지원으로 나누어 각 지원의 내용과 현황을 살펴본다.

2. 상담지원체계

가. 성폭력피해상담소

우리사회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의심, 낙인에 노출되곤 한다. 때문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는 범죄 피해 이후 범죄를 신고하고 피해배상을 받기 이전에 범죄를 범죄로서 명명하고 행위의 성질을 확인하며 사건에 대처할 방법을 공유하는 심리·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이 다른 범죄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가 있다. 1991년, 성폭력 전문 민간 상담기관인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에 이어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

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소 설립이 증가하고 피해자 지원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었다.¹⁶⁾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수사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피해자를 상담소에 연계하기도 한다. 2012년 기준 전국 176개의 상담소가 연간 144,000여 건의 상담을 하고 있다. 그 중 53.3%인 77,000여 건이 성폭력 상담이다.

표 3-1 지역별 성폭력피해상담소 현황¹⁷⁾

(단위: 개소)

지역		전체	장애인	지역		전체	장애인
서울경기	서울	20	3	경상	부산	6	1
	경기	41	4		대구	4	
	인천	6	2		울산	4	1
충청	대전	5	1		경북	16	2
	세종	1			경남	14	1
	충북	7	1		전라	광주	11
	충남	10	2	전북		12	2
강원	6		전남	10		1	
제주	3	1	계		176	23	

표 3-2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2012년 상담현황¹⁸⁾

(단위: 건, %)

계	성폭력 상담	기타 상담									
		소계	가정 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 갈등	성상담	가족 문제	중독	기타	
전체	144,692	77,099	67,593	8,169	1,179	2,946	6,326	15,468	7,924	2,234	3,347
	100.0	53.3	46.7	5.6	0.8	2.0	4.4	10.7	5.5	1.5	16.1
장애인	24,671	17,928	6,743	1,355	336	95	43	1,018	760	243	2,891
	100.0	72.7	27.3	5.5	1.4	0.4	0.2	4.1	3.1	1.0	11.7

16) 윤상민,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폭력상담소의 지원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381면

17)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57면의 표를 재구성한 것이다. 2012년 하반기 기준이다.

18)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2년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2103, 2면.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2_05a.jsp>, 검색일: 2013.8.20.

상담소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설립 요건을 충족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상담소는 전화상담, 면접상담 등을 통하여 개별상담 또는 집단상담의 형태로 피해자를 정서적·심리적으로 지원하고, 사건에 대응할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동거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피난처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로 연계하고,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피해자의 필요를 파악하여 지원을 의뢰하거나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한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재판이 진행되면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 진행에 대하여 안내 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의견서나 탄원서 등을 제출한다. 또한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신뢰관계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제공 의뢰, 관련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표 3-3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업무(보호법 제10조)

1. 성폭력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3.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4.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예의 동행
5.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상담소는 피해자를 업무 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지원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전체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하고 활용 가능한 지원이 어떤 것인지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며, 해당 기관에 피해자를 대신하

여 지원을 의뢰하고,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 확인을 하여 피해자에게 지원의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한다.

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정서적 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연계 등을 수행한다.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동의권자인 보호자가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친족성폭력 피해자이거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지만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면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¹⁹⁾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상담소는 신고로써 설립할 수 있으나 보호시설은 인가를 요하는 차이가 있다. 보호시설은 일반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로 구분된다.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치료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이거나 여성가족부장관이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생활환경 또는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장애인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2년 이내인데,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

19) 다만 보호자 동의 없이 입소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회당 2년 이내로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소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친족관계 강간·강제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²⁰⁾의 피해자 중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친족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성폭력이 발생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성년이 되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집을 떠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처럼 학교에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별도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상담, 치료, 보호, 학업 및 자활 등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²¹⁾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피해자가 19세가 될 때까지 입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피해자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²²⁾ 피해자의 보호자가 동반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숙식, 상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²³⁾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보호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가 대상이며,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장애인보호시설 퇴소자만이 대상이 된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은 2년 이내이다. 다만 피해자가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이수 중인 때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2013년 1월 현재 전국에 21개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 중 3곳이 위탁형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서 충북, 부산, 광주에 있다. 19세 미만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경북과 경남 2곳이다. 일반보호시설에도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입소할 수

20)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하여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 친족에 의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 죄를 말한다.

21)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85면.

22)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은 피해자가 만 18세에 도달하였으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업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87면.

23)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85면.

는 있지만 각 시설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²⁴⁾

표 3-4 지역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²⁵⁾

(단위: 개소)

지역	일반	장애인 (위탁형)	특별 지원	계	지역	일반	장애인 (위탁형)	특별 지원	계	
										서울경 기
	경기	4			4	대구	1			1
	인천	1			1	경상 울산	1			1
충청	대전				0	경북			1	1
	세종				0	경남			1	1
	충북	1	1		1	광주	1	1		2
	충남				0	전라 전북	2			2
강원	1			1	전남				0	
제주	1			1	계	16	3	2	21	

표 3-5 전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변동 추이²⁶⁾

(단위: 개소, 명)

연 도	개소수	입소정원	종사자수		
			계	상근직	비상근 자원봉사
2008	18	197	105	57	48
2009	20	214	116	69	47
2010	19	209	100	72	28
2011	19	209	90	64	26
2012	22	249	104	96	8

2012년을 기준으로 보호시설의 입소정원은 249명이고 104명의 상근, 비상근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2008년 이래로 보호시설의 수는 매년 1개소 꼴로 증가하

24) 일반보호시설 중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시설이 있다. 서울의 보호시설 2곳 중 한아름북지회에서 운영하는 ‘꿈밭에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25)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67면의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2013년 1월 기준이다. 2013년 중 대전, 충남, 전남 지역에 장애인 위탁형 보호시설이 추가로 개소 예정이다.

26)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2년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2013, 6면 위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과 보호시설 수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여, 각 인용 자료를 그대로 옮기기로 한다.

였고 입소정원은 26.4% 늘었다. 종사자 수는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 비상근 자원봉사자에 비하여 상근자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2012년 한 해 동안 236명이 입소하고 209명이 퇴소하였다. 2012년 말 현재 184명이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보호시설 수는 증가하였으나 입·퇴소 인원은 대폭 줄었다. 2012년의 입소인원은 2008년의 54.0%, 퇴소인원은 49.2% 수준이다.

표 3-6 전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²⁷⁾

(단위: 명)

연도	구분	입소인원	퇴소인원	연말 현원
2008	전체	437	425	151
	장애인	112	110	61
2009	전체	312	299	142
	장애인	90	69	66
2010	전체	282	230	187
	장애인	90	62	88
2011	전체	226	226	181
	장애인	64	64	87
2012	전체	236	209	184
	장애인	78	78	105

보호시설 이용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지만, 장애인 전용 보호시설의 수는 매우 적다. 장애인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피해자는 일반보호시설로 연계 되는데, 장애인 피해자의 입소 허용 여부는 각 보호시설마다 달라서, 장애인보호시설 정원 초과로 보호시설 입소가 아예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장애인 피해자는 20세 이상이, 비장애인 피해자는 19세 이하가 더 많다. 19세 이하 중에서는 14~19세의 연령대가 45.8%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19세 이하 비장애인 중에서는 52.5%가 동 연령대 이용자이다.

27)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2년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2103, 6면.

표 3-7 전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현황²⁸⁾

(단위: 명, %)

년도	구분	계	7세미만	7-13세	14-19세	20세이상
2008	전체	437	21	60	6160	196
		100.0	4.8	13.7	36.6	44.9
	장애인	112	0	12	51	49
		100.0	0	10.7	45.5	43.8
2009	전체	312	13	33	125	141
		100.0	4.2	10.6	40.1	45.2
	장애인	90	0	3	33	54
		100.0	0	3.3	36.7	60.0
2010	전체	282	10	30	120	122
		100.0	3.5	10.6	42.6	43.3
	장애인	90	0	5	29	56
		100.0	0	5.6	32.2	62.2
2011	전체	226	14	15	88	109
		100.0	6.2	6.6	38.9	48.2
	장애인	64	-	-	22	42
		100.0	-	-	34.4	65.6
2012	전체	236	10	12	108	106
		100.0	4.2	5.1	45.8	44.9
	장애인	78	1	1	25	51
		100.0	1.3	1.3	32.1	65.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보호시설은 입소자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법률상담, 심리상담,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며, 피해자가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하여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령기 아동인 경우, 주소지가 아닌 보호시설 인근 학교로 출석을 원할 때에는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 성폭력 발생 사실을 소명하고, 전·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²⁹⁾

28)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2년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2103, 7면.

표 3-8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업무(보호법 제13조)

1. 피해자들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4. 피해자들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예의 동행
6.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8. 기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동 프로그램은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심리 치료 등으로 구성되며,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보호시설뿐 아니라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등이 관련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여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지원한다. 2011년에는 총 2,071명이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표 3-9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현황³⁰⁾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명	1,119	847	1,477	1,525	1,768	2,071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보호시설인 열림터의 경우 개별상담, 심리치료지원, 법률지원, 학교지원, 학습지원, 직업훈련 등을 진행하며, 치유회복 및 여성주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에 실시된 프로그램으로는 건강권 교육, 섹슈얼리티 상담 및 집단 성교육, 치유하는 글쓰기, 여름캠프, 연극놀이로 하는 비폭력 대화, 미술치료, 문화체험, 심신단련 활동 등이 있다. 치유하는 글쓰기는 9회기, 미술치료는 총 10회기로 진행되었고, 문화체험으로는 방송댄스, 풍선아트, 비즈공예, 연극 및 뮤지컬 관람 등이 포함되었다. 학교지원 및 학습지원은 전학 및

29)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71면

30) 여성가족부, 정책가이드 <인권보호> 성폭력방지> 사업개요, 성폭력 방지 인프라 확충:

<http://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2_01d.jsp>, 검색일: 2013.8.20.

진학 관련 지원, 담임교사와의 면담과 연락, 재능기부를 통한 개인과의 지원 등이 다.³¹⁾

3. 법률지원체계

가. 무료법률상담 및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 지원

피해자 상담은 심리·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 모색을 주요한 축으로 한다. 때문에 상담 도중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는 필수적이다. 상담소, 보호시설에서는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서 법적 대응이 갖는 의미, 수사 개시 이후의 사건 처리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면 상담원은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 피해자와 동행하여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며 상담기록, 의견서 등을 제출한다.

보호법은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법률지원 업무로서 형사사법기관에 동행하고 법률지원을 연계하는 역할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는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여 직접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기도 한다. 후술할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도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경우는 법률자문위원단, 월요법률상담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법률자문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건당 50분 간 최대 2건의 상담이 가능하다. 2012년에는 12명의 변호사가 62건을 자문하였다.³²⁾ 이 같은 지원은 무료법률구조가 개시되거나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자원 등을 이해하고 향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31)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년 제22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자료집, 2013, 65면 이하.

32)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년 제22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자료집, 2013, 15~16면.

나. 무료법률구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는 범죄 피해의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절차에서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2012년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425건의 무료법률구조가 수행되었다.

표 3-10 성폭력 피해여성 무료법률구조 현황³³⁾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건	41	72	145	111	127	222	281	414	358	425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는 무료법률구조 사업의 대상 사건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형사사건 등이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경우,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서 사건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자력 및 권리구제 능력, 방어 가능성 정도, 기타 법률구조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피며, 피해자가 ①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 ②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여성,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④ 보호시설 입소자인 경우를 우선 구조대상으로 하고 있다.³⁴⁾ 성폭력 피해자는 자격 제한이 없이 구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산 부족으로 심사를 거쳐 구조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다.³⁵⁾

33) 여성가족부, 정책가이드 > 인권보호 > 성폭력방지 > 사업개요, 성폭력 방지 인프라 확충.

<http://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2_01d.jsp>, 검색일: 2013.8.20.

34)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위탁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상반기 실무자 워크숍 자료집: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 시행 이후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법적 지원 모색, 2013, 19~20면.

35)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구조비 예산이 소진되어 지원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2013년에는 5월 30일에, 2012년에는 6월 4일에 무료법률구조 신청 마감 안내 공지글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13년도 무료법률구조 신청 마감 안내, 2013.05.30.: <<http://www.rapel119.or.kr/board/notice.html?bbsid=notice&gbn=view&ix=3355>>, 검색일: 2013.8.20.;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알림마당 > 공지사항, 무료법률구조지원 마감 안내, 2012.6.4.: <<http://www.rapel119.or.kr/board/notice.html?bbsid=notice&gbn=view&ix=3139>>, 검색일: 2013.8.20.

지원 내용으로는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수사 의뢰, 사건 조사 동행, 고소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가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건도 법률구조 대상 사건이다. 피해자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폭력에 의한 상해를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진단서,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중 하나 이상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법률구조 대상에 선정되면 피해자는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1인당 350만 원을 초과하는 구조비는 심사기구에서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³⁶⁾

민사, 가사사건은 법률상담을 거쳐 법률구조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조사 후 화해권유를 하게 되고, 화해가 불성립하였을 때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형사사건은 화해권유 절차가 생략된다.³⁷⁾

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범죄 피해자,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2012년 3월 16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2013년 6월 19일부터 모든 연령대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로 확대되었다. 2012년에는 19세 미만이 성폭력 피해자인 사건 중 총 2,908건에서 법률조력인이 지정되어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수행하였다.³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36)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233~235면.

37)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234면.

38) 백미순 외,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연구, 법무부, 2013, 20면.

4. 의료지원체계

가. 의료비 지원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지원 대상은 성폭력 피해자,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 제한되던 것이 성폭력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³⁹⁾ 다만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증상의 정도가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지원한다.

의료지원은 피해자의 의료상담, 성폭력 피해의 신체적·정신적 치료, 성병 감염, 임신 여부 검사 및 치료, 낙태 시술, 증거 수집을 위한 검사 등에 대하여 가능하다. 치료는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하므로 산부인과에만 제한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내과 등도 포함한다.⁴⁰⁾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에 대하여 낙태 시술을 지원할 때에는 부검 및 화장 비용, 수술 후 회복에 필요한 진료와 투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의 원인이 성폭력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적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가 낙태가 아닌 출산을 결정할 경우 출산 관련 의료비가 지원에 포함된다. 지적장애인 피해자와 보호자가 재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피임시술을 원하는 경우 의료비로 지원이 가능하다.⁴¹⁾

39)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16면.

40)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122면.

41)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2013년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사업안내, 2013, 28면.

표 3-11 성폭력 피해자 등 의료지원의 범위⁴²⁾

1.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상담 및 지도
2. 성폭력 피해의 치료(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내과 등 포함)
3. 성병 감염 여부 검사 및 감염 성병 치료(비뇨기과 등)
4. 임신 여부의 검사
5.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6. 성폭력 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7. 성폭력 피해로 인한 후유증(트라우마 등 정서·심리치료) 등 정신질환의 치료
8. 진단서 발급, 기타 성폭력피해 증거물 수집을 위한 검사 등

시·도, 시·군·구,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의료비 예산을 배정하면,⁴³⁾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상담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치료비를 청구한다. 피해자가 이미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나 수사기관에의 사건 접수증 사본 또는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한다.⁴⁴⁾ 2011년 9,710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 이는 2006년에 비하여 86.1% 증가한 것이다.

표 3-12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현황⁴⁵⁾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명	5,217	7,340	8,376	8,834	8,460	9,710

기존에는 피해자가 지원받은 금액이 연간 300~500만원 범위인 때에는 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2013년부터 의료비 지원 심의 절차와 한도가 폐지되고 다만 지원 기간에 따라 구분을 두고 있다. 의료지원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지원액의 한도나 심의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지원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의

42)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122면.

43)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124면.

44)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126면.

45) 여성가족부, 성폭력 방지: 사업개요, 성폭력 방지 인프라 확충,

<http://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2_01d.jsp>, 검색일: 2013.8.20.

료지원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지원 계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보호법 제27조). 적정 개소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준)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담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준)종합병원인 없는 지역에서는 응급실 및 야간당직실이 갖추어져 있는 산부인과, 성폭력 피해자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1월 현재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은 전국에 330곳이 지정되어 있으며,⁴⁶⁾ 종합병원이 지정된 지역에서도 산부인과, 내과, 외과, 치과, 신경정신과 등 단일 과목만을 진료하는 1차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다.⁴⁷⁾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지방의료원은 필수적으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담소, 보호시설과 의료기관 간의 활발한 연계를 위하여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연계 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⁴⁸⁾

전담의료기관은 성폭력 증거 수집을 위한 ‘성폭력 응급키트’를 신청하여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 성폭력 응급키트는 주로 종합병원 및 산부인과를 위주로 보급되고 있다. 성폭력 응급키트 처치 시에는 개당 75,000원의 처치료가 지급된다. 사용한 키트는 기타 증거물과 함께 담당 경찰관에게 인계하고, 인계하지 않은 키트는 의료기관에서 사용일로부터 1년 간 보존하여⁴⁹⁾ 차후에 수사가 진행될 경우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6)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138면.

47) 여성가족부, 정책가이드 <인권보호> 성폭력방자 > 자료살 > 2012년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현황, 2012.3.30.: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2_05.jsp>, 검색일 2013.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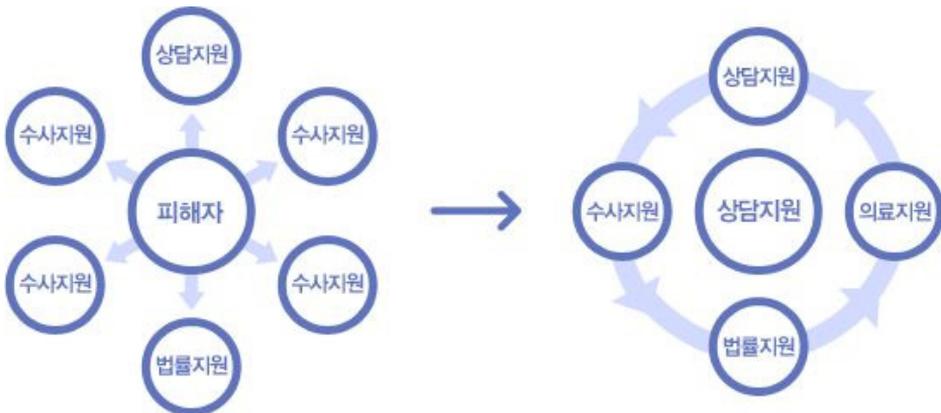
48)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140면.

49)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137~139면.

5. 통합지원체계

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다양화되고 관련 기관이 증가하면서, 피해자는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지원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피해자는 지원을 받기 위하여 여러 기관과 연락하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에 대응하고자 구성된 조직이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이다.



* 출처: 여성가족부, 정책가이드〈인권보호〉성폭력방지) 사업개요, 피해자에 대한 ONE-STOP 지원서비스 체계화: <http://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2_01d.jsp>

그림 3-2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와 원스톱지원센터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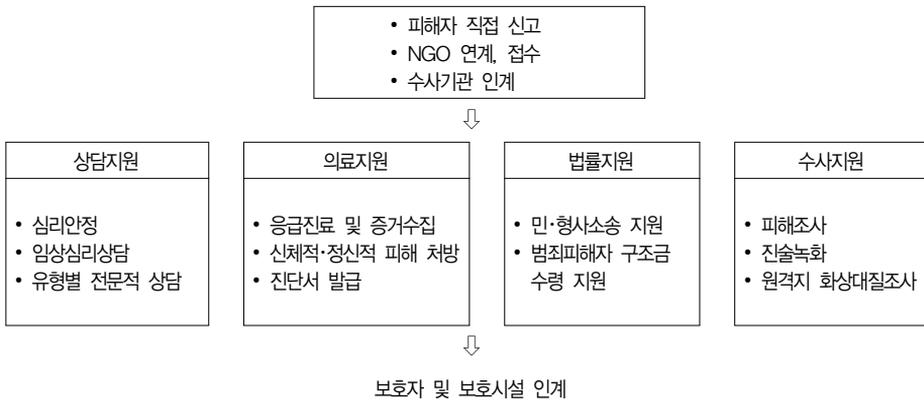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수사, 의료, 법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의료기관이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다. 2005년 서울 경찰병원에 서울센터가 처음 설치된 이래로 전국에 1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⁵⁰⁾

50) 안전사회, 인천북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013.5.9. : <http://safe.korea.kr/newsWeb/pages/special/safesociety/news/newsView.do?newsId=148760192§ionId=safepolicy_02>, 검색일: 2013.8.20.

각 센터는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의 상담전문가, 간호사 1명, 지역 지방경찰청 여성경찰관, 행정요원으로 구성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야간에도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진술, 증거물 수집, 응급 치료, 일시보호 등이 가능하다.

[그림 3-2]는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의 지원서비스를 보여준다. 경찰이 주축이 되는 수사지원팀은 피해자 조사, 조서 작성,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수집, 고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상담법률지원팀은 사례접수 및 관리, 응급상담, 지원 연계, 사후관리, 법률 자문 등 법적 지원, 법적 절차 모니터링 등을, 간호사와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로 구성된 의료지원팀은 피해자 응급처치 및 치료, 산부인과, 정신과 진료 및 치료, 기타 외상 치료를 담당한다.⁵¹⁾

표 3-13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지원서비스 흐름⁵²⁾



나. 해바라기아동센터 및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는 19세 미만이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 및 외상 치료, 심리평가 및 치료, 사건 면담, 법률지원, 상담지원

51)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원스톱지원센터: 조직구성, <http://womannchild.or.kr/sub02_3_1.asp>, 검색일: 2013.8.20.
 52)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원스톱지원센터: 지원내용, <http://womannchild.or.kr/sub02_3_2.asp>, 검색일: 2013.8.20.

등을 수행한다.⁵³⁾ 2004년 서울센터가 연세의료원에 위탁 운영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서울, 인천, 대구, 광주, 경기, 충청, 전북, 경남의 8개 센터⁵⁴⁾가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의 조직구조 표준안은 의료지원팀, 법률지원팀, 심리지원팀, 행정지원팀, 상담지원팀으로 해바라기아동센터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⁵⁵⁾ 법률지원은 법적 절차 지원, 고소·고발 지원 등을 의미한다.⁵⁶⁾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처럼 경찰이 상주하고 있지는 않아서 센터 내에서 곧바로 수사가 개시될 수는 없다. 다만 필요시 진술녹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⁵⁷⁾ 아동 피해자는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센터에서 경찰이 아동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출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린 아동을 제외하면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원스톱지원센터나 일선 경찰서로 이동해야 했고, 지원 대상 역시 13세 미만⁵⁸⁾ 또는 지적장애인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지적장애 외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청소년과 성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2009년 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추진단에서 두 센터의 통합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가 설립되었다. 2010년 부산센터가 최초로 개소하였고, 뒤이어 서울, 강원영동, 전남, 울산, 강원, 경북센터가 설립되어 현재 7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⁵⁹⁾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상담실, 피해자 안정실, 산부인과 진료장비를 구비한 진료실, 진술녹화실, 피해자 대기실, 심리평가실, 심리치료실 등의 시설을 갖춘 것이 요구된다. 표준 조직은 의료지원팀, 상담법률지원팀, 심리지원팀, 행정지원팀,

53)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2013년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사업안내, 2013, 87면

54)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해바라기아동센터: 지역센터안내
 <http://womannchild.or.kr/sub02_2_3_list.asp>, 검색일: 2013.8.20.

55)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2013년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사업안내, 2013, 8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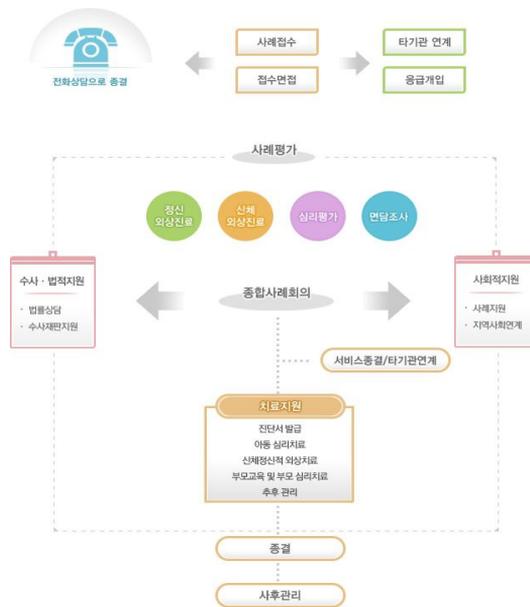
56)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2013년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사업안내, 2013, 92면

57)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2013년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사업안내, 2013, 90면

58) 2011년까지는 지원 대상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었다.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2011년도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보고서, 2012, 3면

59) 여성가족부는 통합지원센터를 31개소에서 2013년 내에 36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수사지원팀으로 구성하며, 의료지원팀은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및 간호사, 상담법률지원팀은 상담원, 심리지원팀은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수사지원팀은 파견 경찰이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지원으로는 응급처치 및 치료, 산부인과·정신과 진료 및 치료, 기타 외상치료를, 상담법률지원은 사례접수와 면담조사, 지속상담, 재판 모니터링, 무료법률구조, 사회적 지원, 집단 프로그램 등으로 행해진다. 심리지원은 피해아동·청소년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가족 치료, 수사·재판 시 의견 제시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수사지원은 피해자 조서 작성, 진술녹화 지원, 증거 수집 및 고소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⁶⁰⁾ [그림 3-3]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지원서비스의 흐름이다. 사례가 접수되면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법적 지원, 치료, 사회적 지원, 상담 등이 센터 내에서 이루어진다. 수사와 응급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원스톱지원센터에 비하면 좀 더 긴 기간의 지원이 가능하다.



* 출처: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지원내용, <http://womannchild.or.kr/sub02_4_2.asp>

그림 3-3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지원서비스 흐름

60)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2013년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사업안내, 2013, 99면

서울대학교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센터의 지원 내용을 예로 들어보면, 상담지원, 법률지원, 수사지원, 심리평가, 심리치료,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첫째, 상담지원으로서, 24시간 상담이 운영된다. 초기상담에서는 응급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 내용과 피해자 및 가족의 필요를 파악하며 센터의 지원과정을 안내한다. 수사가 필요한 때에는 센터에 상주하는 경찰관과의 상담 및 수사 연계를 수행하고, 의료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연계하며,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둘째, 법률지원으로는 법률전문가인 센터 운영위원의 법률상담,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한다. 재판이 시작되면 상담원 등이 신뢰관계인으로 피해자와 동행하거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셋째, 수사지원을 위하여 24시간 여성 경찰관이 센터에 상주한다. 경찰관은 고소와 관련한 상담을 수행하고, 피해자가 신고, 고소하면 센터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피해자가 요청할 때에는 센터의 상담사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은 녹화하여 불필요한 추가 조사를 방지한다. 성인 피해자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진술녹화를 실시한다. 아동 및 지적장애인 진술녹화 시에는 아동진술분석전문가가 참석하여 진술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다. 조사 후 경찰서 및 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사건을 연계하고, 증거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다.

넷째, 심리평가를 시행하여 피해자 및 보호자의 치료적 접근과 계획을 세우고 법적 지원에 활용한다. 심리평가는 임상심리사가 실시하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 피해자의 성격, 정서, 행동, 지적수준, 주의력 및 자기표현능력, 사회성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보호자의 정서, 성격 및 양육태도 등을 평가한다.

다섯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리치료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되고, 지적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놀이치료, 모래치료, 미술치료, 상담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집단치료, 성교육 등이며,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상담치료, 보호자 교육, 자조모임 등이 있다. 지적장애인은 치료 프로그램으로 미술치료, 놀이치료를 운영하며, 언어치료 등 기타

치료 프로그램은 타 기관에 연계한다. 교육프로그램으로 자기주장훈련, 성교육, 의사표현 연습, 피해 후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한다. 사후관리로서, 치료 및 법적 지원 이후에도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피해자 및 보호자의 일상생활 적응여부에 대해 상담하며, 어려움이 발견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여섯째, 의료지원이다. 병원 내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24시간 응급의료 지원 및 신속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다.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응급의학과 등 서울대병원 내의 모든 진료를 지원한다.⁶¹⁾

제2절 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1.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은 1998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위기개입 서비스이다. 2001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폐지되고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긴급전화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다. 2012년 9월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여성긴급전화중앙지원단이 설치되고 ‘여성긴급전화 1366 중앙센터’ 및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이 신설되어 각 지역 센터를 관리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총 17곳⁶²⁾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구, 광주, 충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그 외의 지역은 민간단체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⁶³⁾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수원, 대전, 부산, 광주, 구미, 전주의 6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결혼이주 여성이 증가하면서 여성폭력 피해를 겪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상담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주여성의 모국어로 상담을 제공하

61)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지원프로그램: <http://www.help0365.or.kr/sub_3_1.php>, 검색일: 2013. 8.20.

62) 본래 시, 도 권역별로 1곳씩 총 16곳이었으나, 경기 북부 지역 센터가 2011년에 개소하면서 17곳으로 늘어났다. 경기북부 여성긴급전화 1366: <<http://www.ggbb1366.or.kr>>, 검색일: 2013.8.20.

63) 여성긴급전화 1366 현황: <http://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p_1366.jsp>, 검색일: 2013. 8.20.

기 위하여 2006년 개설된 이주여성을 위한 긴급전화이다. 총 12개국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성폭력 관련법이 아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 내용 또한 가정폭력이다.⁶⁴⁾ 그러나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가정폭력뿐 아니라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⁶⁵⁾

연중 휴무 없이 365일,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야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나 상담 요청에도 곧바로 대응이 가능하다. 1차적으로 전화 상담을 하고, 위기상황에는 긴급출동, 경찰 신고, 의료구조 요청,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등으로의 연계 업무를 수행한다.

보통 다른 상담기관의 업무시간대에는 타 기관으로 상담을 연계하고, 야간이나 휴일 등 타 기관으로 연계하기 어려운 시간대에는 직접 긴급상담을 한 후 익일 오전에 상담소로 연계한다. 상담소는 야간 근무자가 없을 경우 퇴근 시 상담전화를 여성긴급전화에 착신전환하여 야간의 피해자 지원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⁶⁶⁾

지역 센터에는 긴급피난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야간에 긴급하게 피난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일시보호 쉼터를 제공한다. 긴급피난시설은 일시적으로 보호를 제공하는 곳으로 최대 7일 이내에 다른 보호시설로 연계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긴급전화는 긴급피난 현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택근무를 하는 현장상담원이 긴급 필요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상담, 경찰서 및 보호시설 연계, 의료 지원 및 법률지원 연계 등을 수행한다. 현장출동 시에는 2인 1조를 구성하여 출동하거나 경찰과 동행한다.⁶⁷⁾

64) 2013년 상반기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는 총 11,717건의 상담을 접수하였는데 그 중 성폭력은 6.2%인 724건이다. 서울1366, 자료실> 상담통계 및 분석, 2013년6월상담실적통계, 2013.7.7.: <<http://www.seoul1366.or.kr/sub10/detail.php?code=6&rowid=646>>, 검색일: 2013.8.20.

65)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499면.

66)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504면.

67)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503면.

전북센터⁶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2년 전체 상담 8,075건 중 현장출동 협조는 276건으로 전체 상담의 3.4%에서 현장출동 협조가 이루어졌다. 이 중 경찰출동요청, 119출동요청,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출동요청을 제외하고 현장상담원의 출동요청은 228건이다. 현장상담원의 출동요청사항으로는 보호시설 연계가 2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병원 연계가 17.5%, 귀가 동행이 13.6%, 전문기관 연계가 11.8%, 긴급피난처 보호가 10.1%순이었다.

표 3-14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2012년 상담조치 결과⁶⁹⁾

조치 결과	건	%
관련기관연계	4,180	51.8
직접상담	3,329	41.2
2차상담권고	842	10.4
현장출동협조	276	3.4
긴급피난처 피신	239	3.0
기타	38	0.5

* 중복응답

표 3-15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2012년 현장상담원 출동요청사항⁷⁰⁾

요청사항	건	%	요청사항	건	%
보호시설연계	50	21.9	경찰연계	14	6.1
병원연계	40	17.5	방문상담	7	3.1
귀가동행	31	13.6	연고자연계	4	1.8
전문기관연계	27	11.8	기타	32	14.0
긴급피난처	23	10.1	계	228	100.0

68)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 통계가 확인되지 않아, 홈페이지에 사업보고서가 게시되어 있는 전북센터의 자료를 인용한다.

69)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2012년 사업보고서, 2013, 9면.

70)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2012년 사업보고서, 2013, 11면.

2.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아동 및 여성에 대한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각 지역의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구축한 연대체로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가 있다. 지역연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 및 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 및 연계, 자원과 정보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⁷¹⁾

지역연대는 광역시·도 단위의 광역지역연대와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역연대로 구분된다. 운영주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지방자치단체 아동 업무 관련 부서 및 여성업무 관련 부서,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시설, 아동보호관련 기관·시설, 청소년상담지원시설,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및 사법기관, 지역주민대표, 학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여 17~25인⁷²⁾으로 구성하되, 지역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관련,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은 반드시 포함한다.

지역연대는 아동, 여성의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폭력 위기 및 폭력 피해 아동·여성에 대하여 긴급사례개입 및 사례관리 등 위기관리, 관련 예방 사업을 실시한다. 위기관리에 있어, 광역지역연대는 긴급사례개입 및 기초지역연대의 긴급사례개입 지원, 기초지역연대의 사례관리팀 구성 및 조정, 다수 기초지역연대 관련 사례의 경우 연계 협력 조정, 기초지역연대 사례관리팀 인력 및 시설 지원을 담당한다.

기초지역연대는 직접적인 개입을 수행하는데, 폭력위기 및 피해 아동·여성 긴급구조, 사례관리를 한다. 사례관리는 기초지역연대 내의 사례관리팀에서 시행한다. 사례관리팀은 지역연대 참여기관의 실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개별 사안을 협의, 관리한다. 사례관리는 ① 참여기관의 사안확인 및 위험성 평가, ② 사안회부, ③ 대상사례에 대한 사전조사 및 정보수렴, ④ 사안검토를 위한 회합 및 정보교류,

71)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44면

72) 기초지역연대는 지역 사정에 따라 10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⑤ 대응계획과 조치의 수립, ⑥ 사후관리 순으로 이루어진다. 사례관리팀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열어야 한다.⁷³⁾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중 가장 최근에 개정된 은평구의 조례⁷⁴⁾를 살펴보면, 은평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인 이내의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을 둔다. 위원회는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아동·여성안전 관련 사업,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업,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사례관리팀 회부사항, 시행계획 수립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제3절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1.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가. 법률조력인제도

아청법 제30조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변호인 선임특례로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조력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도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2차 피해나 피고인과의 합의과정에서 2차 피해 등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하기 위해 법률조력인제도가 도입되었다(동법 제27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동조 제1항).

73)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45-47면

74)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일 2013.6.13., 시행일 2013.6.13.

1) 법률조력인의 지정

현행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 30조). 특히, 법정대리인이 없는 피해자,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법정대리인을 둔 피해자, 특수강간이나 친족에 의한 강간 등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검사가 법률조력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급 검찰청은 법률조력인을 신청한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들로 구성된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하고 사건발생시 이들 중 법률조력인을 지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의무지정사건에 해당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법률조력인의 지정기간은 불기소처분 또는 판결확정시까지이다. 재판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검사에게 그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사건심리규칙 제10조).

2) 법률조력인의 권한

법률조력인은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조사시 수사기관 출석권, 공판절차 출석권, 증거보전절차 청구권 및 참여권,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 열람·등사권,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청소년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 수사기관에의 출석권과 증거보전절차절차 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동법 제18조의6). 여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인은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27조).

① 조사 및 공판 참여 및 의견진술권

신뢰관계인이 조사과정에 동석만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피해자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동조 제3항).

2013년 개정된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성폭력사건심리규칙’이라 한다.)」에서는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의견진술의 신청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또는 제출과 함께 할 수 있다.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의 순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재판장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구할 수 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다. 재판장은 ①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기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동규칙 제6조).

실제 사건에서 현행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조력인으로서 피해자변호사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진술오염으로 증거가치를 잃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기 보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유죄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과 유죄입증을 위한 증거확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입증과 무관한 질문을 배제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유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이후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얻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필요한 질문사항을 메모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질문을 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보호와 사적 비밀보호를 위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의 질문이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도 개진하기도 한다.⁷⁵⁾

② 관련서류의 열람등사권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동조 제4항).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동조 제5항).

③ 국선변호

아청법 개정으로 2012년 3월 16일부터 국선법률조력인제도도 실시되고 있다. 성폭력전담검사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에 따라 법률조력인을 지정한다. 특히, 법정대리인이 없는 피해자,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법정대리인을 둔 피해자, 특수강간이나 친족에 의한 강간 등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검사가 법률조력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한다(제30조). 그러나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피해자의 경우에도 변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2012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모든 연령대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로 확대되었다.

피해자국선변호인 제도 도입 당시 관련법률안 검토 과정에서 검사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무기평등의 원칙, 검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와 조화롭지 못하고, 민·형사 통합 법률지원을 위해 법원이나 변호사회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한다 할지라도 재판단계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대한 취소 또는 재

75) 이희경, “성폭력범죄피해실태와 개정법상 피해자보호 및 지원방안”, 한국피해자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3.4.26., 23면

선정, 국선변호인의 사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원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⁷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확정시까지 변호사가 계속 사건을 담당하여 피해자를 조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2013년 2월말 현재 성폭력범죄 피해자 법률조력인제도에 의해 무료법률지원을 받은 성폭력피해자는 3,367명에 이른다.⁷⁷⁾

2012년에 19세 미만이 성폭력 피해자인 사건 중 총 2,908건에서 법률조력인이 지정되어 성폭력피해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수행하였다.⁷⁸⁾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확대 시행 이후 성폭력피해자국선변호사의 지정현황을 보면 전체 성폭력 사건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피해자로 제한되어 있을 때보다 2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2013년 7월 이후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선정한 아동청소년은 848명이다. 2013년 8월말 기준 전국 58개 검찰청에 638명의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활동 중에 있다.⁷⁹⁾

3) 법률조력인의 보수

법률조력인의 보수는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청소년의 수가 1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본보수액의 50% 범위에서 증액된다. 검사는 사건의 난이도와 법률조력인이 수행한 직무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 등을 감안하여 기본보수액의 400% 범위에서 증액해서 지급할 수 있다.

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1902743호) 검토보고서 2면 참조

77) 인터넷 법률신문, “법률조력인 정착…성폭력피해자 3,367명 무료 지원”, 2013년 3월 18일자.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3263>, 최종검색일 2012.7.8.)

78) 백미순 외,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연구, 법무부, 2013, 20면.

79) News1,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4명 국선변호사 지정”, 2013년 10월 1일자 기사. (<http://news1.kr/articles/1343828>)

4) 법률조력인의 활동현황

2013년 7월 이후 피해자국선번호인을 선정한 아동청소년은 848명이다. 2013년 8월말 기준 전국 58개 검찰청에 638명의 피해자국선번호인이 활동 중에 있다.⁸⁰⁾ 이 가운데 법무부에서 지정한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 11곳(원스톱지원센터 15곳, 법률구조공단 6곳)에 배치되었다.

나. 진술조력인제도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질문의 의도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동이나 장애인의 언어 또는 인식방법의 특성을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이해하지 못하여 진술의 진실성이나 일관성을 잘못 판단하여 이로 인해 성폭력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개정 성폭력처벌법에서 아동 또는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를 위해 진술조력인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도입논의과정에서 법원은 ① 진술관련 전문가, 전문수사 자문위원,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의견조회, 피해자변호인,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절차적 보장과 중복되어 예산 및 인력의 낭비가 예상될 수 있고, ② 재판의 당사자인 법무부가 진술조력인을 양성·관리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시켜 실제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존의 진술관련 전문가는 피해자 조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력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아 진술조력인의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2013년 개정법에 도입되었다.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피해자가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이 조사 및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증대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성폭력처벌법 제35조 내지 제39조).

80) News1,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4명 국선변호사 지정”, 2013년 10월 1일자 기사.
(<http://news1.kr/articles/1343828>, 검색일: 2013.11.20.)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조력인과 유사하나, 법률조력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률적 조력을 하는데 반해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 수사 및 재판기관 사이의 중립적 위치에 서로의 의사소통을 보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는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진문을 받아야 하는 성폭력범죄피해자가 불안이나 긴장으로 인해 제대로 진술할 수 없거나 새로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인의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때에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관계전문가나 진술자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성폭력처벌법 제34조). 종래에는 성폭력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던 것이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일반범죄에까지 확장되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3항).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는 수사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재판단계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제34조). 다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연령, 심신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163조의2 제1항). 그러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피해자와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163조의2 제2항).

라. 성폭력범죄 전담조사제

성폭력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전문수사관제 도입이나 여성경찰관의 수사 의무화가 과거부터 계속 논의되었다. 2006년 박명광 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1553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하여, 이은영 대표발의안, 손봉숙 대표발의안 등에서 성폭력 전문수사관제도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경남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가해자의 면전에서 대상자를 지목하도록 하여, 대질신문 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방치하고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경시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전담경찰관의 배치를 통해 조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이에 2006년 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전담검사가 피해자 조사를 하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전담경찰관도 지정되어 별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

경찰청은 원스톱지원센터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경찰서별로 성폭력발생 건수 등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 중심경찰서를 선정하여 여경으로 구성된 ‘성폭력피해자전담조사팀’을 2012년 2월에 신설하였다. 원거리에 있는 경찰서를 위주로 처음 8개소(서울 노원, 부산해운대, 인천 삼산, 경기 부천원미, 경기 일산, 강원 원주, 충남 서산, 경남 진주)가 운영되었고, 2012년 8월 서울청에서 3개소를 추가 선정(서울 마포, 영천, 수서)하여 전국에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팀은 권역 내 발생한 모든 성폭력사건의 피해자조사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이후 상담소와 치료기관 등 NGO와 연계하여 피해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표 3-16 성폭력피해자조사 전담조사팀 운영실적

구분	근무인원	운영실적				
		소계	13세미만	19세미만	19세이상	장애인
합계	151	2,400	89	658	1,600	53
서울 노원	65	626	12	185	422	7

구분	근무원	운영실적				
		소계	13세미만	19세미만	19세이상	장애인
부산 해운대	12	85	1	4	80	0
인천 삼산	10	655	1	150	498	6
경기 부천원미	22	348	11	113	216	8
경기 일산	17	211	4	47	160	0
강원 원주	7	142	13	52	72	5
충남 서산	8	101	1	52	47	1
경남 진주	10	232	46	55	105	26

2. 재판절차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가. 피해자 진술권과 비공개

성폭력사안은 양 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청소년의 진술이 중요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청소년의 진술과 증언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조사절차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특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받게 되고, 질문방식에 따라 진술이 반복될 위험성도 존재하게 된다.

조두순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부모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채 이루어진 양형이 문제가 있고, 국가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권리실현을 위한 대리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피해자의 적극적 참여권으로서 피해자의 진술권이 도입되었다.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피해자진술권의 배제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진술권을 피해자 본인에게만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미흡하고, 당해사건에 대한 의견 진술이라고 하여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된 2007년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술권의 배제사유가 축소되고 범죄피해자 이외에도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진술의 범위도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법원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나, ① 피해자 등 이미 당해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피해자 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에서 제외된다(제294조의2 제1항).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도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94조의2 제2항).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94조의3). 특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1항),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을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도 있다(동조 제2항).

피해자진술권은 과거 피해자가 고소인 또는 증인으로서 절차에 참여하는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⁸¹⁾ 피해자의 진술권은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양형이 이루어지게 하고, 피해감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나.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

형사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의 소송관계서류의 열람·등사권은 비교적 잘 보장되어 있다. 반면 성폭력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권에 대하여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권뿐만 아니라 소송계속중인 공판기록의 열람·등사권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81) 김용세·윤민석, “개정 형사소송법의 범죄피해자 보호규장”,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 78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실체적 진실발견에 어려움이 생기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일정한 제한을 함께 두고 있다.

소송계속 중의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1항). 이때 재판장은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동조 제2항),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다. 재판절차 진행상황 통지제도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을 통해 재판절차 진행상황 통지제도가 도입되었다(제259조의2).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급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2차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더욱더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범죄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증인신문절차를 최소화하거나 증인지원관의 도움을 얻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성폭력가해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법적 장치들이 다수 마련되어 있다.

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청소년의 진술이 범죄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청소년의 진술이나 증언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조사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피해청소년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범죄 상황에 대한 묘사를 보호자, 경찰, 검사, 판사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피해청소년은 정신적·심리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따라서 피해청소년에 대한 신문과정에서는 진술 기회를 최소화하고 반복질문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오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비디오 등 영상장비를 통한 진술녹화가 성폭력처벌법(제30조)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제26조)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1항).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 제3항).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6항).

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해 신문할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법원은 성폭력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하는 결정을 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증인의 연령,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은 증인신문 전 또는 증인신문 중에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형사

소송규칙 제84조의4).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할 때 증인을 법정 외의 장소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가 설치된 증언실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의 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증언실의 증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인신문을 한다. 다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증언실은 법원 내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5).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경우에도 심리의 비공개와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허용된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 제84조의7)

나. 증인지원관제도

2011년 6월 30대 성폭력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하였다가 모멸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유서를 쓰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2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피해자 증인지원프로그램’을 처음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6월부터 성폭력처벌법에 증인지원관제도가 도입되어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이 재판 전후로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제32조).

지원관은 매뉴얼에 따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에게 연락해 증인지원 절차를 설명하고 재판 전 법원 내 증인지원관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상담한 뒤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법정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한다. 신문이 끝나면 법원청사 입구까지 동행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판결문 송달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재판결과를 알려준다.

다. 피해자신변보호조치

성폭력처벌법 제22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여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증인이나 재판장이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검사가 조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피해를 막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나 학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1조).

4.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제도

성폭력처벌법 제24조에서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1항).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안된다(동조 제2항).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4장

외국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박학모·이승현

외국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제1절 독일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 성폭력범죄와 그 피해 현황 및 처리 개관

독일연방형사청(BKA)의 2012년 경찰범죄통계⁸²⁾에 따르면 2012년 한해에 기록된 총 5,997,040건⁸³⁾의 범죄 가운데 성범죄는 모두 45,824건으로 0.8%(이 가운데 미수는 3,326건으로 7.3%를 차지)에 달하였다. 경찰범죄통계에서 살인, 강도, 중상해와 함께 4대 폭력범죄로 분류되는 강간은 8,031건(미수는 1,315건으로 그 중 16.4%를 차지)으로 전체 기록범죄 가운데 0.1%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성범죄자의 검거비율은 78.6%, 강간의 검거비율은 80.7%로 전체 범죄의 검거율인 54.4%보다 높은 반면 95% 이상에 달하는 살인범죄의 검거율보다는 낮다.⁸⁴⁾

82) 독일경찰기록범죄에 대한 통계이며, 이하에서 “PKS 2012”는 2012년 독일 경찰범죄통계(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를 의미한다.

<http://www.bka.de/DE/Publikationen/PolizeilicheKriminalstatistik/pksnode.html> (검색일 2013.8.1.).

83) 독일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2012)에 따르면 2012년 독일인구는 81,843,743명이다.

84) PKS 2012, Grundtabelle 1면 참조

성범죄 가운데 종속관계를 악용한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남녀 성비와 연령별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그리고 이를 다시 연령대에 해당하는 인구에 대비한 피해비율로 산출해 보면 상해, 강도 등에서의와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에서도 청소년의 범죄피해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⁸⁵⁾ 청소년층은 범죄 혐의자비율 통계에 있어서도 해당 인구 10만명당 가장 높은 범죄혐의자비율을 나타내는 연령층이기도 하다.⁸⁶⁾

구분	계	성별		나이				
		남	여	아동 (14	소년 14-18	청년 18-21	21-60	60=<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남녀성비와 연령별 분포(%)								
기수	11,708	7.1	92.9	4.4	26.1	15.6	52.3	1.7
미수	2,373	5.3	94.7	2.9	19.7	17.9	57.4	0.0
계	14,082	6.8	93.2	4.1	25.1	15.9	53.1	1.7
해당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성폭력범죄 피해자수(피해위험률)(명)								
기수	14.3			5.1	95.4	70.1	13.8	0.9
미수	2.9			0.7	14.6	16.3	3.1	0.0
계	17.2			5.8	110.0	86.5	16.9	1.1
해당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검거된 독일인 범죄혐의자수(범죄혐의자비율)(명)								
2,295 인구 10만명당 검거된 범죄혐의자 (전체, 8세 미만 아동 제외)				1,448	5,616	6,597	2,027	

독일에서도 형법전 태동기에 강간죄(1871년 제국형법전 제176조 제3항)⁸⁷⁾가 친고죄⁸⁸⁾로 규정되었던 적이 있었으나, 첫 번째 개정형법인 1876년 제국형법전에서 곧바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다. 1997년 제33차 형법개정법(33. StÄG v. 1. 7. 1997, BGBl I, 1607)을 통해 “배우자간”의 처벌을 규정하면서 이를 친고죄나 반

85) PKS 2012, Kurzbericht 23, 25면 참조

86) PKS 2012, Kurzbericht 5면 참조

87) 해당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추는 고소가 있는 한에만 개시될 수 있으며,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되었다.

88) 독일형법상 친고죄(Antragsdelikte)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소추할 수 없는 “절대적 친고죄”로 주거침입, 모욕, 명예훼손, 가족간 절도·사기·장물죄 등이 있고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나 특별한 공공이익을 위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로는 단순상해, 경미절도·사기·배임, 무임승차, 재물손괴 등이 있다.

의사불벌죄로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었으나 거부되었으며 일반강간에 동일하게 포섭되어 규정되었다(현행 독일형법전 제177조).⁸⁹⁾

최근 독일의 형사정책적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강벌주의적 경향이 언급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1990년대 중반 이래 진행되어온 이른바 “성형법”(Sexualstrafrecht)에 있어서의 강벌주의적 입법경향이 보고된다.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벌주의적 경향으로만 치닫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예컨대 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한 폭력범죄자에 대한 재사회화지향적 “사회치료”(Sozialtherapie) 처우의 강화가 이 그룹을 형사정책의 수혜자로 만드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⁹¹⁾

2.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가. 상담·의료지원체계

먼저 독일의 범죄피해자 일반에 대한 상담지원체계에 대하여 개관해 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피해자를 포함하여 범죄피해자 일반에 대한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독일에는 몇 가지 모델들이 병존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연방국가적 특징에 따라 각 연방주가 독자적인 모델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독일(범죄)피해자지원협회(ADO)⁹²⁾의 모델

독일피해자지원협회(ADO: Arbeitskreis der Opferhilfe in der BRD e.V.)는 전국적인 규모의 전문적인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로서 독자적인 ‘피해자지원표준지침’(Opferhilfestandards)⁹³⁾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표준지침의 내용은 다른

89) Lenckner, Das 33. Strafrechtsänderungsgesetz-das Ende einer langen Geschichte, NJW 1997, 2801면 이하 참조

90) Köbel/Bork, Sekundäre Viktimisierung als Legitimationsformel, Belin, 2012, 92면 참조

91) Köbel/Bork, 앞의 책, 94면 참조

92) 독일범죄피해자지원협회(www.opferhilfen.de, 검색일: 2013.8.1.).

93) 피해자지원표준지침(<http://www.opferhilfen.de/Standards.pdf>, 검색일: 2013.8.1.).

범죄피해자지원단체들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데,⁹⁴⁾ 여기에 이 지원 모델의 특징이 함축되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지원표준지침’ (Opferhilfestandards)
- 범죄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한 품질표준
(Qualitätsstandards für eine professionelle Unterstützung von Kriminalitätsopfern) -

피해자지원은 민간공익법인에 의해 수행됨으로써 조직의 내용적, 구조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관은 그 활동이 일반적 및 개별적 피해자의 필요와 이해를 위하여 수행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상담활동은 부분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나, 가해자에 대해 편향적으로 적대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조직적 및 내용적 독립성은 장소적 위치와 관련하여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피해자상담소는 그 컨셉의 내용과 일치하고 피해자의 이해에 반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공공건물에 위치하여도 무방할 것이다(예컨대 증인지원실). 피해자지원기관은 중재·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며, 장소적인 사회적 인프라구조(네트워크)에 통합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담센터는 전문화된 정규직원들을 채용·배치하여야 하며, 다양한 활동영역에 대하여 그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자원 봉사자들을 보충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 피해자지원에 있어서 본질적 원칙으로는 “(권고)제한성, 자발성, 내밀성, 익명성(원하는 경우), 무료상담, 피해자의 필요(수요)지향”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지원도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지원은 초학제적이고 총체적이며, 사태의 해명 지원, 심리사회상담과 위기개입, 장기지원과 치료지원(개인, 부부, 그룹, 피해자 가족), 법적 자문, 민·형사절차상 증인동행·지원, 형사조정과 갈등조정 등으로 구성된다.

2) 국가사법조직으로서 피해자상담센터와 법원증인지원제도 운용모델

옛 동독지역이었던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주는 피해자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면서 아예 공공 사법복지서비스(Sozialer Dienst der Justiz) 내에 피해자상담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다른 연방주와는 다른 독자적인 모델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작센안할트 주의 막테부르크, 할레 등지에서는 공공서비스 직책의 하나인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범죄피해자를 위한 상담임무가 수행된다. 그러나 실제 상담의 수행방식은 앞에서 살펴본 민간피해자지원기구인 ADO와 유사한 컨셉과 방식에 따라 수행된다.

법원의 증인지원서비스도 사무관급 법원공무원 또는 사법연수생들에 의해 수행되며, 드물게 사회복지사가 이를 담당하기도 한다. 증인지원은 이미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직무상 ‘중립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해자만을 위하는 편향적인 입장에 설 수는 없다는 특징이 있다.

94) 대표적인 예로 Weisser Ring의 피해자지원 표준지침 참조

<https://www.weisser-ring.de/fileadmin/content/Opferhilfe-Standards/Opferhilfestandards.pdf> (검색일: 2013.8.1.).

3) 민간자원봉사모델로서의 피해자지원협회‘하안동그라미’

‘하안동그라미⁹⁵⁾’란 뜻의 Weisser Ring은 전국적 조직으로 활동하는 민간협회조직으로 기부금과 회비, 지원금으로 활동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자원봉사회원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위로와 인격적인 지원 이외에도 범죄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과 관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하고 법원의 출두에 동행하는 식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보상법에 따라 자신의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도와준다.⁹⁶⁾

그 밖에도 Weisser Ring은 변호사에게 무료로 초기법률상담을 받거나 심리치료 전문의에게 무료로 초기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티켓’(Beratungsscheck)⁹⁷⁾을 배부하거나, 피해보상청구 및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권의 관철을 위해 소요되는 특정한 변호비용을 부담해 줌으로써, 또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휴양조치나 범죄 결과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담당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까지 담당하는 역량을 갖고 있다. 2012년부터는 “하안동그라미 재단”(Weisser Ring Stiftung)을 설립하여 그 수익금으로 협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⁹⁸⁾

상담서비스는 자원봉사인력을 통해 감당하며, 상담장소와 시간 등은 일반적으로 그때그때 피해자가 바라는 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정하여 수행한다. 상담서비스 등은 단일 번호(116 006)의 중앙콜센터를 통해서 또는 지역사무실을 통해 접근·이용할 수 있다.

슬레스비히-홀스타인 주의 경우 2011년 이래 주정부지침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경찰이 처음부터 Weisser Ring의 피해자지원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Weisser Ring 지역사무실에도 범죄피해자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5) Ring은 물론 반지, 고리로도 번역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피해자와의 “연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공식명칭은 “하안동그라미 범죄피해자지원과 범죄예방을 위한 공익협회”이다: “WEISSER RING-Gemeinnütziger Verein zur Unterstützung von Kriminalitätsopfern und zur Verhütung von Straftaten e. V.”

96) 앞의 각주의 Weisser Ring의 피해자지원 표준지침 참조

97) Hilfescheck für eine psychotraumatologische Erstberatung:

<https://www.weisser-ring.de/internet/opferhilfe/hilfescheck-fuer-eine-psychotraumatologische-erstberatung/index.html#c7030> (검색일: 2013.8.1.).

98) <https://www.weisser-ring.de/internet/so-helfen-sie-uns/weisser-ring-stiftung/index.html#c23278> (검색일: 2013.8.1.).

4) 성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전국단위 민간상담기관

여성긴급콜센터(Frauennotrufe)와 여성상담센터는 특히 성폭력범죄피해여성들을 위해 폭넓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여성긴급콜센터는 상담, 위기개입, 예방·홍보활동으로 구성된 포괄적 구상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종료 후까지 전문적인 지원, 동행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⁹⁹⁾

그 밖에도 전국적으로 수많은 상담지원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주요 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BAG-FORSA: Bundesarbeitsgemeinschaft feministischer Projekte gegen sexuelle Gewalt an Mädchen und Frauen e.V. www.bag-forsa.de
(소녀여성 성폭력대책 여성주의프로젝트 연방연합회)
Bundesarbeitsgemeinschaft Prävention und Prophylaxe e.V. <http://praevention.org>
(연방예방연합회)
Deutscher Kinderschutzbund Bundesverband e.V. www.dksb.de
(독일아동보호협회)
Elternnotrufe (BMFSFJ): 0800 111 055 www.hinsehen-handeln-helfen.de
(연방가족부 부모긴급콜센터)
Frauenhauskoordinierung e.V.(FHK e.V.) www.frauenhauskoordinierung.de
(여성외집 연합회)
Notruf für vergewaltigte Mädchen und Frauen e.V.
(성폭행피해여성 긴급콜센터)
Runder Tisch "Sexueller Kindesmissbrauch in Abhängigkeits- und Machtverhältnissen in privaten und öffentlichen Einrichtungen und in familiären Bereich" der Bundesregierung
www.rundertisch-kindesmissbrauch.de/index.htm
(가족·민간·공공영역상 종속·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아동성폭력대책연석회의)

‘가족·민간·공공영역상 종속·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아동성폭력대책 연석회의’ (약칭 ‘아동성폭력대책 연석회의’: ‘Runder Tisch Sexueller Kindesmissbrauch’)의 활동 결과 탄생한 ‘성폭력대책기금’(Fonds Sexueller Missbrauch)¹⁰⁰⁾은 전화(번호:0800 400 10 50) 및 이메일¹⁰¹⁾ 상담접수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99) bff: Bundesverband Frauenberatungsstellen und Frauennotrufe, www.frauen-gegen-gewalt.de (검색일: 2013.8.1.).

100) <https://www.fonds-missbrauch.de/kontakt> (검색일: 2013.8.1.).

101) <https://www.fonds-missbrauch.de/kontakt> (검색일: 2013.8.1.).

5) 성폭력피해여성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 상담네트워크의 사례

연방 사회법 제8권¹⁰²⁾ 제78조는 청소년청이 청소년공공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간기구들과 공조협의회(Arbeitsgemeinschaften)를 구성하여 이를 통한 상호공조 및 조율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공조의 사례는 예컨대 도르트문트(Dortmund)시 청소년청이 아동청소년성폭력피해문제와 관련하여 교육, 가족, 청소년상담 관련 전문협의회인 ‘연방교육상담협의회’(Bundeskonferenz für Erziehungsberatung e.V.)¹⁰³⁾와 협력하여 각 구역별로 시립상담실을 직접 또는 위촉 운영하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¹⁰⁴⁾

먼저 시에서 운용하는 상담센터(Städtische Beratungsstelle)들이 각 구역별로 포진하여 있으며, 그 밖에 공인된 상담시설들이 함께 상담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법률지원체계

1) Weisser Ring의 무료법률상담을 위한 ‘상담티켓’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eisser Ring의 1회 무료 법률상담티켓은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를 찾아가 형사절차나 피해보상청구 또는 소송비용지원제도 등과 관련하여 최초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전문적 법률지원체계로 나아가는 관문을 열어주는 티켓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무료법률상담을 통하여 비로소 다양한 법률지원체계에 대한 정보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Weisser Ring은 후술하는 “익명증거보진” 절차를 위한 “법의학지원티켓”(Hilfescheck für eine rechtsmedizinische Untersuchung)을 발급함으로써 이와

102) 바이마르공화국으로부터 이어져온 구 「청소년복지법」(Jugendwohlfahrtsgesetz, JWG)의 대체입법인 1990년 「사회법」 제8권 (Sozialgesetzbuch (SGB) Achtes Buch (VIII) - Kinder und Jugendhilfe).

103) <http://www.bke.de> (검색일: 2013.8.1.).

104) 예컨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의 도르트문트(Dortmund)시의 사례: http://www.dortmund.de/media/p/jugendamt_2/downloads_13/sexuelle_gewalt/Kinder_sexuelle_gewalt.pdf (검색일: 2013.8.1.).

관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¹⁰⁵⁾

2) 국선 ‘피해자변호인’제도

형사소송절차상 단순히 소극적인 피해자증인의 지위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기소절차에서 적절히 자신을 방어하며 범죄행위를 통해 행해진 가해자의 불법을 확인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성폭력범죄피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대공소제도(Nebenklage)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대공소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적절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며,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1998년 증인보호법을 통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부대공소권자인 성폭력범죄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른바 “피해자변호인”, Opferanwalt)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형사소송법 제397a조).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자유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중죄(Verbrechen)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그 대상자에 해당된다. 그리고 2013년 성폭행피해자권리강화법은 제397a조 제1항의 신설 제4호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으로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던 (성인이 된) 부대공소자”, 즉 범죄 당시에 아동·청소년이었음을 기준으로 개정하여 “신청 당시 미성년자”임을 요구하던 구법보다 피해자변호인제도 보장 피해자의 대상을 더 확대하였다. 구법에서는 성폭력범죄 등의 피해자로서 “신청 당시에 18세 미만”이거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자기 힘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없는 부대공소권자에 한하여 국선 피해자변호인 선임권을 부여하였었다. 피해자변호인제도는 반드시 부대공소제도와 결부된 것은 아니며 부대공소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보장을 위하여 승인된다.

105) <https://www.weisser-ring.de/internet/opferhilfe/hilfescheck-fuer-eine-rechtsmedizinische-untersuchung/index.html> (검색일: 2013.8.1.).

3) 상담(비용)지원 및 소송비용지원

상담지원법(Beratungshilfegesetz)¹⁰⁶⁾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시민(피해자)이 사법절차와 무관하게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즉 공판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라도 신청하여 법률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담지원대상이 되는지의 판단은 해당 의뢰변호사가 심사를 의뢰하여 또는 법원(Amtsgericht)의 해당 신청창구에서 직접 심사한다.

민사소송법(ZPO) 제115조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판단의 기초가 된다. 법률상담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법원창구는 “상담지원 적격확인증서”(Berechtigungsschein für Beratungshilfe)를 발부하며, 이에 대해서는 약 10 유로의 발급비용이 발생하는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는 이마저도 면제가 가능하다. 상담지원의 승인은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대상자라도 새롭게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소송비용지원(Prozesskostenhilfe)은 형사소송법 제397a조 제2항에 따라 우선 민사소송법 제114, 115조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경제적 무능력”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할 능력이 없거나 이를 기대하기 힘들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다. 2009년 제2차 피해자권리개혁법을 통하여 구법에서 “사안과 법적 상황이 난해할 것”을 요구하던 엄격한 요건이 삭제됨으로써 소송비용지원이 더 용이하게 되었다.

3.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독일의 성폭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원서비스 개시의 측면에 있어서는 형사절차와 독립적으로 시작되는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범죄피해신고 등을 통한 수사절차와 결부되어 개시되는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대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도 경찰이 범죄피해자에게 민간 및 공공 피해자지원 기관을 소개해주거나 심지어 본인의 동의를 얻어 범죄피해자의 연락처를 피해자

106) Gesetz über Rechtsberatung und Vertretung für Bürger mit geringem Einkommen.

지원기관에도 알려줌으로써 신속하게 전문적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 및 법률지원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 결국에 기소절차 이전 단계에서의 지원서비스는 함께 수렴된다고 볼 수 있다.

	수사 및 기소절차 이전 단계	기소절차단계 ¹⁰⁷⁾
신고 사건	경찰에 의한 지원단체 소개·통보·중개 > 심리상담서비스, 법률자문서비스	대부분의 성폭력피해사안에 대한 부대공소권 인정 및 피해자 변호인제도와 소송(변호)비용지원제도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소송참여권 강화, 이를 위한 정보권 보장 ¹⁰⁸⁾
미 신고 사건	상담전화·메일 > “상담서비스”(바이썬링): 경우에 따라 “법의학서비스”를 통한 “익명증거보전” 활용 > 신고를 결정할 경우 신고사안과 같이 진행	증인지원·보호서비스 및 형사절차상 피해원상회복의 관철 지원 (배상명령제도 ¹⁰⁹⁾ , 피해원상회복을 위한 가해자의 노력에 대한 양형상 고려 ¹¹⁰⁾

형사소추절차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수사의뢰를 망설일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도 민간 또는 국가 피해자지원기구의 범죄피해자 무료상담 창구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고 상호 네트워크화¹¹¹⁾되어 있어, 이 기구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넘는 경우 다양한 전문성 영역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거나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적 지원·보호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¹¹²⁾

4. 형사절차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가. 성범죄수사의 특수부 배당

다른 범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소추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범죄혐의를 포착하게 되면 수사절차를 개시하게 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기

107)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주로 이하의 “형사절차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서 기술한다.

108) 독일형사소송법 제406d조 이하 참조

109) 독일형사소송법 제403조 이하 참조

110) 독일형법 제46a조 참조

111)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아동청소년성폭력피해문제와 관련한 교육, 가족, 청소년상담 관련 전문협의회인 ‘연방교육상담협의회’의 활동사례.

112) 앞의 ‘피해자지원표준지침’(Opferhilfestandards) 참조: “피해자지원기관은 중재·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며, 장소적인 사회적 인프라구조(네트워크)에 통합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성범죄에 대한 수사에서는 법조인교육과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수많은 특수한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판단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화된 실무인력을 필요로 한다.¹¹³⁾ 따라서 연방주들이 협의하여 공통으로 마련한 각 연방주의 검찰조직령 「제3장 “업무분장” 제9호 h)번」¹¹⁴⁾에 따르면, 성범죄는 마약범죄, 식품범죄, 조직범죄, 정치범죄 등과 같이 그 소추를 위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수영역으로 분류하여 이러한 사안들을 다루기 위해 검찰청에 설치되는 특수부에서 다루도록 권고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성범죄수사는 ‘범죄대책본부 전문수사과’(Fachkommissariat)의 업무가 된다.¹¹⁵⁾

나. 성범죄수사와 공조 네트워크

성범죄수사와 관련하여서는 검찰, 경찰 뿐 아니라 법원, (피고인)변호인, 피해자 변호인, 청소년청(Jugendamt), 상담기관, 법의학자, 전문감정인 등 수많은 전문인력과 기관이 관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각 기관이 다른 기관의 관점이나 업무수행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하는 기관들 사이에 의도하는 “원인효과”를 얻기 보다는 심각한 공조의 장애를 초래하여 이른바 “루즈-루즈 상황”에 빠져 수사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할 범죄피해자에게도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예시사례〉

산부인과전문의가 피해자의 산부인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흔적과 DNA 증거물들에 대한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찰이 법의학자로 하여금 동행할 것을 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산부인과전문의가 이를 자신의 전문영역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여 흥분한 나머지 “그건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며, 피해여성에게 “당신이 조사를 받을 때 이 남자(법의학자)가 옆에 있는 것을 원치 않죠?”라고 유도하여 법의학자를 배제하여 버리는 경우,

113) Roggenwallner/Herrmann/Jansen, Straf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Münster, 2011, Rn. 233 참조

114) 예컨대 바이에른주 검찰조직령(OrgStA, Anordnung über Organisation und Dienstbetrieb der Staatsanwaltschaften (OrgStA) 참조
<https://www.verkuendung-bayern.de/jmb/jahrgang:2011/heftnummer:3/seite:53> (검색일: 2013.8.1.).

115) Roggenwallner/Herrmann/Jansen, 위의 책, Rn. 233 참조

출장을 나와 헛걸음을 한 법의학자는 그 나름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이 법의학자에게 동행명령을 내렸을 때는 산부인과전문의들이 종종 증거법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정도로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예컨대 사진이 충분히 선명하지 못할 때)가 있고 공판절차상 이에 대한 진술을 할 때 다투어 초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실무경험에 따른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실제로 피해증거가 되는 사진자료가 충분히 선명치 못하여 증명력을 가지지 못할 경우 이것이 곧 전형적인 “루즈-루즈 상황”이 되는 것이다.¹¹⁶⁾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기관간의 공조를 원활히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예컨대 ‘아동청소년지원법’이라 할 수 있는 독일 「사회법」 제8권(아동·청소년지원)¹¹⁷⁾ 제2장은 “민간청소년지원단체 및 자원봉사단체들과의 공조” 방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제78조에서 “청소년지원 공공기관들은 공인된 청소년지원 민간단체들과 함께 공조협의회(Arbeitsgemeinschaften) 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계획된 조치들을 상호 조율·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¹¹⁸⁾

이러한 아동·청소년지원법적 구상에 기초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관이 공조하는 사례의 하나로서 시 청소년청(Jugendamt)이 중심이 된 “성폭력피해지원”(Hilfe bei sexueller Gewalt) 공조협의회¹¹⁹⁾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다. 성범죄 수사절차상 검찰과 경찰의 공조와 “익명증거보전”

독일에서도 경미범죄는 물론 중대하지 않은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이첩되기 전에 거의 전적으로 경찰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중대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서 수사초기부터 검찰이 함께 관여하여 수

116) Roggenwallner/Herrmann/Jansen, 앞의 책, Rn. 234 참조

117) 바이마르공화국으로부터 이어져온 구 「청소년복지법」(Jugendwohlfahrtsgesetz, JWVG)의 대체입법인 1990년 「사회법」 제8권(Sozialgesetzbuch (SGB) Aches Buch (VIII) - Kinder und Jugendhilfe) 제2장.

118) “Die Träger der öffentlichen Jugendhilfe sollen die Bildung von Arbeitsgemeinschaften anstreben, in denen neben ihnen die anerkannten Träger der freien Jugendhilfe sowie die Träger geförderter Maßnahmen vertreten sind. In den Arbeitsgemeinschaften soll darauf hingewirkt werden, daß die geplanten Maßnahmen aufeinander abgestimmt werden und sich gegenseitig ergänzen.”

119) 대부분의 시 청소년청이 비슷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르트문트(Dortmund) 시의 사례를 보면 성폭력피해 긴급상황 신고로부터 법원증인조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네트워킹하고 있다. http://www.dortmund.de/de/leben_in_dortmund/familie_und_soziales/jugendamt/hilfe_und_beratung/sexuelle_gewalt/index.html (검색일: 2013.8.1.).

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¹²⁰⁾

직권소추주의 및 기소법정주의¹²¹⁾(Legalitätsprinzip)가 적용되는 독일 형사소송 절차에서 오래전부터 친고죄가 아닌 성폭력범죄(피해)를 검찰 및 경찰이 인지하여 수사절차를 개시한 경우 나중에 범죄피해자가 범죄자에 대한 형사소추를 원치 않는다거나 소송절차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예컨대 형사고발을 철회하든가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에 의해 이미 진행된 절차를 좌우할 수 없게 된다.

이 점에서 범죄피해자 본인이든 제3자이든 형사고소·고발이 범죄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범죄피해자와 함께 상담시설을 찾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배려하고 있다. 아직 이러한 고려들로 인하여 형사고발을 통한 형사소추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ASS로 불리는 이른바 “익명증거보전절차”(Anonyme Spuren-Sicherung)¹²²⁾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헤센(Hessen) 주 등에서 초기시행단계에 있는 제도가 있다. NRW주의 쾰른(Köln)시에서 시행하는 ASS모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²³⁾

1. 지정병원 중 한 곳을 방문하여, 바로 형사고발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익명증거보전을 신청한다.
2. 병원은 증거보전용 세트를 준비한다.
3.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는 병원에 보관된다. 보전된 증거(옷가지, 정지증거 등)는 익명처리되어 쾰른대학병원 법의학연구소에 보관된다.
4. 익명증거보전과 최장 2년의 보관을 희망한다는 신청서에 서명한 후 사본을 한 장 발급받는다. 2년의 보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을 통해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익명처리되어 보관된 증거물은 부여된 코드번호를 통해 나중에 형사고발을 할 경우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6. 사후에 형사고발을 하고자 할 경우 증거물이 익명처리되어 보전되어 있음을 알리고, 담당의사의 비밀준수 의무를 해제시켜야 당시에 작성된 의사의 조사소견서도 활용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단계는 수사경찰의 몫이다.
7. 형사고발과 보관기간의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 보전된 증거물은 2년이 경과한 후 폐기된다.

120) 법무부행정지침으로서 검찰내부적 구속력을 지니는 「형사·과태료절차지침」(RiStBV, Richtlinien für das Strafverfahren und das Bußgeldverfahren) 제3호(검사의 직접수사)의 권고사항 (http://www.verwaltungsvorschriften-im-internet.de/bsvwbund_01011977_420821R5902002.htm 검색일: 2013. 8.1.). 특히 독일경찰은 우리나라 검찰과 달리 자체 검찰 수사인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은 구체적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121) 독일형사소송법 제152조 제2항 참조

122) Roggenwallner/Herrmann/Jansen, 앞의 책, Rn. 287 참조

123) <http://www.notruf-koeln.de/ass-2/> (검색일: 2013. 8.1.).

‘익명증거보전’시스템은 아직 독일에 전반적으로 관철된 시스템은 아니나 성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국가적으로 표준화시켜야 할 시스템으로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으며¹²⁴⁾,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Die Grünen)으로 구성된 NRW 주정부는 2012년 연정협약에서 수요에 부응하는 익명증거보전시스템을 제도화하기로 명시하고 추진 중에 있다.¹²⁵⁾

라.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보호의 지속적 강화

법률일자	법률명칭	주요내용
1976.5.11	(폭력)범죄피해보상법	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
1986.12.18	제1차 피해자보호법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
1990.8.30	제1차 청소년법원법 개정법률	청소년형법상 형사조정제도 도입
1994.10.28	(강력)범죄대책법	일반형법상 형사조정제도 도입
1998.4.30	증인보호법	형사절차상 참고인·증인 보호 강화
1998.5.8	범죄피해자의 민사청구권보전법	범죄피해자의 민사청구권보전 강화
1999.2.20	형사소송법상 형사조정 근거규정법	형사절차상 형사조정 명시적 근거 마련
2001.12.22	증인보호조화법	위험에 처한 증인의 보호 강화
2004.6.24	제1차 피해자권리개혁법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
2009.7.29	제2차 피해자권리개혁법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
2013.6.29	성폭행피해자권리강화법	성폭행피해자의 권리 강화

독일형사소송법은 제5부에 「범죄피해자의 소송 참가」(Beteiligung des Verletzten am Verfahren)를 규정하여 제1장에 사소제도(Privatklage), 제2장에 부대공소제도(Nebenklage), 제3장에 형사배상명령제도(Adhäsionsverfahren)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오랫동안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잊혀진 존재”로 취급되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다. 1980년대에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1987년 제1차 피해자보호법으로 그 결실을 맺으며 기존의 제도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짐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5부 내에 새

124) http://www.beratung-bonn.de/_downloads/ASS_Antrag_LAG_NRW_30_10_2012_KORRIGIERT.pdf
(검색일: 2013.8.1.)

125) Koalitionsvertrag 2012 - 2017, 94면 참조 http://nrwspd.de/db/docs/doc_40518_2012121111516.pdf
(검색일: 2013.8.1.)

롭게 신설된 제4장 ‘범죄피해자의 그 밖의 권한’(제406d조 이하)의 내용들로 말미암아 획기적인 입법적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그 이후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입법적 제도 개선의 노력이 이어졌으며, 가장 최근에는 「성폭행피해자권리강화법」¹²⁶⁾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특별히 성폭행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¹²⁷⁾

이러한 넓은 의미의 “범죄피해자보호입법”은 형법, 형사소송법 등 개별법을 각 항목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개정하는 이른바 “항목법률”의 형태로 이루어진 후 각 개별법의 개정으로 반영된다. 다만 이 가운데 범죄피해자보상법, 범죄피해자의 민사청구권보전법, 그리고 증인보호조화법은 단독입법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단독 제정법률을 통해 새로 탄생한 제도는 물론 개정법률을 통해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반영된 제도들의 탄생과 강화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친고죄의 폐지라는 맥락에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성폭력범죄가 독일의 기소법정주의와 동일한 양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제도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주요 관심사항은 인격권에 대한 보호, 절차에 대한 적극적 참여, 그리고 범죄로 말미암은 피해에 대한 원만한 보상, 즉 “보호와 참여와 보상”이라고 하는 3대 관심으로 압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전제이자 토대가 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권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는 먼저 자신에게 보장되는 지위와 권리를 알아야 하고, 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보호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며 적시에 절차에도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친고죄의 폐지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주로 정보권을 토대로 한 피해자의 보호와 참여 관심의 측면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126) Gesetz zur Stärkung der Rechte von Opfern sexuellen Missbrauchs (StORMG), BGBl. I 2013, 1805면 참조

127) 이에 대한 독일연방법무부의 보도자료 및 입법개요에 대해서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bmj.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13/20130628_Ein_Meilenstein_fuer_die_Opfer_sexualisierter_Gewalt.html (검색일: 2013.8.1.)

1)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

독일의 「제1차 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권 보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406d, e, h조의 신설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절차의 진행과 결과에 대한 통지의무(제406d조), 변호사를 통한 소송기록열람권(제406e조) 및 신뢰관계인의 동석권에 대한 정보제공(제406h조)을 규정하였다.

제1차 피해자보호법의 정보권 보장이 미흡하고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2004년 제1차 피해자권리개혁법을 통하여서 이 규정들은 상당부분 보완이 되었다. 개정된 현행규정은 먼저 피해자에 대한 절차관련 통지의무와 관련하여서 제406d조의 개정을 통해 기소유예와 재판결과에 대한 통지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접촉 및 교통을 금하는 준수사항의 부과여부, 가해자에 대한 자유박탈처분의 부과 및 종료, 가해자의 귀휴, 가석방 등에 관한 정보를 신청하여 통지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개정으로 부대공소권자에게는 직권으로, 그 밖의 피해자에게는 신청이 있을 경우 공판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제406h조의 개정을 통하여서는 피해자의 절차상의 정보권의 보장을 위하여 검찰과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절차상의 권리, 배상명령의 신청 관련 정보, 피해자지원기관을 통해 상담이나 법원출석동행 등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였다.

2) 범죄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증인보호프로그램

범죄피해자의 인격권보호는 특히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증인의 입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피해자증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일련의 입법을 통하여 강화되고 있다.

1986년 제1차 피해자보호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68a조 후단을 신설하여 증인을 심문할 때 ‘사생활영역에 관계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질문하도록 명시하고, 제247조의 개정을 통해서 16세(현행 규정은 18세) 미만의 자를 증인으로서 피고인 면전에서 심문할 경우 증인의 안녕에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외의 증인으로서 같은 상황에서 건강상의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퇴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증인보호를

강화하였다. 법원조직법 제171b조, 제172조의 개정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재판의 비공개진행이 가능하도록 재판의 공개주의 원칙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였다.

2013년 성폭행피해자권리강화법은 재판의 비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증인이 미성년자로 피해자가 되었던 경우, 심문 당시에는 비록 성인이 되었을지라도 미성년 당시의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재판의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171b조 제2문 신설). 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청소년기의 범죄피해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실무의 경험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1998년 증인보호법은 특히 증인인 범죄피해자가 받게 되는 정신적 부담과 생명·신체의 위협을 고려하여 증인신문의 영상녹화를 가능하게 하고(형사소송법 제58a조), 이를 공판정에서 공판조서를 낭독하는 대신에 재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제255a조). 이뿐 아니라 비디오-음향기기를 사용하여 법정 이외 제3의 장소에서의 증인신문을 공판정에 동시중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47a조, 제168e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받는 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Zeugenbeistand, 제68b조).

2009년 제2차 피해자권리개혁법(OpferRRG)을 통해서도 형사소송법 제406h조 제1항 제4호를 통해 실정법상 “심리사회적 소송동행”(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증인의 역할이 성폭력범죄사안 등을 다루는 특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심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인식 하에 전문성 있는 동행지원을 통해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입법자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⁸⁾

2013년 성폭행피해자권리강화법은 제58a조 개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으로서 범죄피해자가 된 피해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잘 보호될 수 있다면” 영상녹화를 “법관신문”으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공판정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증인이 중복신문을 당함

128) 제3차 쉘레스비히-홀스타인주정부 피해자보호보고서(3. Opferschutzbericht für Schleswig-Holstein, 2011.10.31.: SCHLESWIG-HOLSTEINISCHER LANDTAG Drucksache 17/1937), 82면 참조

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한편 2001년 독립법률로 제정된 「증인보호조화법」¹²⁹⁾은 조직범죄나 기타 중요범죄의 수사와 범죄자 체포에 기여하는 증인이 생명·신체 등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신분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증인의 동의를 얻어 비밀준수의무를 지는 경찰이나 연방 또는 주의 증인보호센터(Zeugenschutzdienststellen)가 증인보호조치를 취하며, 보호받는 증인에 대하여 보호조치기간동안 위장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법상의 조치(연금후납 등), 형사절차 등에서 인적사항의 공개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고, 예컨대 거주지를 증인보호센터 소재지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서는 국제폭력조직의 인신매매 등으로 성폭력피해자가 된 피해자증인의 보호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3) 범죄피해자의 절차참가권의 강화

독일형사소송법상 전통적으로 ‘범죄피해자의 소송참가’를 보장하고 있는 제도는 사소제도, 즉 사인소추(Privatklage)와 부대공소(Nebenklage) 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의 직권소추주의의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사인소추제도, 즉 사소제도는 대부분 친고죄의 범주에 속하는 범죄¹³⁰⁾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미범죄에 대한 형사소추를 사소제도에 떠넘기고 이를 소극적으로 다룸으로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입법정책적으로는 그 폐지도 강력히 주장되고 있는 실정이다.¹³¹⁾

반면 제1차 피해자보호법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제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가의 측면에서

129) Zeugenschutz-Harmonisierungsgesetz (ZSHG): 정식명칭은 「위험에 처한 증인의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이다.

130) 독일형사소송법(StPO) 제374조 제1항은 사인소추범죄로 주거침입죄, 모욕죄, 서신비밀침해죄, 상해죄, 스토킹죄, 협박죄, 기물손괴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 친고죄는 1924년 이래 그 목록에 거의 변화가 없어온 사인소추범죄와 그 범주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중첩된다(Rieß, Die Rechtsstellung des Verletzten im Strafverfahren, C 21면).

131) Rieß, Die Rechtsstellung des Verletzten im Strafverfahren, München, 1982, C 21면 및 C 72면 이하 참조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부대공소제도라 할 수 있다. 사소제도와 반대로 부대공소제도는 일정한 중죄¹³²⁾의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검사가 기소한 형사절차에 당사자자격으로 참가하여 검사 및 변호인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특히 제1차 피해자보호법을 통해 부대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범죄목록을 독자적으로 규정(형사소송법 제395조)하면서 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부대공소권자로서 형사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용한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98년 증인보호법을 통하여서는 특정범죄피해자들에게 부대공소절차에서 국선변호인(피해자변호인, Opferanwalt)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형사소송법 제397a조). 2013년 성폭행피해자권리강화법은 제397a조 제1항의 신설 제4호(구법 제4호는 제5호가 되었다!)를 통하여 기존에 성폭력범죄 등의 피해자로서 “신청 당시에 18세 미만”이거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충분히 인지할 수 없는 부대공소권자에게 국선변호인선임권을 보장하였던 것을 “아동·청소년으로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던 (성인이 된) 부대공소권자”로 함으로써 범죄 당시에 아동·청소년이었음을 기준으로 삼아 아동·청소년기에 당한 성폭력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

2009년 제2차 피해자권리개혁법은 제395조 제3항을 통해 부대공소대상범죄를 목록화하고 있는 제1항의 제한을 풀어 사실한 모든 위법한 범죄로 확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조항을 통하여 목록화된 대상범죄 이외에도 ‘특별한 이유, 특히 범죄로 인한 중대한 결과로 인하여 부대공소의 제기가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대공소권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부대공소 참가선언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가능하며(형사소송법 제395조 제4항), 부대공소권자의 적격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검찰의 의견을 청취한 후 판단한다(형사소송법 제396조). 제397a조 제1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피해자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호사선임을 위한 소송비용지

132) 제1차 피해자보호법을 통해 개정되기 이전까지 부대공소권자의 자격은 사소제도의 대상범죄, 즉 비교적 경미한 범죄들과 결부되어 있었다.

원을 청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¹³³⁾

4) 범죄피해자의 절차통제권으로서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절차)

기소강제절차(Klageerzwingungsverfahren)¹³⁴⁾는 기소법정주의(Legalitätsprinzip)와 취지를 같이 하며¹³⁵⁾, 애당초 형사소추에 관여할 가능성이 배제된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법원을 개입시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게 기소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기소강제절차는 실무상 그 의미가 크지 않으며 실제로 용인율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도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¹³⁶⁾ 기소강제절차의 신청권자는 범죄피해자로 제한되어 있으나, 판례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여성의 남편에게, 부모와 같은 세대의 미혼자녀의 경우 부모에게도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¹³⁷⁾

기소강제절차는 먼저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상급검찰, 즉 주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판단을 받은 후에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 비로소 주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의 사법판단을 청구할 수 있다.¹³⁸⁾ 주 고등법원이 기소강제를 결정할 경우 검찰은 더 이상 기소편의주의적 관점에 따라 해당사안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단 기소가 된 이후에는 검찰과 사실심 법원 모두 주 고등법원의 강제기소결정에 구속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사안에 대한 재조사·심리 결과 경우에 따라 예컨대 “법관에 의한 절차중지처분”¹³⁹⁾ 등이 가능하다.

133) 그 밖에 제2차 피해자권리개혁법을 통해 강화된 부대공소권자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김성룡, “독일 제2차 피해자권리개혁법의 주요내용·쟁점을 통해 본 국내 피해자보호 관련 논의의 합리적 방향”,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65면 이하 참조

134) 독일형사소송법 제172조 이하 참조

135) Schroth, Die Rechte des Opfers im Strafprozess, Heidelberg, 2005, 85면 참조

136) Schroth, 앞의 책, 85면 참조

137) OLG Celle NJW 1960, 835; Schroth, 앞의 책, 94면 참조

138) 독일형사소송법 제172조 제3-4항 참조

139) 독일형사소송법 제153a조 제2항 참조 다만 이 경우에는 검찰의 동의가 필요하다.

5. 독일 성폭력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시사점

가. 민·관 상담지원기관과 피해자지원네트워크에 의한 초기지원

구 동독지역인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주를 제외하면 독일 각 지역의 (성폭력)범죄피해자지원조직은 주로 민간공익단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들 기관의 ‘피해자지원표준지침’은 이를 통해 피해자지원 조직의 내용적, 구조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또 이러한 독립성과 자발성이 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한 신뢰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동시에 피해자지원기관은 중재·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자신들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따라서 필수적으로 해당지역의 사회적 인프라구조, 즉 네트워크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형성을 지향하며 궁극적으로 공공 피해자지원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표적 민간 피해자지원단체 ‘하안동그라미’(Weisser Ring)는 변호사에게 무료로 초기법률상담을 받거나 심리치료전문의에게 무료로 초기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티켓’(Beratungsscheck)을 제공함으로써 원만한 초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초기 치료상담 및 법률상담의 지원은 범죄피해자로서의 권리와 피해자보호·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고 나아가 전문적 지원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나. 범죄피해자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배려하는 익명증거보전제도

친고죄가 아닌 성폭력범죄(피해)를 수사기관이 이미 인지하여 수사절차를 개시한 경우 나중에 범죄피해자가 범죄자에 대한 형사소추를 원치 않는다거나 소송절차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예컨대 형사고발을 철회하든가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에 의해 이미 진행된 절차를 좌우할 수 없게 된다. 이 점에서 범죄피해자 본인이든 제3자이든 형사고소·고발이 범죄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이 때문에 우선적으로 범죄피해자와 함께 상담시설을 찾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배려하면서 아직 형사고발을 통한 형사소추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ASS로 불리는 이른바 “익명증거보전절

차”(Anonyme Spuren-Sicherung)가 있다. 아직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 등 일부 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데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운용하는 증거보전절차와 관련하여 익명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등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정보권의 강화와 부대공소제도를 통한 적극적 절차참여권의 보장

성폭력범죄피해자를 포함하여 범죄피해자가 단지 증인으로서 형사절차에 사용되는 주변적 존재로만 머무르거나 심지어 2차 피해에 노출되는 한계적인 입지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와 불법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는 피해회복과 회복사법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일정한 중죄의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검사가 기소한 형사절차에 당사자 자격으로 참가하여 검사 및 변호인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참여를 보장하는 독일의 부대공소제도는 1986년 피해자보호법을 통해 재구성되어 주로 성폭력범죄피해자들이 부대공소권자로서 형사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용한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 피해자국선변호인(Opferanwalt)제도와 소송비용지원제도이며, 형사소송법 제406d조 이하의 피해자에 대한 정보권보장이라 할 수 있다.

친고죄의 폐지로 성폭력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소극적 “보호”의 측면이라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뿐 아니라 적극적 절차 “참여”의 측면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대공소절차에 준하는 절차참여와 이에 따른 제도적 보장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범죄피해자의 적극적 절차참여와 관련하여 국민참여재판이 갖는 한계에 대하여도 별도의 연구와 고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2절 영국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친고죄의 폐지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일반예방적 기능이 강화되는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소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경우 명예가 훼손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특성상 범죄 신고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좁게는 형사절차상에서의 개선을 통해, 넓게는 사회 전체에서의 사회적 보호와 지원체계의 확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는 1950년대 Mergery Fry가 범죄피해자보상제도를 주창하면서 피해자의 구제가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에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다.¹⁴⁰⁾ 1990년대에는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범죄피해자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¹⁴¹⁾ 특히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지원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범죄 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관련 지침을 통하여, 지원 센터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영국 성폭력 범죄의 피해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 및 서비스, 그리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성폭력범죄의 피해 현황 및 처리

가. 성폭력범죄 피해 현황¹⁴²⁾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의 범죄조사(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의 2009년 10월, 2010년 11월, 2011년 12월의 통합된 자료에 따르면, 평균 여성의 2.5%, 남성의 0.4%가 미수범죄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였다고 응답하였

140) 임희,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50면

141) 임희, 위의 논문, 51면

142) Ministry of Justice, Home Office &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n Overview of Sexual Offending in England and Wales, Ministry of Justice, Home Office &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3, pp.6~13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다. 성범죄 형태의 대다수는 부적절한 노출, 성적인 위협 및 원치 않는 추행 (indecent exposure, sexual threats and unwanted touching)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대 성범죄의 경우에 여성 피해자 중에서 0.5%, 남성의 경우는 0.1%정도가 심각한 성범죄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년 430,000명~517,000명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며, 여성은 366,000명~442,000명, 남성은 54,000명~90,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중대 성범죄의 경우에는 여성은 68,000명~103,000명, 남성은 5,000명~19,000명의 피해자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성폭력범죄 현황¹⁴³⁾

(단위: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남성	0.6	0.6	0.6	0.4	0.4	0.5	0.5	0.3
여성	2.8	3.3	3.1	3.0	2.5	2.3	2.5	3.0
합계	1.7	1.9	1.8	1.7	1.4	1.3	1.5	1.6

〈표 4-1〉은 잉글랜드 웨일즈 지역의 범죄조사에서 16세~59세의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비중을 정리한 것으로 여성에 대한 피해는 2.3%~3.3% 정도이며, 남성은 0.3%~0.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피해는 크게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의 5%가 16세에서 59세 사이에 심각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며, 성적인 협박이나 원치 않는 접촉 등의 다른 성범죄의 유형까지 포함하면 20%가 그 나이 대에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성범죄의 약 90% 정도가 가해자가 면식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조사는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보고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조사를 한 것이며, 조사대상의 15%만 경찰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황해서(embarrassing)’, ‘경찰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건이

143) Ministry of Justice, Home Office &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n Overview of Sexual Offending in England and Wales, Ministry of Justice, Home Office &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3, p.13 표 2.3 참조

너무 사소하거나 보고할 가치가 없다', '사적인 문제이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경찰에는 2011년, 2012년에 England와 Wales 지역에 총 53,700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중 강간은 16,000건, 성폭행은 22,100건으로 모든 성범죄의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된 CSEW 조사 결과에서 강간이나 성폭행이 아닌 다른 성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비중이 훨씬 컸다는 것과 비교할 때 가장 차이점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성폭력범죄 처리 절차¹⁴⁴⁾

영국에서 성범죄가 경찰에 신고 되고 재판을 거쳐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절차를 거친다. 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경찰에 보고되는 성범죄의 수준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낮고, 성범죄 중 경찰에 보고되는 범죄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강간이나 성폭력범죄가 많다.¹⁴⁵⁾ <그림 4-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실제 성범죄 피해에 비해서 경찰신고 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재판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건수는 확연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범죄와 관련된 용의자를 식별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때때로 경찰은 추가 수사를 하기로 하지만 범죄자 발생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 용의자가 밝혀지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재판을 통한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경찰은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경찰은 검찰과 공조 하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실제 기록된 범죄보다 더 약한 형량으로 기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과 검찰이 기소하기로

144) Ministry of Justice, Home Office &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n Overview of Sexual Offending in England and Wales, Ministry of Justice, Home Office &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3, pp.7.

145) Ministry of Justice, Home Office &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n Overview of Sexual Offending in England and Wales, Ministry of Justice, Home Office &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3, pp.7.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절차가 진행되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치안재판소(magistrate's court)에서 진행되지만 심각한 범죄의 경우에는 배심재판을 위해서 형사법원(the Crown Court)에서 다루어진다.¹⁴⁶⁾ 치안판사가 심리 중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기각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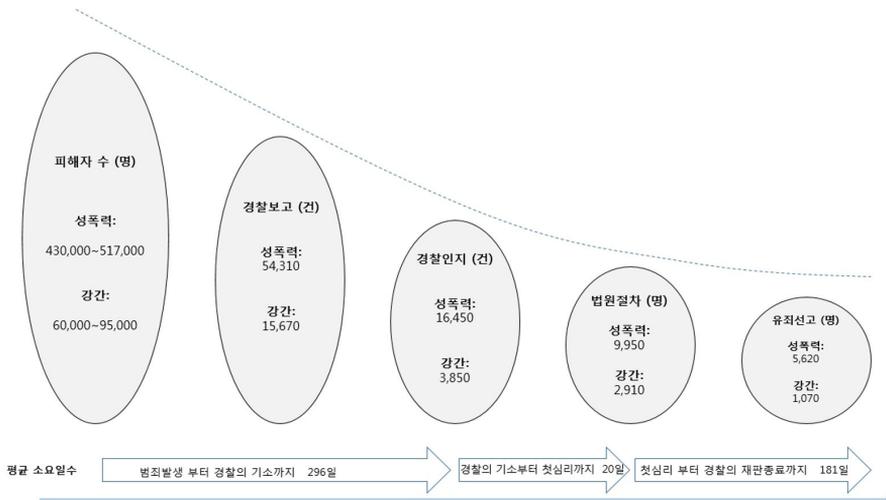


그림 4-1 성폭력범죄사건의 흐름¹⁴⁷⁾

2.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영국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으로는 가장 대표적 기관인 피해자 지원센터 (Victim Support)와 성폭력전담센터(SARC), 그 이외에 강간 위기개입단체, 생존자를 위한 위탁기관, 여성지원센터, 성폭력자문기관(Independent Sexual Violence Advisors)가 있다. 피해자 지원센터(Victim Support)는 경찰에 범죄가 신고 되거나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 및 법정에서 증인

146) Criminal Justice System, The Victim's Charter - A Statement of Service for Victims of Crime-, Criminal Justice System, 1996, pp11.

147) Ministry of Justice, Home Office &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n Overview of Sexual Offending in England and Wales, Ministry of Justice, Home Office &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3, pp7 그림 1.1 참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폭력 전담센터(SARCs)는 강간이나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적인 서비스와 함께 상담 및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즉, 피해자 지원 센터는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법정에서의 증인서비스가 핵심서비스이고, 성폭력 전담센터는 성폭력 피해지원이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 피해지원 전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기관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가. 피해자 지원센터(Victim Support)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독립적인 자선기관이다.¹⁴⁸⁾ 위 기관의 설립배경을 살펴보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경찰과의 협력 하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1974년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원호 조직(Bristol Victims Support Schemes)’이 탄생하였다. 이 조직은 각 지역별로 설립되어나가면서 1979년에 피해자 지원의 본부조직(National Association of Victims Support Schemes)이 런던에 설립되었는데 이 조직이 현재 피해자 지원의 핵심이 되고 있는 피해자지원센터(Victim Support)이다.¹⁴⁹⁾

피해자 지원센터는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찰 및 기타 다른 형사사법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타 기관으로의 위탁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1) 피해자 지원 서비스

피해자 지원센터(Victims Support)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정서적 지원(emotional support), 정보제공(information), 실질적인 지원(practical help)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⁵⁰⁾

148) Criminal Justice System, The Victim's Charter - A Statement of Service for Victims of Crime-, Criminal Justice System, 1996, pp9.

149) 양경규,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20면

150) 영국 검찰청 홈페이지 내용 참조(<http://www.gov.uk/rape-and-sexual-offences>: chapter 5:

- i)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와 연락
- ii) 피해자의 집 또는 피해자지원센터의 사무실, 혹은 기타 피해자가 안락하고 편하고 사적인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상담을 위해 훈련 받은 자원봉사자 배치
- iii) 자원봉사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선택들에 대하여 고민하고, 의료적 지원 및 법률적 지원과 같은 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 영역 이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
- iv) 피해자가 다른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성폭력전담센터로 위탁
- v) 형사보상이 필요한 경우 형사보상에 대한 신청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과 경찰에 동행하여 주는 등의 서비스제공
- vi)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를 신고한 경우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 vii) 증인서비스(Witness Service)를 통한 법정에서의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는 즉각적인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치 않는 임신, 성적인 방법으로 인한 감염(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등에 대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가 중요하다. 피해자지원센터가 성폭력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적 지원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 기관으로 위탁을 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된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크게 지역보건과의(General Practitioner)¹⁵¹⁾, 큰 병원의 성건강 클리닉(Sexual Health Clinic), 가족계획클리닉(Family Planning Clinic), 브룩자문센터(Brook Advisory Centres), 국가보건서비스 성건강클리닉(NHS Sexual Health Clinic), 테렌스 히긴스 위탁기관(Terrence Higgins Trust) 등이 있다.¹⁵²⁾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담당지역보건과의 진료를 원치 않는 경우,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각 병원 및 클리닉으로의 연계를

Victims and Witness).

151) 병원이 아닌 지역담당 의료기관에서 일반적 진료를 하는 의사(네이버 사전 참고).

152) 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http://www.victimsupport.org.uk>).

해주며 각 기관을 통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개인적인 정보의 비밀도 보장된다. 특히 성적 감염에 대해서는 일반적 정보제공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별도의 무료 핫라인 전화상담(24-hour Sexual Healthline)도 가능하다.

피해자지원센터의 주된 기능이 증인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 지원에 있어 증인지원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 증인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 증인, 가족, 친구 등을 지원하며, 잉글랜드 웨일즈 지역의 모든 형사법원에서 증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증인서비스는 구체적으로 i) 범정에 친숙해질 수 있고 범정에 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역할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증인으로서 진술을 하기 전에 법원에 미리 방문하고, ii) 법정에서의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행해주거나, 필요한 경우 재판 날짜, 양형, 그 이후의 기간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고, iii) 증인의 대기를 위한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며, iv) 법원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v) 특히 취약하거나 위협받고 있는 증인(vulnerable and intimidated)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¹⁵³⁾을 제공한다.

2) 피해자 지원 절차

경찰에 사건이 보고되면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피해자 지원센터(Victim Support 이하 VS)에 알리게 된다. 거의 매일 경찰이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에게 대한 정보를 VS로 보내게 되며, VS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전화연락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관련서류를 보낸다.¹⁵⁴⁾ 피해자의 정보가 접수되면 VS는 4일 이내에 서류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자원봉사자가 방문하도록 한다. VS가 처음으로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파악하고, 피해자가 VS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적 서비스제공 계획(helping plan)을 마련한다.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 및 직원들이, 피해자가 겪은 사안에 대한

153) 이에 대해서는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원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154) Victim Support 홈페이지 내용 참조(<http://www.victimsupport.org.uk/>).

정서적인 지원 및 보험문제, 형사보상문제,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 기관으로의 연계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는 특별하게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는 피해자나 증인으로서의 경험이 있고 6,000명이 넘는다고 한다.¹⁵⁵⁾

나. 성폭력 전담센터 (Sexual Assault Referral: SARC)

성폭력전담센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형사사법시스템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기관이다.¹⁵⁶⁾ 성폭력전담센터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의료, 상담지원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기관으로¹⁵⁷⁾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자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강간이나 성폭력에 따르는 피해회복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성폭력전담센터는 영국 정부 및 형사사법기관에서도 성폭력 피해 지원에서 중요한 기관임을 인식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성폭력을 다루는 것이 폭력범죄를 줄이는 데 있어 핵심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2011년부터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에서 모든 경찰기관에 성폭력전담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의 피해지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⁵⁸⁾ 또한 영국 형사사법기관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의 신고를 꺼려하는 이유가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낮은 신뢰도임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을 강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것이 성폭력 전담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라고 하였다.¹⁵⁹⁾

155) Victim Support 홈페이지 내용 참조(<http://www.victimsupport.org.uk/>).

156) 성폭력전담센터는 1986년 강간범죄에 대한 미비한 의료적, 법률적 대응을 보완하기 위하여 맨체스터 지역에 세인트메리(St Mary's Sexual Assault Referral Centre in Manchester)에 최초로 설립된 이래 1990년대에는 sunderland, new castle 지역에 REACH(Rape, Examination, Advice, Counselling and Help), West Yorkshire 지역에 STAR(Surviving Trauma After Rape)이라는 센터가 설립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 더 많은 센터가 설립되었다(Jo Lovett, Linda Regan, Lix Kelly, Sexual Assault Referral Centres: developing good practice and maximising potentials, Home Office Research, Depart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 2004, 1면).

157)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Guide on Investigating Serious Sexual Offences, ACPO Centrex, 2005, pp92.

158) Department of Health, Home Office, Revised National Service Guide-A Resource for Developing Sexual Assault Referral Centre, Home Office, 2009, pp9.

1)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성폭력전담센터는 영국에만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고 미국, 캐나다, 호주에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설치해두고 있는 기관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위기 개입(crisis intervention)과 과학수사(forensic examination)이 주로 이루어지며 호주의 경우에는 사회내 처우(community-based) 중심적인 서비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성폭력 전담센터의 서비스는 이러한 서비스 모델이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영국의 최초의 성폭력전담센터인 세인트 성폭력전담센터(St Mary's Sexual Assault Referral Centres)는 여성전문 병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서비스는 과학 수사(forensic examination), 의료적 검사(medical examination), 개별적 상담(one-to-one counselling), 성병검사 및 에이즈 상담, 사후피임에 대한 처방(prescription of post-coital contraception) 및 임신 검사(pregnancy testing), 24시간 전화 상담 및 지원이 있다.¹⁶⁰⁾ 이러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지역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제공되고 있는데 West Yorkshire 지역에 있는 STAR센터의 경우에는 의료서비스 보다 상담서비스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 서비스 지원 절차¹⁶¹⁾

서비스 지원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센터에 접수 경로는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의뢰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찰에 의해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담 및 피해자 위탁 서비스는 주로 센터 운영시간 동안에 이루어지지만, 강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는 응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고된 경우 경찰이 성폭력전담센터로 전화를 걸고 사건에 대한 담당 팀이 구성

159) Home Office, Cross Government Action Plan on Sexual Violence and Abuse, 2007, pp28.

160) Jo Lovett, Linda Regan, Lix Kelly, Sexual Assault Referral Centres: developing good practice and maximising potentials, Home Office Research, Depart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 2004, pp6.

161) Jo Lovett, Linda Regan, Lix Kelly, Sexual Assault Referral Centres: developing good practice and maximising potentials, Home Office Research, Depart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 2004, pp6-7.

이 된다. 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피해자의 위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사건 접수부터 필요한 조사 및 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맡고 있는 위기개입담당자(Crisis Worker)를 만나게 된다. 위기 개입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관련 의료적 법률적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 및 검사가 이루어진다. REACH(Rape, Examination, Advice, Counselling and Help)센터의 경우에는 세인트 센터와는 다르게 위기개입 담당자가 전문 경찰관 및 법의학자와 함께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상담 서비스는 개별 사건마다 융통성은 있지만 세션의 구성이 조금 제한적이다. 또한 성폭력 전담센터에서는 유일하게 그룹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STAR(Surviving Trauma After Rape)센터의 경우는 피해자에게 일관된 지원 및 상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TAR 센터에서 특징적인 것은 초기지원담당자(Initial Support Workers)와 Case Tracker이다. 초기지원담당자는 센터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상담부터 필요한 정보제공까지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며, Case Tracker의 경우에는 강간사건의 과정을 검토하면서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에 동행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¹⁶²⁾

3) 인력구성 및 예산

세인트 성폭력전담센터의 경우에 프로젝트 담당자(project manager), 임상관리 감독자(clinical director), 위기 개입 담당자(crisis worker) 5명, 상담자(counsellor) 2명, 법의학자(forensic doctors) 12명, 행정담당자(administrator), 연구개발담당자(research and development officer), 간호사(forensic nurse)로 구성되어 있다. STAR센터의 경우에는 세인트와는 다르게 위탁전문 코디네이터와 자원봉사자, 초기대응담당자, Case Tracker의 인력으로 세인트 센터보다 직책이 세밀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은 주로 지역 보건당국(Local Health Authorities)와

162) Jo Lovett, Linda Regan, Lix Kelly, Sexual Assault Referral Centres: developing good practice and maximising potentials, Home Office Research, Depart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 2004, pp7~8.

경찰청(Police Authority)에서 받고 있다.

다. 강간 위기개입센터(Rape Crisis Centres)¹⁶³⁾

강간위기개입센터(Rape Crisis Centre)는 어떤 형태든지 성폭력을 경험한 모든 연령대의 소녀 및 여성에게 장기적인 상담, 지원, 독자적인 변호(independent advocacy)를 해주는 기관이다. 이러한 강간위기개입센터는 영국 전역 및 아일랜드에 설치되어 있으며, 잉글랜드 및 웨일즈지방의 강간위기개입센터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개입센터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대표기관이다.

강간위기개입센터는 센터명은 ‘강간’행위에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서비스의 대상은 강간을 경험한 여성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잉글랜드, 웨일즈의 센터는 대표기관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며 성폭력에 대한 일반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캠페인을 하고, 성폭력 범죄의 생존자 및 타지역 위기개입센터들의 목소리를 담아냄으로써 상부 및 다른 유관기관의 대응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서비스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별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며, 각 지역 센터들에게 필요한 자문, 지원, 정책정보제공, 전문가를 공유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네트워크 연계를 제공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강간위기개입센터(Rape Crisis Scotland: RCS)의 경우는 스코틀랜드 내 지역 센터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나 부족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센터는 경찰, 검찰 및 각 보건서비스 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및 상담도 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지역 위기개입 센터는 개별 성폭력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정서적 지원 및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서비스는 다른 기관과 유사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i) 피해자에 대한 전화, 이메

163) 잉글랜드, 웨일즈의 위기개입센터 홈페이지 참조(<http://www.rapecrisis.org.uk>).

일, 서신 접촉, 면담 상담 서비스, ii) 법률 및 건강, 기타 이슈에 대한 정보제공, iii) 치료센터 및 경찰, 법원에의 동행 서비스, iv) 유관기관으로의 위탁, v) 경찰 신고에의 협조, vi) 정서적 안정을 위한 아로마테라피 등의 치료, vii) 지역 기관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이 있다.¹⁶⁴⁾

각 센터마다 지역의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센터에서 변호서비스(Advocacy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변호서비스는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지원을 해주는데, 성폭력전담센터(SARC)나 법원에 동행해주고 각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라. 생존자 위탁기관(The Survivors Trust)

생존자 위탁기관은 영국 전역 및 아일랜드 지역에 걸쳐 135개 이상의 강간, 성폭력, 아동성학대에 대한 특별 지원 기관들을 대표하는 자선활동 기관으로¹⁶⁵⁾, 그 운영은 ‘Trust’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모금되거나 빌린 돈을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루어진다. 위 기관의 이사회는 강간 및 성학대 지원 서비스 담당 관리자 및 책임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성폭력 범죄 등의 생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원 기관들은 생존자들의 성별·나이에 상관없이 상담, 지원을 하며, 생존자 위탁기관은 각 기관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i) 승인받은 교육을 제공하고, ii) 강간 및 성학대, 피해자에 대한 영향,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며, iii) 지역차원(local), 지방차원(regional), 국가적 차원(national)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생존자위탁기관은 연계기관인 만큼 개별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홈페이지에서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전 지역의 135개 이상의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 및 링크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별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164) 스코틀랜드 위기개입센터 홈페이지 참조(www.rapecrisisScotland.org.uk).

165) 생존자위탁기관 홈페이지 참조(<http://www.the-survivorstrust.org>).

마. 여성 지원 센터(Women's Aid)

여성지원센터는 영국에서 지역 가정폭력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원하는 국가의 가정폭력 자선기관이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관련하여 여성지원센터는 특히 가정폭력과 관련이 있는 중대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지원을 한다. 위센터는 정부, 경찰, 사회 복지 서비스 및 보건서비스 기관과 자원봉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학대받는 여성과 아동을 보고하기 위하여 통합된 접근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의 여성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며,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24시간 무료 상담 전화가 가능하고 보호시설하고도 연계가 가능하다.

바. 성폭력자문서비스(Independent Sexual Violence Advisors(ISVAs))

성폭력자문서비스는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위 서비스는 지역 성폭력전담센터(local SARC), 강간위기개입센터, 경찰청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¹⁶⁶⁾, 생존자위탁기관에 등록된 수많은 서비스기관에서도 제공되고 있다. 위 서비스는 2005년 Home Office Violent Crime Unit을 통해 스코틀랜드에서 확립되었다.¹⁶⁷⁾

피해 및 증인 서비스 관련 기관, 상담 및 보건서비스와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¹⁶⁸⁾

위 자문기관은 성폭력전담센터(SARC)와의 초기 면담이 있자마자 피해자에게 지원을 하며, 이외에 기타 응급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형사사법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제공부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함께하며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에도 동행하고 있다.

166) Right of Women, From Report to Court-A Handbook for Adult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2008, pp54.

167) <http://www.thesurvivorstrust.org>.

168) <http://www.cps.gov.uk> 참조

3. 형사절차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형사절차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영국에서는 피해자헌장(The Victim's Charter) 성폭력 및 학대에 대한 범정부적 실천계획(Cross Government Action Plan on Sexual Violence and Abuse 2007)과에서 기본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피해자 헌장과 실천계획 모두 피해자 지원 전반에 대한, 형사절차 단계별 기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대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다.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가 경찰에 보고를 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실제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¹⁶⁹⁾¹⁷⁰⁾ 이하에서는 각각에서 형사절차에 있어 어떠한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피해자 헌장(The Victim's Charter)

피해자 헌장(Victim's Charter)은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실시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피해자 지원과 기본 권리를 위해 발표되었다. 피해자 헌장은 처음 'Victim's Charter: A statement of rights of victims of crime'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가 1996년 'Victim's Charter: A Statement of service standards for victims of crime'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¹⁷¹⁾ 전자에서는 형사사법기관의 과제에 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았지만, 후자에서는 형사사법 각 단계에서의 피해자의 보호 내용이나 기준, 불복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1996년 피

169) Home Office, Cross Government Action Plan on Sexual Violence and Abuse, 2007, pp34.

170) Kelly의 연구에서는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피해자의 지원 및 지지는 특히 피해자가 그 절차를 잘 감당하게 하는데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Kelly, L.Lovett, Land Regan, A Gap or Chasm? Attrition in reported rape cases, London, Home Office Research Study, 2005 참조.

171) 영국피해자 권리 헌장은 국제연합의 '범죄 및 권력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서비스기준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고 이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의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형사사법기관이 이 헌장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양경규, 앞의 논문, 22면).

해자 현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6년 피해자 현장은 범죄가 경찰에 보고된 이후의 절차, 피해자가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 그 이외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을 경우 불편을 알릴 수 있는 방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경찰단계¹⁷²⁾

범죄가 경찰에 보고되면, 경찰은 이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우선 피해자에게 5일 이내에 수사 절차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범죄의 피해자(Victims of Crime)’라는 안내책자를 발송하여 수사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도 가해자와 관련하여 절차진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범죄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강간의 피해자이거나 중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전문경찰이 배치된다.

2) 법원단계

피해자가 증인이 되는 경우 피해자는 Victim Support에서 운영 하는 증인 서비스(Witness Service)를 받을 수 있다. 증인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재판 전후에 법원을 방문하여 법원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법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자의 신분은 법정에서 노출되지 않고, 대질 심문을 받지 않으며, 피해자의 성적 편력에 대한 증거나 질문에 제한이 가해진다. 법정에서 검찰이 텔레비전 생중계, 증인석 주변의 스크린 옆에서 피해자에게 증거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발이나 가운 등을 벗도록 요구할 수 있다.¹⁷³⁾

또한 형사법원(the Crown Court)에서 피해자를 증거 제시 이전에 두 시간 이

172) Criminal Justice System, The Victim's Charter - A Statement of Service for Victims of Crime-, Criminal Justice System, 1996, pp2.

173) Criminal Justice System, The Victim's Charter - A Statement of Service for Victims of Crime-, Criminal Justice System, 1996, pp14.

상 기다리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지연이 있을 경우에는 지연의 이유를 상세하게 전달한다. 피해자의 법정에서 진술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형사법원에서 지불한다.

3) 정서적 지원 및 실질적 지원(emotional and practical support)

피해자현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 및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범죄가 신고 된 이후 피해자가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경찰은 피해자에 관련된 자료를 Victim Support로 보내고, Victim Support는 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 서류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자원봉사자가 방문하도록 한다. 단, 사건이 성폭력 범죄, 가정폭력, 살인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자료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Victim Support로 보내진다.¹⁷⁴⁾

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상해 등의 피해로 손해를 입은 경우 두 가지 방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는 가해자에게 법원이 보상명령을 내리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형사보상계획(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Scheme)에 따라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다.¹⁷⁵⁾(자세한 내용은 Compensation for victims of violent crime) 형사보상계획에 따른 보상은 전화로 상담 가능하며 모든 신청은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이외에도 피해자 현장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를 경찰, 검찰, 형사법원, 판사, 보호관찰 서비스, Victim Support 혹은 Witness Service, 형사보상관련 기관 각각에 대하여 나누어 언급하고 있다.¹⁷⁶⁾

174) Criminal Justice System, The Victim's Charter - A Statement of Service for Victims of Crime-, Criminal Justice System, 1996, pp.7.

175) Criminal Justice System, The Victim's Charter - A Statement of Service for Victims of Crime-, Criminal Justice System, 1996, pp.9~10.

176) 자세한 내용은 Criminal Justice System, The Victim's Charter - A Statement of Service for Victims of Crime-, Criminal Justice System, 1996, pp.18~21.

나. 성폭력 및 학대에 대한 범정부적 실천계획

성폭력 및 학대에 대한 범정부적 실천계획(Cross Government Action Plan on Sexual Violence and Abuse 2007)은 성폭력 및 아동성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건서비스의 접근을 확대하고, 형사사법적 대응을 향상시키며, 예방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으로 수립되었다.¹⁷⁷⁾ 동 실천계획은 크게 성폭력 및 학대에 대한 현황, 관련 정부정책, 피해자 지원 및 보건서비스, 형사사법의 대응, 예방의 내용으로 기본적인 지침들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용은 수사, 기소, 법정절차, 양형 단계, 그리고 그 이외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사

수사절차에서는 사건 처리에 대한 평가와 성범죄 전문인력의 교육을 강조한다. 강간사건의 경우 평가보고 절차를 수립하도록 하고 이러한 평가과정도 감독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평가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전문인력은 성범죄 전문 경찰부터 상위직급의 수사관에 이르기까지 성범죄에 대한 특별 교육 및 직업적 표준 등을 교육받도록 하고 있다.¹⁷⁸⁾

2) 기소

기소단계에서 피해자 지원은 성폭력범죄 수사 및 기소에 있어 검찰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중대한 성범죄 기소에 있어 강간 전문 검사들(specialist rape prosecutors)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거나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e-learning 교육 패키지를 만들고 있다. 이외에도 모든 검사가 이틀간에 걸친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데 양일간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고, 경찰과 수사공조를 위한 협동 컨퍼런스를 개최한다.¹⁷⁹⁾

177) Home Office, Cross Government Action Plan on Sexual Violence and Abuse, 2007, pp2.

178) Home Office, Cross Government Action Plan on Sexual Violence and Abuse, 2007, p.31.

3) 법원절차

법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는 주로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 증인보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정으로 가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데 있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법원이 되도록 안전한 환경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1999년에 소년사법 및 증거법(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를 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포함하여 취약하고 위협받는 증인에게 법정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⁸⁰⁾

이외에도 증인이나 피해자를 위한 법원에서의 시설을 보다 안락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 증인을 위하여 DVD나 플레이스테이션 등 게임을 하거나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모든 형사법원과 치안법원에 예산을 투자하였다.

4) 기타 지원 서비스

가해자의 교도소나 감호소로 부터의 석방 시기 혹은 석방과 둘러싼 조건 등과 같은 정보를 피해자가 모르게 된다면 피해자는 재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보호관찰소(National Probation Service)에서 가해자가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보호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는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담당 보호관찰관을 만나 가해자에 대한 염려나 걱정 등의 심리상태를 상담하고, 가해자가 석방된 이후의 감독체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받고, 가해자의 최종 석방 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다.¹⁸¹⁾

다. 소년사법 및 형사증거법

소년사법 및 증거법(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에서

179) Home Office, Cross Government Action Plan on Sexual Violence and Abuse, 2007, p.32.

180) Home Office, Cross Government Action Plan on Sexual Violence and Abuse, 2007, p.33.

181) Home Office, Cross Government Action Plan on Sexual Violence and Abuse, 2007, pp.35~36.

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포함하여 취약하고 위협받는 증인(vulnerable and intimidated witness)에게 법정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 특별조치의 대상

우선 취약한 증인에 대해서는 17세 이하이거나, 법원이 피해자의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¹⁸²⁾ 여기서 피해자의 상황이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지능 및 사회적인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¹⁸³⁾ 위협받는 증인에 대한 판단은 i) 범행의 특징 및 정황, 연령, ii) 사회 문화적 배경, iii) 가정 및 고용 상황, iv) 종교 및 정치적 신념, v)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증인에 대한 행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¹⁸⁴⁾

2) 특별조치의 종류¹⁸⁵⁾

㉠ 차단막(screen)설치

피고인이 증인을 볼 수 없도록 피고인이나 증인의 주변에 차단막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차단막은 피고인을 제외한 검사, 피고인 측 변호인, 판사, 배심원은 증인이 진술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설치된다.

㉡ TV 생중계(live link)

증인이 법정의 다른 공간이나 다른 건물에서 텔레비전 링크를 통하여 생중계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182) 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6(1).

183) 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6(1).

184) 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7(2).

185) 특별조치에 대한 내용은 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리된 내용은 Right of Women, From Report to Court- A Handbook for Adult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Right of Women, 2008, pp.66-68 참조

㉔ 비디오 영상 녹화 증거(Video recorded evidence)

증인이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사전 녹화된 인터뷰 영상을 재판에 이용하는 것이다. 증인이 경찰에게 범행의 정황에 대해서 이미 진술했던 인터뷰가 주로 활용되며 이 영상녹화 증거가 법정에서 증인의 주된 증거제시(examination-in-chief)로 활용된다.

㉕ 중재자(intermediary)

증인을 지원하도록 법원에서 지정된 중재자를 통해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단, 중재자를 활용하는 방법은 증인이 어리거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disability)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㉖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Aids to communication)

증인의 진술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통역자나 상징 책(symbol book)이나 알파벳 보드(alphabet board) 등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상의 도움은 중재자를 통해서 특별조치로 이루어질 수 있다.

㉗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금지(Protection from cross-examination by the defendant)

피고인은 증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없으며, 피고 측의 증인에 대한 질문은 피고인의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㉘ 증인의 성적행동에 대한 질문금지(Restriction on evidence and questions about sexual behaviour)

증인에 대하여서는 증인의 어떠한 성적 병력(sexual history)나 성적취향(sexuality)에 대한 질문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성폭력이나 위협적인 상황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서 일반대중이나 언론의 재판 방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치안법정이나 소년법정에서 증인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법관이 가발이나 가운을 벗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조치는 당사자가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해당 특별조치의 유형은 당사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과 법정에서 적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결정되며, 재판일자가 결정되었지만 특별조치에 대한 어떠한 정보제공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담당경찰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증인의 특별조치에 대한 의견은 경찰을 통하여 검사에게 전달되며 검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법정에 특별조치를 위한 신청을 하게 된다. 증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별조치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판사나 치안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취약하고 특정상황으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증인에 대한 배려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과 실제적 진실 발견의 두 가지 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방법이 법정 절차를 꺼려하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증거를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¹⁸⁶⁾

라. 경찰서장연합(ACPO)의 중대 성범죄¹⁸⁷⁾ 수사지침

영국 경찰서비스는 중대 성범죄에 대한 수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소권자인 피해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전반적인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사전적 다기관협력방식을 채택하기 위하여 중대 성범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중대 성범죄를 위한 수사지침(ACPO¹⁸⁸⁾ Guidance on Investigating

186) Home Office, Cross Government Action Plan on Sexual Violence and Abuse, 2007, pp.33.

187) 모든 성범죄가 심각한 범죄이지만, 위 지침에서 중대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은 강간(Rape), 삽입에 의한 성폭행(Sexual assault by penetration), 특히 폭력이 심각하거나 범죄의 특성상 가중된 형태의 성범죄(sexual assault where the assault is particularly serious or features of the offence are aggravated),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행위(causing a person to engage in sexual activity without consent), 수사관에게 특히 성적으로 중대한 특성을 가진 다른 형태의 범죄(any other offence of a sexual nature deemed especially serious by the investigating officer), 이상의 범죄에 대한 미수범죄(An attempt to commit any of the above offences)이 있다(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Guide on Investigating Serious Sexual Offences, ACPO Centrex, 2005, pp.10).

188)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의 약자.

Serious Sexual Offences)을 마련하여 수사에 있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지침은 범죄 신고의 패턴, 대응, 전문경찰관(Specially Trained Officer), SARC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⁸⁹⁾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 진행에 대한 두려움 및 기타 요인들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신고를 하여 절차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경찰이나 관련 지원기관들의 보호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찰서비스에서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영국은 성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여 중대 성범죄를 초기에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전담 경찰관은 크게 수사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담경찰관은 수사관(Investigating Officer)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은 전담경찰관의 역할의 한계를 설정해두고 있다.

먼저 전담경찰관은 수사과정에 있어 i) 중대 성범죄 신고에 대한 초기대응, ii) 피해자에 대한 수사목적의 의료 검사(medical examination), iii) 피해자로부터의 증거 샘플 보존, iv) 수사관 및 수사팀에 대한 사건 보고, v) 범죄수사국(Crime Scene Investigation) 범죄현장 담당자 및 수사관에게 법의학적 정보 소통, vi) 수사관의 지휘 하에 수사 과정에 대하여 법의학자에게 보고, vii) 피해자 인터뷰 등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¹⁹⁰⁾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역 마다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상이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i) 즉각적인 신체적, 정신적, 복지적 지원, ii) 성폭력전담 센터(SARC) 혹은 유관기관에 연계, iii) 의료적 검사 및 사후절차에 걸쳐 피해자와 동행, iv) 다른 지원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필요한 정보제공, v)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설명, vi) 수사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vii) 재판전 지원, 증인 서비스 센터와의 연계 하에 재판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에 대한 평가, viii) 형사보상 관련 지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¹⁹¹⁾ 또한 형사사법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새

189)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Guide on Investigating Serious Sexual Offences, ACPO Centrex, 2005, pp.7.

190)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Guide on Investigating Serious Sexual Offences, ACPO Centrex, 2005, p.90.

191)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Guide on Investigating Serious Sexual Offences, ACPO Centrex, 2005, p.90.

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경찰서비스와 연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해자가 석방된 경우 피해자가 재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 전담 경찰관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형사사법기관 사이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전담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i) 경찰관이어야 하고, ii) 경찰로서의 경험이 충분하며 중대 성범죄 수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iii) 자원봉사의 사명감을 가진 자이어야 하고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자 중에 특별 훈련을 받아 선발된다.¹⁹²⁾

내무성(Home Office)에서 조사한 2008년~2009년의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방의 범죄통계에서는 경찰에 신고된 중대 성폭력범죄가 40,787건이었으며, 전체 성범죄 중에서 중대 성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79%이었다고 한다.¹⁹³⁾ 이 점을 고려할 때 중대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성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4. 영국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시사점

앞서 검토한 영국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관과 각 기관의 서비스, 그리고 형사절차상의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성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을 위한 서비스 창구가 다양하다.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청 내부의 성폭력 담당 경찰관이 사건이 진행되고 종료된 이후에도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연계하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지역의 피해자지원센터(Victim Support), 성폭력전담센터(Sexual Assault Referral Centre: SARCs), 강간위기개입센터(Rape Crisis

192)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Guide on Investigating Serious Sexual Offences, ACPO Centrex, 2005, p.91.

193) Department of Health, Home Office, Revised National Service Guide-A Resource for Developing Sexual Assault Referral Centre, Home Office, 2009, p.9.

Centre), 생존자위탁기관(The Survivors Trust), 여성지원센터(Women's Aid), 성폭력 자문서비스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각 기관의 담당자가 성폭력 피해자의 요구에 맞게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루트를 통하더라도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형사사법기관의 긴밀한 연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일대일 대응이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개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담 담당자를 두고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의 정보제공, 서비스 지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동행 서비스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일대일로 밀착하여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경찰에 전담경찰관(Specially Trained Officer)을 두어 사건이 신고 되어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폭력전담센터에도 일관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초기지원담당자나, 사건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영국 형사사법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를 꺼려하는 이유가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 있음을 인지하고 형사사법절차상에서 피해자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증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진다.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 증인이 두 시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며, 재판절차에 익숙할 수 있도록 미리 방문하여 충분한 정보제공을 해주며, 대기실을 안락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아동 증인을 위하여 게임을 하거나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약한 증인이나 위협받고 있는 증인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거절하지 않는 이상 특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인이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진술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생중계를 하거나, 중재자를 통하여 하도록 하거나, 미리 경찰서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신문을 금지하고, 증인에 대한 성적 취향이나 편력에 대한 질문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증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실제적 진실발견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사건 종료 이후에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가해자가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보호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성폭력피해자는 보호관찰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해자의 석방일자, 그 이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의 가해자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보호관찰관을 통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염려나 걱정 등의 심리상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의 석방이후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피해자가 적극 참여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는 피해자의 재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뿐더러, 사건 이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심리상태를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제3절 일본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일본의 경우 2000년까지 범죄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정책이 거의 없다가, 최근 범죄피해자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형사사법기관 등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04년 「범죄피해자등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에 기초하여 2005년에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의익의 보호가 도모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이 기본계획에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4개의 기본방침, 5개의 중점과제 하에 258개의 구체적 시책이 마련되었는데, 이 가운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되었다. 2011년 3월에는 241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제2차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계획기간은 2015년 말까지)이 책정되었다. 형사사법절차에서도 범죄피해자를 일정한 제한 내에서 형사절차에 참가시켜 당사자로서 활동하게 하면서도 검찰관의 권한을 일부 행사하게 하여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서 지위로 격상시켰다.¹⁹⁴⁾

194) 김보현, “일본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III-3) 제26집, 법무연수원 2011, 192면

1. 성폭력범죄의 피해 현황 및 처리

2011년 내각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성으로부터 무한하게 성교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의 7.7%이었다. 20대~60대 여성인구로부터 추산해보면 308만건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상담에 관하여는 경찰에게 알린 경우는 겨우 3.7%에 불과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않은 경우가 67.9%에 해당하였다.¹⁹⁵⁾ 법무총합연구소의 암수조사에서도 성적 사건의 피해신고율은 13.3%에 불과했다. 강도는 65.6%, 폭행·협박이 36.8%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낮은 수치이다.¹⁹⁶⁾

2013년 일본범죄백서에 따르면, 2012년도 강간사건에 대하여 인지한 건수는 1,240건이고, 검거한 건수는 1,097건이다. 반면, 강제추행에 대한 인지건수는 7,263건, 검거건수는 3,946건이다.¹⁹⁷⁾

2.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일본은 1996년 피해자유족으로 조직된 ‘살인범죄 척결을 위한 유가족 모임’, 1970년대 ‘피해자보상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모임’ 등 피해자가족들의 상호원조를 촉진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

가. 동경강간지원센터

1983년 강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동경강간지원센터(東京強姦救援センター)’가 설립되었다. 동경강간지원센터는 여성에 의해 여성을 위한 조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로, 일본 최초의 강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민간조직이다. 동경강간지원센터에서는 강간피해자에 대한 전화상담활동을 하고 있고, 필

195) 内閣部, 男女間における暴力に関する調査報告書, 2012.4.

196) 法務總合研究所, 第3回犯罪被害(暗數)實態調査, 2009.

197) 法務省, 犯罪白書(平成25年版), 2003, 5夏.

요한 경우 의료, 법률정보 등의 제공과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협력관계에 있는 의사 및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지원하는 활동 등도 하고 있다.

나.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

1998년 5월에 민간피해자 지원조직 연합체로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NNVS: National Network Victim Support)가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피해자지원단체 및 기관의 연계와 상호협력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맹조직은 이후 점점 증가하여 2009년 7월에 47개 시도부현에 설치되었다. 이후 모든 단체가 조기원조단체의 인정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보다 한층 더 지원내용을 충실히 하고자 하고 있다. 2006년 9월 5일부로 내각부의 인정을 받아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되었고, 2010년 11월 15일부로 국세청의 인정을 받아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되었다.¹⁹⁸⁾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에서는 지원책임토위원회, 연수위원회, 지원활동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의 충실을 목표로 하는 결의서 초안 작성, 전국연수회의 개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윤리강령 마련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자조그룹활동지원위원회 화통을 통해 자주적인 단체간 연대 및 지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오사카성폭력구제센터

오사카 성폭력 구제센터(SACHICO: Sexual Assault Crisis Healing Intervention Center Osaka)가 2010년에 개설되어 24시간 핫라인과 산부인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동의를 없었거나 대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요된 성적행위는 모두 성폭력이라고 보고, 이는 인간의 존엄에 문제가 되는 동시에 의료문제이어서 여성에 대한 구급의료로서 조직되었다. 오사카성폭력구제센터에서는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전화상담과 면접상담을 하고 있고, 산부인과적 진료와 증거채취, 다른 지원단체에 관한 정보제공, 법적 지원, 아동상담소와의 연계지원, 여성 안전

198)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nnvs.org/network/index.html>).

과 의료지원센터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기관·개인과의 연계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성폭력구제센터가 신설되어 2년 동안(2010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강간·강제추행으로 상담받은 사람이 19명이고, 성학대 상담을 받은 사람이 82명이다. 긴급피임약 투여를 받은 사람이 66명, 성감염병 검사를 받은 사람이 140명, 증거채취를 받은 사람이 86명, 경찰에 통보된 인원이 102명이었다.¹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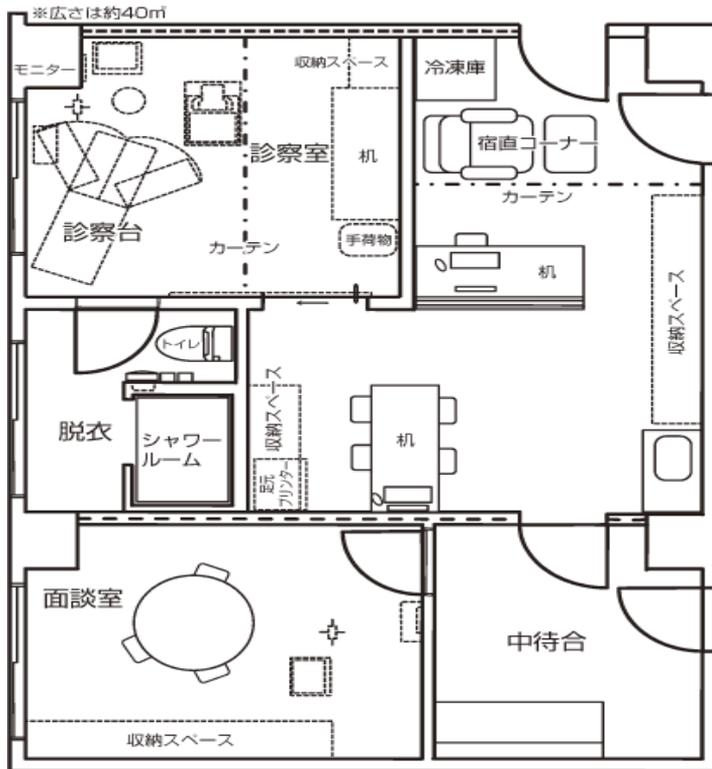


그림 4-2 오사카성폭력구제센터의 구조

199) 오사카 성폭력구제지원센터(<http://www.sachico.jp/>)

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2005년 5월 범죄피해자보호2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심사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형사소송법’이라 함)」(2000년 법률 제74호)과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법률(이하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 함)」(2000년 법률 제75호)이 제정되어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친고죄인 성범죄에 대한 고소기간 철폐, 증인신문시의 증인 부담경감을 위한 조치로서 신뢰관계인 동석, 차폐시설의 설치, 비디오링크방식에 의한 신문, 피해자에 의한 심정 기타의견 진술, 검찰심사회법에서 신청권자의 범위 확대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공판절차의 방청에 대한 특별한 배려, 공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민사상 화해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²⁰⁰⁾

표 4-2 일본의 피해자 및 증인배려제도의 실시현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의견진술	1,068	1,119	1,198	1,164	1,154	
의견진술을 대신하는 서면제출	339	490	557	561	517	
증인 보호	차폐	1,007	1,094	1,295	1,317	1,757
	비디오링크	202	235	261	242	288
	부참인	86	79	102	136	288
피해자특정사항 비공개결정	2,490	3,849	3,854	3,887	4,271	
형사화해	35	46	34	30	38	
손해배상명령 신청	-	162	239	237	246	
기록열람·등사	1,012	1,348	1,175	1,278	1,381	

※ 출처: 法務省, 犯罪白書(平成25年版), 2003, 5夏.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등기본법에 근거하여, 2005년 13월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11년 3월에 제2차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200) 高井康行·番 敦子·山本 剛, 犯罪被害者保護法制解説 第2版, 三省堂, 2008, 2夏.

가.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1) 친고죄 고소기간 철폐

일본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사건을 잊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고소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6개월 이내에 고소하는 것인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정신적 피해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지속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6개월의 고소기간은 짧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00년 5월 일본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으나, 성범죄의 고소기간은 철폐하였다(제235조 제1항). 친고죄 중 고소기간이 철폐된 유형은 강제추행, 강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피인취자 인도에 관한 고소사건 등이다.

2) 공술조서의 개시 및 열람

2004년 5월 법무성 형사국장의 통달로서 불기소기록 중 공술조서의 개시가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불기소기록 중 공술조서에 대하여 개시에 의한 수사, 공판 지장,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또는 민사재판에서 증인신문 등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개시 또는 열람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공술조서의 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 인정되도록 하였다. 공술조서의 개시가 인정되는 경우는 민사법원으로부터 특정인에 대한 공술조서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이 행하여진 경우로 당해 공술조서의 내용이 민사소송의 결론 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쟁점에 관한 것으로 유일 증거인 경우, 공술자가 사망 등에 의해 민사재판 법정에서 공술할 수 없는 경우, 공술내용이 민사재판에서의 공술과 실질적으로 상반되는 경우 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 경찰의 성범죄피해자 지원대책

내각총리대신 자문기관인 ‘남녀공동참화심의회(男女共同参画審議会)’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대책이 주요검토과제였고, 1996년 3월 내각 결정으로 ‘남녀공동참화

2000년 계획(男女共同参画 2000計画)에서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보호·구제대책의 충실 등이 포함되었고²⁰¹⁾, 1999년 6월에 ‘남녀공동참화사회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성범죄피해의 잠재화 방지 및 피해자의 정신적 부담 경감을 위해 1996년부터 모든 경찰본부에 성범죄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담당관과 여성경찰관을 배치하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기초적 정보 제공을 위해 성범죄 피해자용 안내서를 제작하여 피해 신고시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1996년 ‘피해자연락실시요강(被害者連絡実施要綱)’이 제정되어 각 경찰서에서 ‘피해자연락담당계를 설치하고,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신체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체포, 기소 등 수사상황 및 피의자의 처분상황 등에 대하여 통지하고 있다.’²⁰²⁾

나.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1) 부첨인제도 활용

일본은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로써 부첨인제도를 두고 있다. 법원이 증인신문을 할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히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불안 또는 긴장을 완화함에 적당하고 재판관 또는 소송관계인의 신분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증인의 진술과정 중 증인을 돌봐주게 할 수 있다. 이를 부첨인(附添人)이라 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157조의2). 부첨인은 증인의 진술과정 중 법관이 소송관계인의 신분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언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첨인이 신문 또는 진술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인을 보조하고 증인의 불안이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휴정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증인신문에 대해 이의

201) 男女共同参画推進本部, 男女共同参画 2000 年プラン, 1996.

202) 피해자연락실시요강(<http://www.npa.go.jp/pdc/notification/keiji/keiki/keiki20061207-1.pdf>).

제기를 하는 등 절차진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강간죄, 강제추행죄, 음란 또는 결혼목적 유인죄,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에 대한 음행죄, 아동에 대한 유해지배죄, 아동매춘법이 정하는 아동매춘죄 등으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인 증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면전에서 진술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법관 및 소송관계인이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 재석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증인을 재석시켜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상대의 상태를 서로 인식하면서 통화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신문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증인이 나중의 형사절차에서 동인한 사실에 대하여 증인으로 진술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증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증인의 신문 및 진술과 그 사항을 기록매체에 기록할 수 있다. 증인의 신문 및 진술과 그 상황을 기록한 기록매체는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157조의4).

200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차폐시설에 의한 증인신문제도를 도입하여 증인 신문시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실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기타사정에 의해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할 경우 압박을 받아 정신의 평온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과 증인사이에 한쪽 또는 서로 상대의 상태를 인식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범죄피해자 정보보호

2007년 6월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기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犯罪被害者等の権利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訴訟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의 제정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보호가 가능해졌다.²⁰³⁾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등, 당해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변호사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특정사항(성명, 주소, 기타 당해사건의 피해자를 특정하는 사항)을 공개법정에서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90조의2 제1항). 신청권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 또는 심신에 중대한 사고가 있는 때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변호사가 된다.

피해자의 특정사항을 공개법정에서 밝히지 않는다는 신청은 미리 검사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통지한다(동조 제2항). 법원이 피해자 특정사항을 공개법정에서 밝히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피해자특정사항을 숨기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어야 한다. 법원이 피해자 특정사항을 공개법정에서 밝히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기소장의 낭독 및 증거서류의 낭독은 피해자 특정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이 하는 신문이나 진술이 피해자 특정사항에 관계된 것인 때에는 이를 제한함으로써 범죄의 증명에 중대한 지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문이나 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제295조 제3항, 제305조 제3항).

일본은 범죄피해자 정보를 밝히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나 변호인이 따르지 않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피해자의 특정사항을 법정에서 밝히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나 변호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은 검사에 대하여는 당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는 자에게, 변호인은 당해 변호사가 소속된 변호사회 또는 일본변호사연합회에 통지하여 적절한 처분을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295조 제4항). 이러한 청구를 받은 자는 그가 취한 조치를 법원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제295조 제5항). 변호사가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경우에 일본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거나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거나, 변호사회에 징계를 받게 된다.

203) 福井 厚, 刑事訴訟法 第7版, 有斐閣, 2012, 2夏; 渥美 東洋, 全訂 刑事訴訟法, 有斐閣, 2009, 18夏.

4) 피해자 의견진술권

피해자의견진술권은 2000년 5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피해자 등이 일정 범위 내에서 사건의 당사자로서 주체적으로 형사재판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정에서 피해자 등이 자신의 심정 등을 진술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감정의 완화가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²⁰⁴⁾ 일본 형사소송법 제292조의2에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받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심정 및 당해사건에 대한 의견진술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견진술권이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는 없다.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피해자 등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다. 의견진술권은 피해자 및 그에 준하는 자의 심정을 법원에 진술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변호사는 신청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견진술의 신청은 법원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검사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92조의2 제2항). 진술내용은 피해에 관한 심정, 기타 피고사건에 관한 의견이다. 이러한 의견 진술은 피해자의 심정이나 의견을 양형판단의 하나의 자료로 하는 것일 뿐이고, 사실인정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견진술 내용에 신용성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신문은 상정되어 있지 않으나 발언의 취지 확인, 명확화의 필요성은 있다 할 것이므로 법관 및 소송관계인은 피해자 등이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제292조의2 제3항, 제4항).

진술은 대체로 증거조사절차의 종료 후 검사의 논고, 구형 전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²⁰⁵⁾ 다만, 법관은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 또는 소송관계인의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이 기존에 한 질문과 중복되는 때나 사건에 관계없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 기타 상당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제292조의2 제5항).

204) 高井康行·番 敦子·山本 剛, 犯罪被害者保護法制解説 第2版, 三省堂, 2008, 44夏

205) 高井康行·番 敦子·山本 剛, 犯罪被害者保護法制解説 第2版, 三省堂, 2008, 43夏

5) 피고인 퇴정

법원은 공판기일 외에서의 증인신문에 피고인이 입회한 경우,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는 압박을 받아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의 진술 중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 있다. 의견진술 종료 후 피고인에게 증언의 요지를 고지하고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81조의2).

다. 피해자참가제도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2008년 12월부터 피해자참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살인죄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참가인으로서 형사재판에 참가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외에, 검찰관의 소송활동에 의견을 진술하고, 정상사항에 관하여 증인을 심문하고, 스스로의 의견진술을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고, 사실·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참가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범죄의 성질, 피고인과의 관계 기타 사정을 고려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결정으로 절차 참가를 허락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316조의33).

그리고 피해자 또는 그 변호인의 공판기일 및 증인신문 또는 검증이 행해지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심리상황, 피해자참가인의 수,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공판기일 전부 또는 일부의 출석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제316조의34). 피해자참가인은 검사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상의 권한 행사에 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고 이때 검사가 당해 권한을 행사 또는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제316조의35).

법원이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참가인 등으로부터 증인신문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심리상황, 신청내용, 신청인의 수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증인신문을 허락하여야 한다. 증인신문신청은 검사가 신문종료 후 신문사항을 명확하게 하

여 검사에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신청된 신문사항 중 검사가 이미 신문한 사항을 제외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그 신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제316조의36).

법원은 피해자참가인 등으로부터 사실 또는 법률의 적용에 대하여 의견진술 신청이 있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판기일에 검사의 의견진술 후 공소사실로서 특정된 사실범위 내에서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을 허락하여야 한다(제316조의38).

표 4-3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 실시현황

연도	2009	2010	2011	2012
전체	560	839	902	1,000
증인신문	130	217	176	193
피고인질문	344	484	459	474
논고·구형	288	428	454	479
차폐	50	115	104	95
변호사에의 위탁	367	557	632	675
국선변호인에의 위탁	131	272	275	324

※ 출처: 法務省, 犯罪白書(平成25年版), 2003, 5頁.

4. 일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시사점

일본에서 최근 신설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배려 규정은 범죄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단순히 증거로서 기능하여 왔던 기존 태도를 바꾸어 범죄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여 검찰관과 협의를 통하여 기존 검찰관이 하던 권한의 일부를 행사하게 하는 등 범죄피해자를 형사사법절차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객체에서 주체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피해자구제지원체계는 다양한 지역내 연계기관을 네트워크화 하여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사카 성폭력지원센터의 경우 의료적 지원을 중점으로 하여 지역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경우 지역내 상담서비스체계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가고 있으나 의료적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사카 성폭력지원센터의 운영모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로써 부침인제도 운영, 법률조력인의 참여 등에 관한 규정들이 우리나라와 상당부분 유사하다. 다만 일본의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상이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과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미이행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제5장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이승현·김정혜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제1절 친고죄 폐지로 인한 피해자 지원 내실화방안

1. 상담지원체계

가. 성폭력피해상담소 접근성 개선

현재 전국에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는 176개소로, 절대수는 적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데, 지역적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중소도시, 읍면 지역일수록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피해자가 사건을 은폐하기 쉬우므로 초기부터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그와 같은 소규모 지역일수록 상담소의 접근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피해자 지원의 공백이 우려된다.

다만 인구밀도와 지리적 접근성, 예상 사건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상담소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신규 상담소를 설치하는 대신 인근 지역 상담소에서 파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파견 상담소로 운영하더라도 상담은 가급적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

관하게 언제라도 형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고 피해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파견상담소에는 상담전화 및 면접상담 공간, 일시보호 공간을 마련하고 상담원은 인근 지역 상담소 몇 곳의 상담원들이 돌아가면서 파견 근무하는 방법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 21개소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 최근 몇 년 간 보호시설의 입소 정원은 증가하였다. 2008년에 비하여 2012년의 정원은 52명 더 많다. 그러나 입소 인원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는데, 2008년의 입소 인원이 437명인데 비하여 2012년 입소 인원은 236명으로, 2008년의 54.0% 수준에 그쳤다. 이는 입소 연장으로 장기간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일 수 있는데, 달리 말하면 피난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역시 늘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2013년 6월 시행된 개정 보호법은 입소 기간 연장 사유를 이전보다 확대하였다. 단기 보호의 한계로 인하여 장기 보호시설을 도입하고, 입소자의 기간 연장 사유를 유연하게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거나 기간 연장 사유 확대에 맞추어 보호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입소 기간 증가는 결국 실질적인 입소 정원의 축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다. 장애인보호시설의 확충 및 균형적 배치

현재 위탁 운영되는 장애인보호시설은 부산, 광주, 충북 3곳에 설치되어 있다. 올해 안에 3개소를 더 늘릴 예정이나, 절대수는 아직 부족하고 대상별, 지역별로도 불균형이 있다. 전체 성폭력 상담의 23.3%가 장애인 상담이고, 2012년 전체 보호시설 입소 인원 중 장애인의 비율은 33.1%에 달하며, 2012년 말 57.1%의 입소자가 장애인임을 볼 때,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 피해자의 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보호시설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아닌 다른 장애인보호시설로

연계하게 되거나, 정원 문제로 피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비장애인 대상 보호시설은 장애 종류에 따라 필요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을 수 있고, 종사자 또한 장애 특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운영 프로그램도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문제된다. 따라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장애인보호시설 종사자에게도 장애 특성, 장애인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한 심화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모른다는 이유로 장애인 피해자 입소를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라.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문제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친족성폭력 피해자에게 특화된 보호시설로서, 입소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처벌법상 ‘친족성폭력 피해자에 해당하는 19세 미만’을 자격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동거 친족이 성폭력 가해자인 때에만 입소가 가능하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55.1%가 19세 이하이고, 비장애인 입소자 중에서는 65.2%이며, 2012년 열림터 입소자 중 50.0%가 친족이 가해자임을 볼 때,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 친족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는 소수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여성가족부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설립 취지로서 가정으로 돌아갈 때 또 다른 피해가 반복될 위험을 방지하고 성년이 되어 자립하기 전까지 가정처럼 학교에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친족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19세 미만 피해자는 대부분 학교 교육을 필요로 하고, 친족에 의한 피해자라 하더라도 개인마다 갖고 있는 자원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4촌 이상이고 비동거 친족에 의한 피해자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소 대상에서 배제된다. 더구나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북, 경남 지역²⁰⁶⁾은 일반보호시설 및 장애인보호시설이 광역시 단위에만 4곳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시군구 지역에는 보호시설이 없어, 처벌법 상의 친족 성폭력 피

206)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경북은 창원, 경남은 김천에 설치되었다.

해 미성년자로 입소를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²⁰⁷⁾

마.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 강화

성폭력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 신고, 고소를 하지 않는 피해자일수록 신원정보 보호의 욕구가 더 크다. 그런데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신원정보가 전산화되어 집적됨으로써 신원정보 유출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보호시설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수집, 집적되는 문제이다.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대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산관리번호 역시 주민등록번호와 연동 관리되고 있으며, 전산관리번호에는 시설번호도 포함된다.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나타나듯 인터넷 망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는 상시적인 해킹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오프라인 자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수월한 접근가능성으로 인하여 외부 유출 위험이 높다.²⁰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에 노출될 수 있고, 보호시설의 위치가 드러나 가해자의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호시설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전산망을 통한 관리 방식의 위험을 방지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²⁰⁹⁾

207) 김정혜,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 관련 개정법 평가”,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 72~73면

208) 이입혜경,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 검토”,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름 외,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 문제점과 대안 검토를 위한 토론회, 2009, 22~25면

209) 한국성폭력상담소,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여성폭력 정책 제안서, 2012, 16~17면

바. 상담소의 신고 의무 규정 예외 마련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아침법 제34조 제2항, 보호법 제9조).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아침법 제67조 제4항). 신고의무는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기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기관의 평판 등을 위하여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제재를 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 같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까지 신고 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가해자 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친고죄 규정은 부당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반드시 즉각적인 가해자 처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사건 해결 지도’²¹⁰⁾는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① 사건의 정황을 파악한다. 피해 일시, 장소,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현재 직면한 위험 등을 정리한다. ②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가해자 처벌, 손해배상, 주변인들과의 관계 해결 등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생각한다. ③ 다양한 사건 해결 방법의 장단점을 검토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피해자의 여건에 맞는 방법을 찾아본다. ④ 사건 해결 방법을 선택한다. 다양한 사건 해결 방법 중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⑤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고 검토한다. 가해자, 소속 집단, 주변인 등에게 요구할 사항을 자세하게 정리한다. ⑥ 가해자 거부 시의 대응방법을 예상한다. ⑦ 선택한 해결 방법을 진행한다. ‘성폭력 사건 해결 지도’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해결 방법으로 가해자와의 개인적 해결 방법, 소속 공간에서의 집단적 해결 방법, 소속 공간에서의 제도적 해결 방법, 형사고소 및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지방노동사무소 등 정부기관에 구제신청

210)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 상담> 성폭력 사건 해결지도: (<http://www.sisters.or.kr/index.php/subpage/feminism/2>, 검색일: 2013.8.20.).

등을 예시하고 있다.

성폭력범죄가 곧바로 형사사법절차로 진입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 정리하지도 못한 채 절차에 수동적으로 휩쓸리게 되거나 가해자로부터의 또 다른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서가 아닌 상담소를 찾는 것은, 성폭력 사건의 성질을 규명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개인적인 해결을 도모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때문에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상담 접수와 동시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문제이다.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신고의무는 신고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상담을 제한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며, 내담자와 상담원 간의 신뢰관계를 약화시키고, 피해자가 상황을 정리할 기회를 박탈한다.²¹¹⁾ 따라서 현행 신고의무 규정 중에서 기관의 성격상 피해자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을 삭제하거나, 피해자가 신고 불원의 명시적 의사를 표한 경우 신고의무의 예외를 규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법률지원체계

가. 상담기관의 초기 법적 지원 활성화

친고죄 폐지로 인하여, 상담소에 접수된 사건 중 더 많은 사건이 법적 절차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인지 또는 신고 이전에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기관은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안내와 법적 지원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지원은 무료법률구조로 연계되거나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시작된다. 상담지원단계에서는 각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을 통하여 변호사의 간단한 상담을 받거나 상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게 된다. 상담원은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법적 절차의 의미, 신고에서 판결 이후에 이르는 절차 등을 설명하고 법률지원 연계 등을 담당한다.

211) 이미경 외, 성폭력 친고죄 피해실태 연구, 국회의원 유승희 의원실, 2012, 45-46면

이 같은 초기 단계의 법적 정보 제공은 피해자가 사건을 드러내고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초기 지원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도시 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 설치된 상담소에서도 무료법률상담을 확대,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담원이 법적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 진술 횟수 최소화

고소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형사절차의 진행에서 좀 더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수사에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도 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소한의 진술로 수사를 마치면서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욱 요청된다. 예컨대 처벌법은 미성년자,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는 때에는 진술녹화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비장애 성인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진술녹화를 원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 내실화

피해자는 검사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정자 중에서 특정인을 지명하여 국선변호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가 각 지역 검찰청별로 작성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지명하여 요청하였음에도 인근 지역의 변호사가 해당 검찰청의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가 선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특정인 지명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이다. 예정자 명부는 순번,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 정보, 소속 정도의 정보만을 담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특정인을 지명하려 하여도 사건 지원과 관련된 변호사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지명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시 피해자가 특정인을 지명하여 요청할 때에는 다른 검찰청의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변호사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관내 국선변호사 예정자의 성별, 사건 지원 경력 등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부의 양식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²¹²⁾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진술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범죄 입증에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치 있는 증거의 발견을 도울 수 있다. 증거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경우 피해자는 사건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 같은 사건이 친고죄 폐지 이후 증대된다면 진술과 증거의 보강을 지원하는 국선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진술 이전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고, 필요시 피해자와 사전면담을 한 다음 피해자 진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²¹³⁾

라. 공식적 피해배상 절차 활용 확대

친고죄 폐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점은 형사합의의 영역이다. 성폭력범죄에 있어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 배상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 비용을 요구하고, 피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를 통하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 측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통하여 민사소송보다는 수월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소 취소가 절차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피의자, 피고인은 형사합의를 통하여 처벌을 면제받을 수는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순전히 고소 취소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합의의 시도는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에게는 피해배상을 위한 다른 노력이 필요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비하여 피해자가 노력과 시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절차의 마련이 요청된다.²¹⁴⁾

212) 백미순 외,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연구, 법무부, 2013, 63~65면

213) 백미순 외,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연구, 법무부, 2013, 65~66면

214) 이미경 외, 성폭력 친고죄 피해실태 연구, 국회의원 유승희 의원실, 2012, 50면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배상명령제도가 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액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도 가능한 방법이지만 아직 그 활용도는 매우 낮다.²¹⁵⁾ 현재는 사기 사건으로서 사기의 액수가 뚜렷하거나 물적 손해액이 명확히 산정될 수 있는 사건 등 극소수의 사례에서만 배상명령 청구와 배상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물질적 손해보다는 정신적 손해의 영역이 더 넓고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배상명령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배상명령제도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배제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복잡한 절차와 비용 등의 문제로 피해 배상을 받기를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하며,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그 활용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배상명령제도의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배상명령 청구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로서 정착시킨다면 배상액의 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 신원 보호 제도 이행 모니터링

합의를 통한 고소 취소가 공소의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고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 요구는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의자, 피고인 측의 형사합의의 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때에는 형의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형의 감경을 받고자 하는 피의자, 피고인에게는 형사합의를 통한 피해자의 선처 탄원을 구하는 것이 여전히 유의미하다.

피의자, 피고인 측이 범행의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보다도 형의 감경을 위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공개, 협박, 폭행, 스토킹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합의 시도의 명분으로 피의자, 피고인 측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형사합의와 관련

215) 이희선,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1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63면 이하.

하여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와 법률지원의 강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처벌법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상의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규정을 성폭력 피해자에게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는 신고, 고소, 진술 등에서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 인적 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별도의 신원관리카드를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이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와 면담을 신청하면 검사는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면담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가 적용되어,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경우 소환장은 검사에게 송달하며,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비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같은 제도는 특정강력범죄, 마약류범죄 등 범죄 입증에 협력한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몇몇 특정범죄의 신고자 등에게 적용되던 것으로서 성폭력 피해자는 보복 우려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호가 제공되도록 개정된 것이다. 개정사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소, 보호시설, 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에 동 제도를 홍보하고, 수사기관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바. 고소 의사의 확인

과거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의 요건으로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요구하였다면, 앞으로는 고소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고소인과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소가 절차상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굳이 고소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고소를 요구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이지만, 그 결과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등 고소인이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사건 처리 시 고소의 의미를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피해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의료지원체계

가. 의료지원 정보 제공 확대 및 비밀보장 방안 마련

일단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중도 탈락 없이 법적 절차의 진행이 유지됨으로써 피해자가 의료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피해자가 사건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아 진료조차 포기하거나 의료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형사절차의 지속으로 인한 의료지원의 필요성 발견, 수사기관의 의료기관 연계 등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정보 제공이 확대되어야 하고, 피해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으로 지원의 누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한 조사를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 중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57.2%였는데, 35.7%는 무료로 치료를 받았으나 21.5%는 치료비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병원치료 실태²¹⁶⁾

(단위: %, 명)

병원치료 여부	신체적 증상		정신적 증상	
받지 않음	39.3	11	64.0	32
무료로 받음	35.7	10	20.0	10
유료로 받음	21.5	6	10.0	5
무응답	3.7	1	6.0	3
계	100.0	28	100.0	50

유료로 치료를 받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83.3%가 치료비 지원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조사 대상 피해자 중 신체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36.4%)보다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피해자(64.9%)가 훨씬 많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례는 더 적게 나타났다. 정신적 증상이 있다고 답한 피

216) 김재엽 외,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제2부, 여성가족부, 2010, 438면.

해자 중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30.0%에 불과하였고, 10.0%(5명)의 피해자는 유료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유료로 치료를 받은 이유는 치료비 지원이 되는 것을 몰랐다는 응답이 80.0%(4명), 치료 지원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0.0%(1명)였다.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신체적 증상에 대해서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가, 정신적 증상에 대해서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와 ‘약을 사먹으면 나올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지만, 성폭력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받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신체적 상처가 있었던 피해자 중에서는 17.6%가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질까봐 걱정되어서, 11.8%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창피해서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였고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피해자 중에서는 각각 14.9%, 17.0%가 같은 응답을 하였다.²¹⁷⁾

조사 대상자가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자라는 점에서 볼 때, 치료비 지원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유료로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은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였음을 보여준다. 의료지원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 또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 중소도시, 읍면지역일수록 병원 진료 및 치료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 사실이 피해자 주변에 알려지기 쉽고, 피해자도 이를 우려하여 병원에 접근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하면 타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의료비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심리치료 및 상담치료 지원 확대

의료지원의 연계는 신체적 상해의 치료뿐 아니라 심리치료와 상담치료 확대로도 이어져야 한다. 친고죄에 해당하였던 범죄 피해자로서 고소를 포기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상해의 정도는 더 적더

217) 김재엽 외,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제2부, 여성가족부, 2010, 436면 이하.

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는 여전히 유의미한데, 이는 신체적 상해와 달리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가 치료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적극적으로 초기에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직후 즉각 개입하여 PTSD 예방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²¹⁸⁾ 또한 성폭력으로 인하여 인공유산을 한 경우, 성폭력 자체에 대한 심리치료와 더불어 인공유산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도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의료비 지원은 충분히 확충되지 못하여, 정신적 피해보다는 신체적 피해에, 간접적 피해보다는 직접적 피해에 더 지원금이 집중되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기보다는 일부 피해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 우려되는 바, 정신적 피해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의료비 지원 증액으로 정신적 피해 치료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법의학적 증거 수집 능력 강화

피해자가 고소하려 하지 않는 사건의 수사가 중단 없이 진행된다는 친고죄 폐지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증거가 부족한 사건의 비중이 전보다 늘어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법의학적 증거 수집 능력의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청된다. 현재 전국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성폭력 응급키트를 보유하고 증거 수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응급키트의 사용이 능숙하지 않아 증거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증거 수집의 사례는 많은 편이지만 전담 의사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센터가 속해 있는 대형 병원의 여러 명의 의사가 돌아가면서 검사와 치료를 수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증거 수집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전담의료기관은 증거 수집 사례 자체가 적어서 일반 병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된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법의학적 검사 매뉴얼의 보급, 성폭력법의간호사

218) 오현숙, “정신보건현장에서 성폭력에 대한 접근과 인권이슈: 성폭력피해 생존자의 PTSD와 정신보건 개입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08, 135면.

(SANE) 육성, 보고서 양식 개발 등이 제안되고 있는 바²¹⁹⁾ 검토가 필요하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담 의사 제도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라.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내실화

전국에 330곳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성폭력 피해자 치료, 증거 수집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문제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전담병원이 전담의료기관 지정 여부조차 모르고 있거나,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업무 담당자가 누구인지, 의료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등 의료비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례, 담당자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거나 의료지원 여부의 결정에서 성폭력에 대한 담당자의 부당한 통념이 개입되어 지원이 거부되었던 사례, 심지어는 성폭력 피해에 대해 ‘잘 모른다’며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거부한 사례, 성폭력 피해를 이유로 한 인공유산이 합법임을 알지 못하고, 성폭력 상담소라는 기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던 사례²²⁰⁾ 등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위한 별도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개된 진료, 상담 환경에서 성폭력 피해 상황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하여야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상담소가 연계하는 다른 병원에서 재진료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²²¹⁾

현재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의료지원을 주로 담당하는 의사나 전담의료기관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 않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의료진의 개인적 관심이나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에만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의 질을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219) 강은영 외,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90~91면

220) 이미경 외,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2012, 54면

221) 이미경 외,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2012, 141면

전담의료기관이 지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의료기관 지정이나 지정 이후 의료지원 체계의 마련 등으로 의료기관이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는 전담의료기관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태를 관리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에 미달할 때에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담당자 및 담당 의료진에게 기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성폭력응급키트 사용 및 증거 수집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사 또는 병원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 이수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마. 의료진의 법정증언지원

성폭력 피해자 진료에 대한 의사 의견조사를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진료 시 예상되는 어려움 중에서 ‘성폭력 피해사실 증언을 위해 법정출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항목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 집단 간의 차이가 큰 편이었는데, 치료 경험이 있는 의사는 오히려 다른 항목들보다도 법정출두 가능성 항목의 어려움 정도를 더 낮게 평가한 반면, 치료 경험이 없는 의사는 다른 항목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어, 치료 후 법정 증언 가능성의 문제에 실제보다 과장된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²²²⁾ 이 같은 우려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 거부나 증언 거부로 이어질 수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의사, 간호사 등의 법정증언 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²²³⁾ 성폭력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의 경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녹화나 음성녹음, 진술서, 평가서나 진단서 등으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진

222) 이명신 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경남지역 의사의 성폭력에 대한 태도, 진료실태와 의료지원 필요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9, 281면.

223) 장필화 외,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성폭력 2차 피해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158면.

료에 뒤따르는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²²⁴⁾ 더불어 전담의료기관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효적 제재 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²²⁵⁾

바. 인공유산 의료지원의 실효성 확보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시술을 한 병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²²⁶⁾ 산부인과에서 낙태시술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에 대한 전담의료기관에서의 낙태도 더욱 어려워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낙태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고소를 먼저 할 것을 검사의 지휘가 있어야만 낙태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였고, 낙태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2~3주 이상이 소요되어 그 사이 임신주수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임신주수가 높아 긴급한 낙태 시술이 필요한 피해자는 통합지원센터에서 민간 상담소로 의료지원을 연계하는 경우마저 있다.

그러다보니 고소를 원하지 않거나 낙태 지원 여부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피해자는 의료비 지원을 포기하고 자비로 일반 의료기관에서 낙태시술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2010년 이후 낙태시술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여 경제적 부담이 크고, 합법적인 낙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현금으로만 지불할 것을 요구하거나 진료기록을 아예 남기지 않아 사후 의료비 지원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²²⁷⁾

따라서 전담의료기관에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에 대한 인공유산이 합법임을 유지시키고, 시술 시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또한 인공

224) 이명신 외, 위의 논문, 287면.

225) 장필화 외,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성폭력 2차 피해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2003년도 법무부 용역과제),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158면.

226) 국민일보 쿠키뉴스, 프로라이프 의사회, 불법 낙태시술 병원 3곳 고발, 2010.2.3.: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3370444&code=11131700>>, 검색일: 2013.8.20.

227) 이미경 외,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2012, 53~55면 이하.

유산 수술비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통제하기 위하여 전담의료기관의 인공유산 수술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친고죄 폐지 이후 낙태 시술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고소를 요구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에 의한 임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적 절차가 없고, 확인의 부담과 책임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등 의료비 지원을 결정하는 기관과 시술 병원, 담당 의사에게 돌아간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소 또는 신고를 선행 요건으로 요구하는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을 것이다. 책임 부담을 안고 있는 한 지원기관에서는 더 까다로운 절차를 마련하고 성폭력 여부 확인을 위해 더 긴 기간이 소요되며, 병원은 입증 곤란을 이유로 시술을 거부하거나 위험부담의 대가로서 고액의 수술비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여 지원기관 및 병원이 위험부담을 이유로 피해자 지원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²²⁸⁾ 이때 확인 절차는 수일 이내에 종료될 수 있는 것이어서 낙태 시술의 위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사. 전담의료기관의 인공유산 시술 여부 확인

성폭력 피해를 이유로 한 낙태시술의 경우, 의료진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시술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의료진의 이와 같은 신념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지만, 낙태시술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성폭력 피해자 치료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의사의 시술 거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덕적 비난으로 작용하며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피해자는 합법적으로 낙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시술을 받지 못하고 낙태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그 사이 임신기간과 시술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228) 이미경 외(2012)의 연구는 성폭력 피해 여부 판단의 절차로서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라는 임부의 진술을 근거로 시술한 경우 의료진을 처벌하지 않는 방안, 낙태수술 여부 및 기타 지원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위원회를 소집, 운영하는 방안, 임부가 성폭력 피해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사 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지원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경 외,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2012, 133면 이하.

따라서 전담의료기관 지정 시 낙태시술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시술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는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미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낙태시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전담의료기관 목록에 표시하는 등 연계기관에서 이 같은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연계 후 시술이 불가하여 다시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아. 의료비 지원 예산 확대

의료비 지원 대상 진료과목이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하여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1인당 지원금의 한도액 및 심의 절차 등이 문제로 제기되자, 최근 의료비 지원의 한도액과 심의 요건, 진료과목의 제한 등이 폐지되었다. 또한 지원 대상을 피해자 본인, 보호자에서 가족까지 넓히고 의료비 지원 예산도 2012년 10억 원에서 2013년 15억 원, 2017년에는 30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²²⁹⁾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동 계획에서 여성가족부는 지원 규모를 2012년은 1만 명, 2013년은 1만 5천 명, 2017년은 2만 8천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를 1인당 지원금으로 환산하면 2012, 2013년 각 10만 원, 2017년 10만 7,142원이다. 예산 총액은 계속하여 상향할 것이지만, 1인당 지원금의 상향 계획은 없고, 1인당 평균 지원금이 116,481원, 142,080원이었던 2009, 2010년에 비하면 오히려 평균 지원금을 더 낮게 추산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5-2 성폭력 피해자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원액²³⁰⁾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치료인원(명)	5,217	7,340	8,376	8,834	8,460
의료비 지원 실적행액(백만원)	536	552	836	1,029	1,202
1인당 평균 지원액(원)	102,741	75,204	99,808	116,481	142,080

229) 국가정책조정회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안, 2013.6.21., 13면

230) 여성가족부, 성폭력 방지: 사업개요, 성폭력 방지 인프라 확충, <http://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2_01d.jsp>, 검색일: 2013.7.18. 의료비 지원 실적행액은 여성가족부 내부자료로, 다음 기사에서 재인용: 조주은,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주소는?: 피해자특성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해야,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11.11.4.

그러나 심한 외상을 입은 피해자의 경우는 응급 수술비만 300~500만 원이 소요 되고,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²³¹⁾ 낙태 시술 비용이 높아져 30~600만원으로 그 폭이 크고, 성폭력 피해자 심리치료가 1회당 8~1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1인당 지원 예산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의료비를 집행하는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등에서는 현 지원금이 ‘분기당 4~5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거나 ‘3/4분기에 들어서면 이미 예산이 모두 소진된다’고 평가하고 있다.²³²⁾ 이 같은 상황에서 지원 범위와 대상의 확대, 한도액 및 심의 절차 폐지 등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원이 집중되면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인원수는 줄어들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따라서 예산 총액을 꾸준히 상향하되, 예산 편성에서 1인당 예산 지원금을 높여 필요액을 예측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4. 통합지원체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확충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여러 기관을 전전하면서 반복적으로 피해를 진술하지 않고도 한 곳에서 신속하게 수사와 증거 수집, 상담, 치료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는 이념 하에 설립되었다. 하지만 원스톱지원센터의 통합적 지원은 피해자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는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다. 응급치료, 일시보호, 응급상담 등은 기관 내에서 후속 조치로 연결되지 않고, 초기 개입 이후에는 다른 기관으로 피해자를 연계하여야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해바라기아동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등 지원을 좀더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아동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사기능이 없어 원스톱지원센터나 경찰서로 피해자 진술을 연계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

231) 일례로 2012년 발생한 나주 초등학교 납치 성폭행 사건에서도 피해 당시 7세였던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상당한 치료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나, 피해자의 가족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 치료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약속된 지방자치단체와 지원단체의 지원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확실할 수 없고, 의료비 지원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동아닷컴, “나주 성폭행 피해아동 치료비 어찌나 ‘막막’”, 2012년 9월 3일자.

232) 동아닷컴, 나주 성폭행 피해아동 치료비 어찌나 ‘막막’, 2012.9.3.; 주간경향 제993호, 성범죄 최선의 대책은 방임 아동 잘 돌보는 것, 2012.9.18.

었다. 때문에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수사 기능을 통합한 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서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가 구상되었고, 전국에 7개 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현재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서울, 부산, 울산, 춘천, 강릉, 목포, 포항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과 같이 통합지원센터가 여러 종류 설치되어 있는 지역²³³⁾에서는 유사한 기관들의 공존으로 혼동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는 반면,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드러난다.²³⁴⁾ 따라서 장기적 과제로서 수사과와 기타 지원을 통합하는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와 같은 방식의 확대가 요청된다.

한편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통합지원센터의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지적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하므로 지적장애인은 성인이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적 장애만 있는 경우에는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연령대와 장애 종류를 불문하는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도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가족지원 등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가칭)폭력피해 여성장애인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²³⁵⁾ ‘(가칭)폭력피해 여성장애인 통합지원센터’는 상담지원팀, 보호지원팀, 교육지원팀, 인식개선팀, 의료·법률팀, 지적장애인 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위기개입 및 피해 상담, 사례 관리, 긴급연락망 가동, 보호시설 및 프로그램 연계, 피해자 및 가해자 교육, 수사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모델이다.

장기적으로는 여성장애인 피해자를 전담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고려하여볼 수 있을 것이나,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도 전국에 7개소뿐인 상황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현존하는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설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233) 서울에는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2곳, 해바라기아동센터 1곳,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1곳으로 총 4개소의 통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234)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성남, 충주, 전주, 진주에,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서울 2곳, 인천 2곳,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의정부, 청주, 천안, 전주, 순천, 안동, 창원, 제주시에 설치되어 있다.

235) 김정희 외,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상담소 운영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121면 이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각 지역의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수는 적지만 전국의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서 장애인보호시설 등 성폭력 피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피해자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안이 요청된다.

제2절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성폭력 대응전달체계의 지역사회적 기능 확대를 위한 방안

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활성화

지역 내 관련기관 간의 공조 활성화로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상당히 여러 종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성폭력 예방사업 등 사업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초지역연대에 설치된 사례관리팀은 폭력위기 및 피해 아동·여성에 대한 개별 사안의 개입과 관리를 위한 단위인데, 분기별 1회 정도의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필요시 협력하는 방식이다. 폭력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지만, 분기별로 개최되는 회의는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성격을 갖는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데 적합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연대기구는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형식적인 기구에 그치게 될 위험이 있다. 피해자 지원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긴급한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필요를 어느 기관과 주로 논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지 안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사안에 대응하는 방식은 각 기관의 책임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어느 한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상

태가 아닌 피해자일수록 전담 기관과 담당자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연대 참여 기관 중 여성·아동폭력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시설을 성폭력 사례관리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례 회의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긴급한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거점기관에 전담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연대 담당자와 사례관리팀 담당자를 구분 배정함으로써²³⁶⁾ 사례관리와 피해자 지원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연대와 사례관리팀의 활동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피해자 지원의 좋은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기초지역연대의 피해자 지원 사례를 기초지역연대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지역연대 내 기초지역연대 간, 광역지역연대 간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선례를 발굴하도록 한다.

나. 일반 의료기관의 연계 능력 강화

의료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처음 인지한 경우, 피해자에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연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²³⁷⁾ 지역사회 내의 피해자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는 일반 의료기관에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언제나 전담의료기관만을 방문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전담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부인과, 외과 등 성폭력 피해자가 처음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진료과는 전담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인근 지역의 피해자 지원기관 정보를 보유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36) 서해정 외,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1, 224면

237) 이명신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자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연계 경험도 낮다. 성폭력 피해자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의 피해자 지원 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성폭력 상담소가 80.8%로 가장 높았던 반면, 여성긴급전화 1366은 42.3%, 원스톱지원센터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각각 46.2%로 절반 이하의 인지도를 나타냈다. 이명신 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경남지역 의사의 성폭력에 대한 태도, 진료실태와 의료지원 필요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9, 277~278, 288면

2. 피해발생시 조기개입과 치료를 위한 전달체계 효율화방안

가. 여성긴급전화 1366의 위기개입 및 연계 서비스 강화

여성긴급전화 1366은 위기개입 서비스로서 위기상담과 긴급출동, 상담, 의료, 법률지원 연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역할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체계의 개입 시점을 앞당기고 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여성긴급전화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과는 구분되는 위기개입과 연계 역할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으로서 여성긴급전화 1366은 현장상담원을 두고 현장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에도 위기 상황이 접수되면 경찰 출동을 요청하거나, 또는 상담원이 직접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연계하거나 여성긴급전화 지역 센터에 설치된 긴급피난처에서 일시보호를 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상담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직접 출동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매우 적다가, 2009년부터 현장상담 전담 인력이 구성되어 긴급 출동이 활성화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장상담원은 보호시설, 병원, 전문기관, 경찰 등에 연계, 귀가 동행, 긴급피난처 제공, 방문상담, 연고자 연계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현장상담원이 2인 1조로 또는 경찰과 동행하여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 종료된 이후의 출동이라면 지원의 성격에 따라서는 경찰 동행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언제나 경찰이 동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기가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현장상담원이 잘못 판단한 상황에서는 상담원조차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때에는 위험에 처하게 된 상담원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더 큰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상담원의 안전과 출동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도 긴급출동, 피해자 동행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역 내 여성긴급전화 1366의 현장상담원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²³⁸⁾

나. 여성긴급전화 1366 홍보 강화

위기개입 체계로서 여성긴급전화 1366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잠재적인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 기관의 존재와 역할, 전화번호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한 인지도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비해 낮다.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한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여성 중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 경험률은 14.3%(11명)에 그쳤는데, 1366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1366의 존재를 몰라서'가 70.7%(9명)로 가장 많았다.²³⁹⁾

상담소, 보호시설의 존재에 대한 인지도가 여성긴급전화에 비하여 더 높더라도 피해자는 개별 상담소, 보호시설의 정보나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다. 긴급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또는 주변의 도움을 얻어 지원 기관을 탐색하여 볼 수 있을 것이나, 여성긴급전화의 주요 개입 지점인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여성긴급전화는 국번 없이 전국 단일 번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기억하기 쉽고,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야간,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대처가 가능하며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관련 기관을 연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대응을 빠짐없이 확보하기 위하여 1366의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수사기관의 연계 강화

과거에는 친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거부하거나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상존하였고 실제로도 그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 의지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인지에 소극적이거나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심지어는 먼저

238) 변희순 외, 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의 효과적 통합·연계 방안 연구, 여성부, 2009, 57면

239) 김재엽 외,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제2부, 여성가족부, 2010, 450-451면

피해자와 피의자 쌍방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친고죄 폐지 이후에는 피해자의 고소 거부나 고소 취소로 인한 수사 진행 불능의 우려가 사라지게 되고,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게 된다. 즉 피해자가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해서 진술 요청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직접 사건을 신고, 고소한 피해자에 비하여 상담소나 의료기관 등을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수사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나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제3의 지원기관으로 피해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지원 연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등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일선 경찰서에서 성폭력 범죄 수사 전담팀이 아닌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받게 될 것이므로, 통합지원센터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일수록 타 기관 연계에 대한 경찰의 정보 제공 능력 강화가 더욱 요청된다.

다만 수사기관은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필요 파악과 개별적 지원의 연계를 충분히 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수사기관에는 피해자 권리 고지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피해자 권리 고지 시 피해자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상담소, 보호시설, 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경미한 성폭력 사건도 통합지원센터로 연계되어 피해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상담기관 또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사건 직후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지원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성폭력 전담경찰관이 아닌 수사담당자가 피해자의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는 최종적 판단자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를 갖추지 못한

수사담당자가 쉽사리 지원 필요성을 간과하고, 형식적인 정보 제공조차 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는 사건의 '경미함'의 정도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연계가 이루어진 후에도 피해자가 지원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지원은 당연히 중단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관련 기관에 연계하고, 해당 기관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지원의 필요성, 가능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원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역할 강화 및 지원 능력 표준화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역할을 보장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상담소는 통합지원센터와 달리 상담지원을 중심으로 하므로 수사, 의료, 법률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은 떨어진다. 그러나 상담소는 피해 상담뿐 아니라 상담 접수 시부터 수사, 재판이 끝난 뒤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지원에 있어 다종의 지원을 확보하고 연계하는 일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수사 기능을 통합한 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통합지원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발견, 제공하고 연계, 의뢰하며 조정하는 피해자 지원의 거점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자원 확보, 연계 등에 있어 상담소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소마다 성격이 다르고 제공하는 지원의 종류와 전문성의 정도 등에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종사자 교육, 피해자 지원 사례 공유 등 상담소의 피해자 지원 및 연계를 어느 정도 표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제3절 형사절차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기존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에 피해자보호와 권리에 관한 많은 규정들이 있었으나 범위가 상당 부분 제한되거나, 권고적 형태의 규정들이 많았다.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로 될 경우 많은 사안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절차에 관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미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리의 주체로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절차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정보권, 공판절차 참여권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는 성폭력범죄 그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시 성폭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형사절차를 좀더 체계화 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

1.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가. 피해자국선변호인의 역할 강화

피해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정자 중에서 특정인을 지명하여 국선변호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가 각 지역 검찰청별로 작성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지명하여 요청하였음에도 인근 지역의 변호사가 해당 검찰청의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가 선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²⁴⁰⁾

특정인 지명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이다. 예정자 명부는 순번,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 정보, 소속 정도의 정보만을 담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특정인을 지명하려 하여도 사건 지원과 관련된 변호사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지명에 어려움을 겪는다. 지정도 최초의 진술 녹화 이

240) 김정혜,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제도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 피해자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성과평가와 제도적 발전방향 심포지엄,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2013, 53면.

후에 연락이 되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초기진술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법률조력인이 피해자에게 절차의 진행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자가 준비해야 하는 점들에 대하여 조언하기 위해서는 절차진행에 대한 기본정보들이 필요하다. 법률조력인이 수사 및 재판진행과 관련해서 검찰송치여부, 기소여부, 피해자조사일정, 신고여부, 판결확정 여부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본사항이 통지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사건번호를 알아내는데 상당한 수고로움이 있다. 경찰에 송치번호와 피의자 이름을 알아야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하고 선정서를 팩스로 넣은 후에야 검찰청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있다. 법원의 경우에도 법원 민원실을 통해서 사건과에 전화를 하고 팩스를 넣어야 겨우 법원 사건번호를 알 수 있다. 피고인 국선변호사의 경우에 준하여 피해자국선변호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건처리절차의 간편화, 신속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은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통지를 해주지 않고, 2013년부터 검찰에서도 사건처리에 대한 통지를 해주고 있으나, 성폭력사건을 맡게 된 검사 대부분이 이러한 절차를 몰라 여전히 통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법원의 경우도 대법원 규칙의 개정으로 기일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기일통지를 제대로 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사 및 공판절차 출석권이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출석권이 보장하는 권한의 범위가 모호하고 실제 공판 출석시 자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열람등사의 허용범위가 좁아 제대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²⁴¹⁾

따라서 법률조력인의 역할 확대 및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경우 피해자가 특정인을 지명하여 요청할 때에는 다른 검찰청의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변호사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관내 국선변호사 예정자의 성별, 사건 지원 경력 등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부의 양식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²⁴²⁾

241) 김정혜, 앞의 글, 53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진술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해자가 범죄 입증에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치 있는 증거의 발견을 도울 수 있다. 증거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경우 피해자는 사건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친고죄 폐지 이후 이러한 현상이 보다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진술과 증거의 보강을 지원하는 국선변호사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²⁴³⁾ 따라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진술 이전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고, 필요시 피해자와 사전 면담을 한 다음 피해자 진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신뢰관계인 동석제도의 활성화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는 동석을 통하여 피해청소년의 진술능력을 최대한 높이는 동시에 주변사람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진술에 왜곡이나 과장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도 함께 취하여 진술을 신빙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원을 오가며 반복적으로 피해당시 상황을 진술해야 하는 문제를 줄이고자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 역할을 한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상당 부분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보이나²⁴⁴⁾, 신뢰관계인은 신문 또는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인을 보조하고 증인의 불안감이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휴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지, 증인신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등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또한 법률조력인과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국선변호인이 신뢰관계인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해청소년의 경우 성폭력 피해내용에 대해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인 진술내용에 대한 열람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세우기 않기 위

242) 백미순 외,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연구, 법무부, 2013, 63~65면.

243) 김이경, “법률조력인제도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피해자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성과평가와 제도적 발전방향 심포지엄 토론문,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2013, 103면; 백미순 외,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연구, 법무부, 2013, 65~66면.

244) 윤덕경 외, 아동성폭력 재범방지대책 및 아동보호대책, 법무부/여성정책연구원, 2008, 91면.

해 ONE-STOP지원센터에서는 법률조력인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해주길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²⁴⁵⁾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어 피해청소년의 보호뿐만 아니라 실제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을 주므로 신뢰관계인 동석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진술단계에서 법률조력인이 신뢰관계인을 대신하는 관행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법률조력인과 신뢰관계인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신뢰관계인이 증인으로 나서는 피해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법정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법에서 신뢰관계인의 숫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실무상 신뢰관계인을 1인으로 제한하고 비공개 증인신문서 1인 외의 신뢰관계인을 일반방청인과 마찬가지로 퇴정시키는 관행²⁴⁶⁾은 자제되어야 한다.

다. 범죄피해자의 권리고지 규정 신설

현행 형사소송법, 성폭력처벌법, 아동법 등에는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률조력인제도, 비밀누설금지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무수히 많은 규정이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는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절차에서 어떠한 정보를 통지받게 되는지, 형사사법기관이나 관련단체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자에게 권리고지를 하게 할 필요가 있다.²⁴⁷⁾ 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권리 고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245) 박옥숙, “법률조력인과 함께한 1년”, 피해자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성과평가와 제도적 발전방향 심포지엄 토론문,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2013, 88면.

246) 이경환, “성폭력피해자 증인보호를 위한 재판 가이드북안”,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와 지원방안 토론회 자료집, 국회의원 신의진 의원실, 2012, 150-151면.

247) 이희경,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 방안”, 동아법학 제5권 제3호, 2012, 131-132면.

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가이드라인 마련

현행 수사지침이나 예규에 따라 피해자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찰과 검찰의 공조단계에서 중복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증거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우려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신변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갖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중복수사나 증거보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피해자보호를 위해 성폭력범죄 피해를 검찰 및 경찰이 인지하여 수사절차를 개시한 경우 나중에 범죄피해자가 범죄자에 대한 형사소추를 원치 않거나 소송절차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예컨대 형사고발을 철회하든가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에 의해 이미 진행된 절차를 좌우할 수 없게 되는 점에서 범죄피해자 본인이든 제3자이든 형사고소·고발이 범죄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범죄피해자와 함께 상담시설을 찾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배려하고 있다. 아직 이러한 고려들로 인하여 형사고발을 통한 형사소추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익명증거보전 절차를 활용하고 있는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협조거부시의 조치방안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가 됨으로 인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수사를 지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해자 의사를 받아들여 간략하게 각하 등 처분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고소 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수사를 받은 후 고소를 취소하여 더 이상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 인지로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피해자가 조사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친고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 없이는 공소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경우 조사 없이 기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

해자 의사에 반하여 계속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설득을 해야 하는지, 그냥 각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확대를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계속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력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간의 은밀한 상황에 대한 문제이고 이를 쟁점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피해자의 적극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친고죄 폐지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재판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

범죄의 발생으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가 1차 피해라면 2차 피해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이와 관계된 사법기관 등의 부정적 반응에 의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말한다. 즉, 성폭력 피해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외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의해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²⁴⁸⁾ 피해자의 2차 피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법적 해결의지를 약화시키고 법과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 특히 재판절차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로 인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2013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의 시행으로 신변안전 조치의 범위가 확대되어 수사기관이 수사단계에서도 일정한 신변조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신변보호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법원에 보호처분을 신청하여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2011년 고려대 의대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학교로 와서 동료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몰아가는 설문을 진행하여 사생활과

248) 이미경,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권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8면.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사례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따라서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즉각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가. 공판절차에서 부적절한 신문 내용의 제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장이 중복된 신문, 소송에 관계없는 소송에 대해 소송관계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제299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6조). 형사소송규칙에서도 위협적이나 모욕적인 신문과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을 금지하고 있고, 재판장이 유도신문을 제한할 수 있으며,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의 경우에도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74조 내지 제77조).

이와 같이 부적절한 신문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관련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실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성폭력범죄피해자가 부적절한 신문 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²⁴⁹⁾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단계에서 법정진술을 위해 증인으로 법정에서 출석하게 하여 성폭력 피해사실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는 현 재판절차에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는 2차 피해가 더욱더 크다. 이는 재판부에서 부적절한 증인신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측면도 있으나, 부적절한 신문에 대한 추상적인 규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신문사항이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조항인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는 질문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신문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식에 의존하기 보다

249) 이경환, “성폭력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와 실제적 진실발견의 조화”, 성폭력처벌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2011, 31-56면.

는 검사 또는 피해자 본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이에 대하여 재판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신문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또한 법률조력인과 신뢰 관계인이 피해자의 보조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부적절한 증인신문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판 실무예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 관련재판에서 부적절한 신문의 내용을 유형화하여 부적절한 신문인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²⁵⁰⁾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지 여부, 중복신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항인지 여부,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부적절한 신문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정에서의 신문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적접촉에 관련된 증거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외상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등, 아동피해자의 경우 과거 성경험이 있다는 등을 유도하는 신문의 경우 부적절한 신문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나.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위한 보호처분 규정 신설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행 아동법에서는 성범죄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위해 배제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분리나 퇴거조치, 피해자의 주거나 학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이나 우편을 이용한 피해자 접촉행위 금지 등을 가해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동법 제41조).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행위의 제한,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수감명령·보호관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250) 정지원은 최소진술의 원칙, 사생활 보호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 배려의 원칙, 합의강요 금지의 원칙 등 5가지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증인신문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규 및 규칙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정지원, “증인신문 제한에 관한 입법례”, 젠더법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사건의 재판절차 개선방안, 법원 젠더법연구회, 2011, 100-104면).

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등을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아동청소년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에서 수사 및 재판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원을 통한 접근금지명령 등 다양한 보호처분을 활용하는 것과는 달리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처분 관련 규정이 없다. 따라서 아청법 제41조 및 제42조나 다른 법률에서 마련되어 있는 보호처분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성폭력처벌법에도 신설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긴급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피해자의 인적사항 비공개를 위한 노력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신원정보 보호는 성폭력범죄피해자로부터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해 실제적 진실발견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친고죄 폐지로 진술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도 조사 및 심리에 협조할 의무를 지는 바 신원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언론이나 보도자료를 통한 피해자 인적사항 유출뿐만 아니라 공소장이나 판결문에서의 피해자 익명조치 작업,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가명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3조).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 수사의 경우에도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조서 등의 서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적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단계에서 신문 전과정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조서 서류 등에서 비공개된다 하더라도 실제 공판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경우 보복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라. 양형기준에 대한 재검토

친고죄 폐지로 인해 가해자의 합의 중용이 상당수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양형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감경요소인 만큼 가해자의 합의중용은 계속될 여지가 있다. 현재 가해자의 합의시도 중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량을 높일 수는 있으나 이것이 피해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알리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알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하다. 따라서 친고죄 폐지 이후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3. 피해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방안

국가와 피고인을 양당사자로 하는 형사소송 구조에서 피해자는 검사측 증인으로 특별희생을 강요당하는 구조 하에 있다.²⁵¹⁾ 그러나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갈등 당사자이고 형사사법체계는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 등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폭력과 관련하여 여러 규정들이 신설되면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으로, 공소제기 이후에 증인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²⁵²⁾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유도 신문 등에 따라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한 인격의 주체로서 형사절차를 통해 자신의 피해경험을 적절한 방식으로 털어놓고 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251) 이호중, 앞의 논문, 248면

252) 원혜옥, “범죄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0년도 한국피해자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피해자학회, 2010, 53면.

가. 피해자의 진술권 범위 확대

헌행법상 피해자 진술권은 공판단계에서 증인신문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청소년은 피해자진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개진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판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자신이 피해를 당했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피해자진술권은 공판단계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공판단계에까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권을 통해 적정한 양형과 피해감정 회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행법과 같이 ‘증인신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해자진술권은 피해 이후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의 고통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인데, 피고인의 유무죄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 증인신문을 통해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의 방어권과의 조화를 위해 별도의 절차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의견이 양형에 적절히 반영되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경우 사법기관의 신뢰가 이루어지므로 양형단계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도 허용되어야 한다. 현재 결정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헌법 제27조 제5항의 피해자 진술권은 적절하고 공정한 재판뿐만 아니라 법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²⁵³⁾ 특히 성폭력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검사와 별도로 실제적 진실을 밝히고 적정한 형벌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권은 피해자가 양형절차에서 피해결과에 대한 진술(VIS: Victim Impact Statement)과 양형에 대한 의견 진술(VSO: Victim Statement Opinion)을 두어 피해자의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검사가 제기하는 공소절차에서 피해자가 보조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진술하는 부대공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어 도입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253) 헌법재판소 1989.4.17.선고 88헌마3 결정.

현행법상 진술권을 강화하여 성폭력피해자가 주체로서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²⁵⁴⁾

피해자의 진술권은 공판정에서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피해청소년이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청소년의 언어 및 인지능력, 기억력의 유지기간 등을 감안할 때 실제적 진실 발견을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청소년에 대한 진술권은 공판단계에서만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피해배상명령제도의 적극 활용

그동안 친고죄는 가해자의 합의시도를 통해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피해자로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친고죄 폐지로 인해 피해배상의 방식이 상당부분 제한되었고 할 수 있다.

공식적 절차를 통한 피해배상방식이 필요하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소송의 비용과 시간,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현재 피해배상명령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형사절차와 손해배상 절차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254) 류병관, “범죄피해자 진술권의 성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202면; 원혜옥, “아동성폭행 피해자의 진술권”, 인권보호 심포지엄 『아동성폭력피해자 보호방안』, 법무부, 2009, 10면.

가. 국내문헌

- 강은영 외,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응모델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강은영·김한균,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체계 점검, 보건복지가족부, 2009.
- 국가정책조정회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안, 2013.6.21.
- 김보현, “일본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Ⅲ-3) 제26집, 법무연수원, 2011.
- 김선복, “친고죄에 대한 고찰”, 형사법연구 제10호, 한국형사법학회, 1998.
- 김성룡, “독일 제2차 피해자권리개혁법의 주요내용·쟁점을 통해 본 국내 피해자 보호 관련 논의의 합리적 방향”,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 김용세·윤민석, “개정 형사소송법의 범죄피해자 보호규정”,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
- 김이경, “법률조력인제도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피해자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성과평가와 제도적 발전방향 심포지엄 토론문,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2013.
- 김재엽 외,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0.
- 김정혜,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제도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 피해자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성과평가와 제도적 발전방향 심포지엄,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2013.
- 김정혜,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 관련 개정법 평가”,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 72~

73면.

- 김정희 외,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상담소 운영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 도미향·이용복,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논총 제15집 제2권, 한국복지행정학회, 2005.
- 류병관, “범죄피해자 진술권의 성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 박옥숙, “법률조력인과 함께한 1년”, 피해자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성과평가와 제도적 발전방향 심포지엄 토론문,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2013.
- 박찬걸, “성폭력범죄 대처를 위한 최근(2012.12.18.)의 개정형법에 대한 검토”, 한양법학 제24권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3.
- 백미순 외,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연구, 법무부, 2013.
- 백미순·허복옥, “성폭력정책, 생존자에게 듣는다: 성폭력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20주년기념 토론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 변화순 외, 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의 효과적 통합·연계 방안 연구, 여성부, 2009.
- 서보학,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8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서해정 외,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1.
- 양경규,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2년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2103.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13.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2013년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사업안내, 2013.
- 여성가족부, 2010 전국성폭력실태조사, 2011.
-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2012년 사업보고서, 2013
-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2

- 오현숙, “정신보건현장에서 성폭력에 대한 접근과 인권이슈: 성폭력피해 생존자의 PTSD와 정신보건 개입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08.
- 원혜옥, “범죄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0년도 한국피해자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피해자학회, 2010.
- 원혜옥, “아동성폭행 피해자의 진술권”, 인권보호 심포지엄 「아동성폭력피해자 보호방안」, 법무부, 2009.
- 유숙영,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적용에 대한 검토”, 한국여성학 제19권 제1호, 한국여성학회, 2003.
- 윤덕경 외, 아동성폭력 재범방지대책 및 아동보호대책, 법무부/여성정책연구원, 2008.
- 윤상민,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폭력상담소의 지원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 이경환, “성폭력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와 실제적 진실발견의 조화”, 성폭력 처벌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2011.
- 이경환, “성폭력피해자 증인보호를 위한 재판 가이드북안”,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와 지원방안 토론회 자료집, 국회의원 신의진 의원실, 2012.
- 이동주, 형사절차에 있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이명신 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경남지역 의사의 성폭력에 대한 태도, 진료실태와 의료지원 필요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9.
- 이미경 외,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2012.
- 이미경, “성폭력 관련법 현안과제와 대안”,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법무부, 2008.
- 이미경,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권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상돈, 형법학, 법문사, 1999.
- 이승호, “강제적 성범죄에 대한 효율적 형사사법 집행을 위한 제언”, 형사판례연구 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0.
- 이임혜경,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 검토”,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외,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 문제점과 대안 검토를 위한 토론회, 2009.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2.
- 이재상, 형법개정 공청회자료집 주제발표요지, 법무부, 1992.
- 이호중,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론”, 성폭력 법정에 서다-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법담론, 한국성폭력상담소, 푸른사상, 2007.
- 이희경,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 방안”, 동아법학 제5권 제3호, 2012.
- 이희선,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1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 임 용, 형법각론, 법문사, 2012.
- 임 희,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장필화 외,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성폭력 2차 피해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 전보경, “성폭력범죄 관련법상 친고죄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제56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정지원, “증인신문 제한에 관한 입법례”, 젠더법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사건의 재판절차 개선방안, 법원 젠더법연구회, 2011.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0년 상담통계, 2011.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년 제22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자료집, 2013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친고죄 피해실태 연구, 국회의원 유승희 의원실, 2012.
- 한국성폭력상담소,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여성폭력 정책 제안서, 2012.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위탁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상반기 실무자 워크숍 자료집: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 시행 이후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 법적 지원 모색, 2013.
- 한석현·이재일, “성범죄 처벌법규의 체계적 정비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제8호, 국회입법조사처, 2011.
- 한인섭, 형법개정공청회 자료집 토론요지, 법무부, 1992.
- 형법개정연구회, 형사법개정연구(IV): 형법각칙 개정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나. 국외문헌

-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Guide on Investigating Serious Sexual Offences, ACPO Centrex, 2005.
- Criminal Justice System, The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Office for Criminal Justice Reform, 2005.
- Chris Lewis, Tom Ellis, “Victim Protection in the United Kingdom: Policies, Practice and the Law”, In Zhang, H. W. (Ed.), Studies on Victim Protections. Beijing: Court Press, 2007. (<http://www.port.ac.uk/departments/academic/icjs/staff/documentation/filetodownload,63887,en.pdf>)
- Criminal Justice System, The Victim’s Charter- A statement of service standards for victims of crime, Criminal Justice System, 1996.
- Department of Health, Home Office, Revised National Service Guide-A Resource for Developing Sexual Assault Referral Centre, Home Office, 2009.
- Ministry of Justice, Home Office &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n Overview of Sexual Offending in England and Wales, Ministry of Justice, Home Office &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3.
- Home Office, Cross Government Action Plan on Sexual Violence and Abuse, 2007.
- Jo Lovett, Linda Regan, Lix Kelly, Sexual Assault Referral Centres: developing good practice and maximizing potentials, Home Office Research, Depart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 2004.
- Kelly, L.Lovett, Land Regan, A Gap or Chasm? Attrition in reported rape cases, London, Home Office Research Study, 2005.

- Right of Women, From Report to Court- A Handbook for Adult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Right of Women, 2008.
- Fegert, J.-M., Sexuelle Gewalt, Berlin, 2009.
- Haupt, H./Weber, U./Bürmer, S./Frankfurth, M./Luxenburg, K./Marth, D., Handbuch Opferschutz und Opferhilfe, Baden-Baden, 2003.
- Köbel, R./Bork, L., Sekundäre Viktimisierung als Legitimationsformel, Berlin 2012.
- Meyer, M.-K., Zur Rechtsnatur und Funktion des Strafantrags, Heidelberg, 1984.
- Lenckner, Das 33. Strafrechtsänderungsgesetz - das Ende einer langen Geschichte, NJW 1997, 2801.
- Rieß, P., Die Rechtsstellung des Verletzten im Strafverfahren. Gutachten C zum 55. Deutschen Juristentag, München, 1982.
- Roggenwallner, B./Herrmann, G./Jansen B.-H., Straf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Strafrecht - Zivilrecht - Familienrecht - Sozialrecht - Forensische Psychiatrie, Münster, 2011.
- Schroth, K., Die Rechte des Opfers im Strafprozess, Heidelberg, 2005.
- 高井康行・番 敦子・山本 剛, 犯罪被害者保護法制解説 第2版, 三省堂, 2008.
- 男女共同惨禍推進本部, 男女共同参画 2000 年プラン, 1996.
- 内閣部, 男女間における暴力に関する調査報告書, 2012.4.
- 法務省, 犯罪白書(平成 25 年版), 2003.
- 法務総合研究所, 第3回犯罪被害(暗数)實態調査, 2009.
- 福井 厚, 刑事訴訟法 第7版, 有斐閣, 2012
- 渥美 東洋, 全訂 刑事訴訟法, 有斐閣, 2009.

다. 인터넷자료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정부에 대한 「성폭력피해여성긴급전화」의 ‘익명증거보전절차’의 확충신청서 (http://www.beratung-bonn.de/_downloads/ASS_Antrag_LAG_NRW_30_10_2012_KORRIGIERT.pdf)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 2012년 연합정부구성협약문(Koalitionsvertrag) (http://nrwspd.de/db/docs/doc_40518_2012121111516.pdf)

- 독일 도르트문트(Dortmund)시의 구역별 시립상담실 운용 사례 사례(http://www.dortmund.de/media/p/jugendamt_2/downloads_13/sexuelle_gewalt/Kinder_sexuelle_Gewalt.pdf)
- 독일 도르트문트(Dortmund)시의 ‘성폭력피해지원공조협의회’ 공조네트워크 사례 http://www.dortmund.de/de/leben_in_dortmund/familie_und_so_ziales/jugendamt/hilfe_und_beratung/sexuelle_gewalt/index.html)
- 독일 범죄피해자지원협회(ado)의 ‘범죄피해자지원 표준지침’ (<http://www.opferhilfen.de/Standards.pdf>)
- 독일 「Weisser Ring」 (바이써링, 하얀동그라미)의 범죄피해자지원 표준지침(Opferhilfestandards) (<https://www.weisser-ring.de/fileadmin/content/Opferhilfe-Standards/Opferhilfestandards.pdf>)
- 독일 「Weisser Ring」의 초기심리치료상담을 위한 상담티켓 (<https://www.weisser-ring.de/internet/opferhilfe/hilfescheck-fuer-eine-psychotraumatologische-erstberatung/index.html#c7030>)
- 독일 「Weisser Ring Stiftung」 (바이써링 재단) 설립을 통한 「Weisser Ring」 지원 (<https://www.weisser-ring.de/internet/so-helfen-sie-uns/weisser-ring-stiftung/index.html#c23278>)
- 독일 「Weisser Ring」의 익명증거보전절차를 위한 법의학지원티켓 (<https://www.weisser-ring.de/internet/opferhilfe/hilfescheck-fuer-eine-rechtsmedizinische-untersuchung/index.html>)
- 독일 바이에른주 검찰조직령(OrgStA) (<https://www.verkuendung-bayern.de/jmbl/jahrgang:2011/heftnummer:3/seite:53>)
- 독일 여성긴급콜센터(www.frauen-gegen-gewalt.de)
- 독일 연방교육상담협의회(<http://www.bke.de>)
- 독일 연방법무부의 「성폭행피해자권리강화법」 관련 보도자료 (http://www.bmj.de/SharedDocs/Archiv/DE/Pressemitteilungen/2013/20130628_Ein_Meilenstein_fuer_die_Opfer_sexualisierter_Gewalt.html?nn=1967012)성폭력대책기금(<https://www.fonds-missbrauch.de/kontakt>)
- 독일 쾰른(Köln)시의 ‘익명증거보전절차’ (<http://www.notruf-koeln.de/ass-2/>)

독일 「형사·과태료절차지침」 (RiStBV) (http://www.verwaltungsvorschriften-im-internet.de/bsvwvbund_01011977_420821R5902002.htm)

영국정부의 피해자 및 증인지원([http://www.gov.uk/rape and sexual offences](http://www.gov.uk/rape-and-sexual-offences): chapter 5: Victims and Witness).

영국 검찰청(<http://www.cps.gov.uk>)

피해자지원센터(<http://www.victimsupport.org.uk>)

잉글랜드 및 웨일즈 강간위기개입센터(<http://www.rapecrisis.org.uk>) 스코틀랜드

강간위기개입센터(<http://www.rapecrisisscotland.org.uk>)

생존자 위탁기관(<http://www.thesurvivorstrust.org>)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nnvs.org/network/index.html>)

오사카 성폭력구제지원센터(<http://www.sachico.jp/>)

피해자연락실시요강

(<http://www.npa.go.jp/pdc/notification/keiji/keiki/keiki20061207-1.pdf>)

The Legal Protection and Assistance System to Victim of Sexual Violence as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s will be abolished

Lee, Seung-Hyun · Park, Hark-Mo · Kim, Jeong-Hye

The victim of sexual violence has many difficulties in criminal investigation or trial process. For example, he or she has no understanding on how to make a statement. In criminal investigation or trial process, the attorney for the assailant often tries to shift the responsibility to the victim or make an issue of his or her conduct. Therefore, the role of legal assistance with expertise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s, so as to protect and assist victim of sexual violence.

The study suggests legal protection and assistant system to victim of sexual violence as follows:

Firstly, system to protect and assist victim of sexual violence -counseling support, legal support and medical aid- should be improved. Secondly, service transmission system in assistance to victim of sexual violence, such as safety zone for children and women and emergency number system(1366) for women, should be activated. Thirdly, protection and support to victim in the criminal procedure should be strengthened. Experience handling case should be a guideline for selection of the legal assistant, regardless of list of candidate of legal assistance. Information on legal assistant, including his or her experience of counseling for victims, should be provided to the victim. Third, the date of

selecting the legal assistant should be advanced, depending on the victim's will. Fourth, the basic information related to investigation or trial should be offered to the legal assistant. Fifth, legal assistant's right to inspect and copy record should be extended, and his or her right to attend at the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ss should be guaranteed. Finally, remuneration of legal assistant should be realized.

연구총서 13-AB-05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발행 / 2014년 2월

발행인 / 박상욱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02)575-5282/5283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인쇄 / 경성문화사
(02)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정가 7,000원

ISBN 978-89-7366-107-7 93360